

2020

나부터 시작하는 건강나눔

통합21차 정기총회 (16차 대의원총회)

일시: 2020년 05월 09일(토) 오후 2시

장소: 한의원건물 옥상(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 법동)

※ 우천시 3층 공간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Mindle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통합21차 정기총회(16차대의원총회) 행사순서

제1부 식전 행사

- 개식선언
- 국민의례
- 이사장 인사
- 코로나19사태 경과 보고
- 감사패 전달
- 폐식선언
- 기념촬영

제2부 정기총회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의사록 서명날인과 서기 선임
- 경과보고
- 의사일정확정
- 전차의사록 낭독과 승인
- 상정의안 심의
- 폐회선언

제3부 대의원 자치회

자료집 목차

기념사 · 축사	<u>10</u>
코로나19사태 경과보고	<u>13</u>
민들레의료사협 연혁	<u>21</u>
민들레의료사협 현황	<u>27</u>
통합21차 정기총회 경과보고	<u>37</u>
통합20차 정기총회 의사록 (전차회의록)	<u>39</u>

[제21차 정기총회 상정의안]

제1호 의안 2019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u>55</u>
제2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u>61</u>
제3호 의안 2019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u>65</u>
제4호 의안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u>69</u>
제5호 의안 2019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u>193</u>
제6호 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u>197</u>
제7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u>203</u>
제8호 의안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u>213</u>
제9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u>273</u>
기타 의안	

[부록] 정관 · 규약	<u>279</u>
--------------	------------

1

식전 행사

- 개식선언
 - 국민의례
 - 이사장 인사
 - 코로나19사태 경과보고
 - 감사패 전달
 - 폐식선언
 - 기념촬영
-

나눔과 협동의 조각보처럼



한 조각 한 조각만으로는
쓰이기 어려운 조각 천들이 한데 모이고
서로의 색깔과 모양이 어우러져
한 땀 한 땀
아름다운 쓰임새를 만들 듯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나누고 협동하며
한 땀 한 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의지이자 상징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한 땀 한 땀을
함께 이루어가시겠습니까?

●● 건강정의

건강이란 ‘아픔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극복하는 힘’이며
몸, 마음, 세상의 안녕과 더불어 영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발현해가는 과정이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건강증진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WHO. 2000〉

●● 건강약속

아플 때,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내 몸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내가 아픈 것은 세상이 아픈 것임을 깨닫고
그 아픔의 근원을 응시할 수 있게 하소서.
우주인 생명이 내는 소리에 귀를 열게 하소서.
이웃의 아픔이 곧 내 아픔임을 깨닫게 하소서.
늘 안부를 묻고 살피는 서로가 되게 하소서.
이웃이 아플 때 아픈 내 몸 쓰다듬듯 손 내밀어 잡게 하소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그 본성처럼 늘 서로 돕고, 늘 서로 나누며
그것을 통해 더불어 하나 됨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이 빛날 수 있게 하소서.
〈2015.10.05.제정, 2018.01.17.개정.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과 의료·복지 종사자가 협동하여 의료, 돌봄, 예방 사업을 통해 마을마다
건강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협동조합이자 사회적기업이며 지역사회 주민
조직이다.

●● 설립이념, 정관 전문

설 립 이 념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정 관 전 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나눔과 협동의 경제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운동단체 「지역품앗이 한발레츠」와 참다운 의료생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이후 친구랑 공동육아어린이집, 한발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창립하였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셋째,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넷째,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위 네가지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주권의 원칙을 따르며 세계의 협동조합과 연대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 기념사

민들레 결엔 서로 돕는 이웃이 있기에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나 준 식

앞으로 3년간 민들레의료사협을 이끌어갈 제8기 대의원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통합 제21차 정기총회가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총회준비위원회와 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조합사무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오늘 총회가 지난 제7기 대의원총회가 3년간 일관되게 일구어온 경영 및 조직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들레가 본격적으로 한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기에, 제7기 대의원총회를 이끌어온 대의원 여러분들과 임직원, 조합원 여러분, 곧 우리 자신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지난 3년간 재정수지 흑자라는 결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이사님 말씀처럼 마른수건을 짜내서 일구어온 면이 있지요. 하지만 그 이면엔 우리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변화를 실험하고 도전하는 과정이 있었고, 민들레의 존재이유를 주민과 지역사회 속에서 다시 확인하고 방향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건강반, 건강리더를 중심으로 조합원, 지역주민의 건강자치역량을 높이는 시간이었고, 직원조합원들의 사업소 자주관리 역량을 높이는 시간이었고,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과제를 지역사회에 본격적으로 제안하고 이끌어 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기반으로 제8기 대의원총회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멋진 그림들을 펼쳐내보는 희망과 즐거움의 3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과정에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는 있겠지만요.

우린 감내할 수 있지요? 우리 결엔 언제나 손을 내밀면 함께 돕고 책임지고, 의지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 축사

따뜻한 흙벽돌로 쌓아 올린 집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장 기 흥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저의 어린 시절의 어디쯤엔 아버지와 함께 흙벽돌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오십여 년 전, 그리 멀지 않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는 집을 짓는 주재료가 나무, 흙, 볏짚, 기와 같은 것들이었고, 집을 지을 때도 화장실이나 잠실 등 부속 건물 같은 것은 벽돌을 찍고, 나무를 깎아 직접 짓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올 안에 닭장인가 화장실인가를 지으려고 우리 아버지도 직접 흙벽돌을 만드셨습니다.

벽돌을 찍어 내는 거푸집과 빨간 황토, 그리고 짚더미가 마당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버지께서 흙에 물을 붓고 볏짚을 잘라 넣고 대충 섞고 나면 우리가 맨발로 질경질경 밟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계족산 황톳길 걷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밟고 다니고 나면 흙과 볏짚이 뒤섞여 반죽이 되어 한 덩어리가 되었고, 그 흙을 거푸집에 넣고 위 아랫 뒤집어 가며 토닥인 다음, 거푸집을 풀고 꺼내놓으면 붉은빛이 선명한 황토 흙벽돌이 나오곤 하였습니다. 그 한 장의 흙벽돌이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었던지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를 맞이하여 **민들레의 이미지를 가만히 떠올려 보았더니 ‘흙벽돌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흙 알갱이들이 짓이겨지는 고통을 견디고 하나로 뭉쳐져 한 장의 벽돌이 되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야 비로소 한 채의 집이 지어지듯이, 오늘의 민들레는 ‘의료복지’의 중요성을 자각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조합원’이라는 한 장의 흙벽돌이 되었고, 그 조합원들이 모여 마침내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루어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흙벽돌로 지은 집은 추울 때 덜 춥고, 더울 땐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덜 더운 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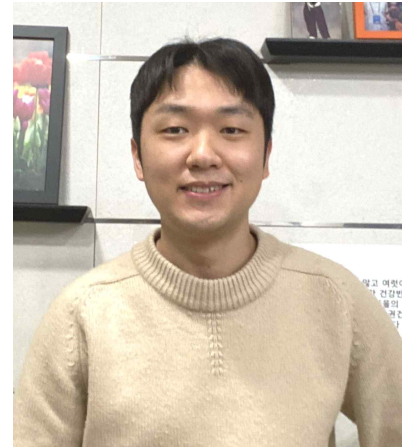
저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민들레를 찾는 모든 분과 건강과 행복을 공유하는 흙벽돌 같은 집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바로 조합원 한분 한분이 모여서 이룩한 집이라는 것도 의심할 여지 없는 것입니다. 벽돌 한장 한장을 쌓아 올려 집을 짓듯이, 민들레를 이렇게 훌륭한 공동체로 성장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은 바로 조합원 한 분 한 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일선에서 매일 환자들을 대하면서 수고하시는 원장님과 임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이 더해져서 민들레는 가장 행복한 공간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21차 총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민들레를 위해 마음을 내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과 열과 성을 다해 일선에서 수고해주신 의료진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따뜻하고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 축하

법동 청년, 민들레로 피어나다

민들레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케어매니저 정재성



안녕하세요? 저는 민들레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케어매니저 정재성입니다.
지난 5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떨리는 마음을 안고 민들레에 첫걸음을 내딛던 그 날이 떠오릅니다. 사회초년생인 법동 청년에게 지역주민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 지역사회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민들레 가족 여러분이 있어 가슴 벅찬 2019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민들레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의 케어매니저로 내가 사는 이 동네에서 나의 이웃을 만나 함께 웃고 즐기고 삶을 나누었던, 민들레와 이웃과 나의 이야기를 쓰고자 합니다.
앞으로 있을 그 수많은 이야기 중 저는 오늘 협동이라는 가치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무심코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전보다 살기 좋아졌는데, 밥을 먹지 못해 돌아가시는 분은 왜 생기는 것인가?”

순간 저는 머뭇거렸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제자신도 이웃 주민을 관심 있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동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밥을 먹지 못한다고 해서, 걷기가 어렵다고 해서, 인지가 부족하다 해서,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낙오되는 일 없이 모두가 하나의 조각으로서 완성되는 천처럼 서로 얽히고설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것이 협동이며,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지 않더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흔하고 너른 들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처럼, 중심을 잡고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일원으로, 법동의 한 청년으로 내 이웃과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협동으로 다 함께 피어날 것입니다.

마치면서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1차 정기총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사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돌보는 모든 일에 열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사태 경과보고

코로나-19사태 경과 보고

COVID-19[한국명: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질환(Coronavirus disease)]

Ⅰ 조합의 감염 방지 활동

□ 조합의 진료 활동에 따른 대처

- 전 의료기관 입장시 발열체크 및 손 소독
 - 의원의 경우 사무직 직원 가용 (발열체크 매뉴얼 수립 및 교육 후 현장에 투입)
 - 마스크 미착용 환자 출입 제한
- 간이 진료소 운영
 - 대구 & 해외 방문이력 있거나 37,5℃ 이상은 별도 설치된 간이진료소에서 진료
- 한의원의 경우 '보폐원탕' 탕약 시판
 - 1재 15만원(원가 제공으로 두루 및 할인적립 대상 제외)

〈발열체크 모습〉	〈간이진료소 모습〉
	

□ 조합의 방호 대처

- 직원 마스크 제공 : 전직원 다회용 마스크 1회 제공
 - 의료직 : KF94 마스크 제공
 - 발열체크 지원 직원: 방호복 및 KF94 마스크, 방호모자, 체온계, 비닐장갑 제공

- 다중 공간 및 접촉 빈번 구역 주기적인 생활소독 실시
- 외부인 출입 일시 작성
- 직원 점심식사 시 비말감염 방지 위해 테이블 중앙 투명 가림막 설치
- 코로나19에 대응 TF팀을 운영하여 상시적인 논의 대처

□ 조합의 감염 예방 진료에 따른 모범사례로 한국일보 보도

- 2020. 4. 3 한국일보 보도 발췌



② 정부 권고안에 따른 대중 집회 자제 및 사회적 거리 지키기 동참

- 총회 개최 무기한 연기 결정
 - 2020. 2. 21. 총회 연기 공고
 - 전 조합원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게재
- 조합원 모임 및 모임 억제
 - 노래교실 등 조합 내 조합원 모임 억제
 - 직원의 대외 활동 자제
 - 전직원 정례 모임 온라인 진행

③ 경영적 손실 발생

- 의료기관 전년대비 3월 매출 실적
 - 3월 1개월간 약 2,000만원 매출 감소

〈의료기관 매출감소 내역〉

의료기관	3월 매출		증감계	비율
	전년	당해		
총계	194,834,132	174,745,443	△20,088,689	90%
의원	73,621,902	70,350,983	△3,270,919	96%
검진	63,976,620	48,285,530	△15,691,090	75%
지센	4,701,960	13,414,400	8,712,440	285%
한의원	21,316,100	15,621,220	△5,694,880	73%
치과	31,217,550	27,073,310	△4,144,240	87%

□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방호 비용 발생

- 주요 방호 장비 구매 비용 약 700만원 비용 증가

구분	마스크	소독제 (생활,손)	체온계	간이진료소 설치	방호복, 방호모자	직원 식당 가림막설치	계
소요금액 (원)	3,960,750	1,621,793	509,000	405,700	440,080	400,000	7,337,323

④ 재정 손실 극복을 위한 직원조합원 동참

- 원장단 및 직원의 급여 등 기부
 - 총 8명 4,851,000원 목적 기부(2020년 운영비 사용 목적)
- 직원 무급휴가
 - 총 23명 9,918,580원 인건비 절감
- 방문 진료 증대
 - 왕진 및 방문간호 확대를 통한 매출 기여

⑤ 조합원 안위를 위한 조합 활동

□ 원장단의 관련 기고

- 소식지 및 홈페이지 활용
- 문자 발송 및 기고 목록
 - 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2020. 1. 28)
 - ② 코로나19 대처 안내 (2020. 2. 23)
 - ③ 전화상담, 대리처방, 왕진서비스 안내 (2020.03.18.)
 - ④ 자가격리자 건강회복법 (2020. 4. 2)
 - ⑤ 조합원 안위를 위한 전 조합원 문자 발송(2020. 4. 3)

- 코로나 19 피해 조합원을 위한 조합의 도움 전개
 - 조합원 건강안부 설문조사 실시 : 문자를 통한 조합원 요청 파악
 - 지역 연대 단체 후원 물품 활용
 - 민들레 비보험진료비 할인 30% (건강안부 꾸러미)
 - : 폐렴백신 33개, 영양제 수액 33개
 - 농산물, 밑반찬 제공 (밥상안부 꾸러미)
 - : 채소 등 33개, 반찬 33개
 - 심리상담 지원 (마음안부 꾸러미)
 - : 개인 맞춤형 심리상담 3회기
 - 후원 단체
 - : 품앗이소비자생협, 도원참사랑 나눔, 열린부뚜막, 마음의숲 등
- 돌봄 공백 해소 기여
 - 민들레 케어매니저와 건강리더를 통한 지역 돌봄 대체 활동 전개

⑥ 조합을 위한 조합원의 도움 :

- 면마스크 제작 지원
 - 고경숙 조합원 - 자비로 재료 구입 후 조합원이 모여 면마스크 100개 제작 후원
 - 홍종순 조합원 - 자비로 재료 구입 후 손수 제작 30개 제작 후원
- 덴탈마스크 후원
 - 오민우 조합원 - 의원에 마스크미착용 환자용으로 덴탈마스크 지원
- 손소독제 지원
 - 박영기 조합원 - 구입이 어렵고 가격이 폭등한 손소독제 20개 지원
- 조합원의 금일봉
 - 이규영 조합원 - 발열체크 직원을 위해 금일봉 제공
- 조합원의 의료기관 이용
 - 어려운 시기에 조합 매출 증대를 위해 내방 진료
 - 스케일링, 건강검진, 한약
- 법1동 행복복지센터에서 환경소독제 14개 지원

⑦ 지역사회와 함께 극복하기 위한 활동

- 법1동 동네방역 자원봉사 활동
- 대덕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자원봉사 의사 2인 참여

〈조합원 천마스크 제작 및 기부〉



〈조합원 천마스크 제작 및 기부〉



〈이규영 조합원 금일봉 전달〉



〈박영기 조합원 손소독제 기증〉



〈민들레 직원, 법1동 동네방역 활동〉



〈민들레의원 의료진, 선별진료소 자원봉사〉



⑧ 민들레 조합원의 '이웃안부' 꾸러미 사업

□ 취지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과 주민의 생활 및 건강안부를 챙김.

□ 기간 : 4월~5월

민들레 조합원의 '이웃안부' 꾸러미

코로나19감염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나와 이웃의 안부를 민들레 꾸러미로 챙겨주세요.
민들레조합원이면 누구나 꾸러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문자
- 신청 대상: 민들레 조합원
- 선정 기준: 선착순(꾸러미 소진시까지)
- 이용요금: 무료 (1인당 1개)
- 배분 기간: 5월 한달간
- 채소 배분장소: 민들레 우리 건물 1층 3층



신청 기간: 4.27(월)~29(수) 3일간

민들레 조합원의 '이웃안부 꾸러미' 이용 방법

- 1 받으신 문자에 답글로 꾸러미를 신청합니다.
문자 예시> 조합원 이름, 페럼에방주사
- 2 선정되신 분은 해당 이용 기간에 배분장소로 옵니다.
- 3 배분장소에서 꾸러미를 수령합니다.
- 4 받으신 꾸러미는 조합원님이 직접 이용하거나 이웃의 안부를 챙기는데 사용하셔도 됩니다.
*선정되신 분은 개별 문자를 드립니다.

◀꾸러미메뉴▶

*1인 1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안부 꾸러미

페럼에방주사
30%할인권
(11만원 → 8만원)

마음안부 꾸러미

심리상담 3회 이용권
↳ 신청 후 11 맞춤 진행

건강안부 꾸러미

영양재수액
30%할인권
(5만원 → 3만원)

밥상안부 꾸러미

식재료 1회 이용권
↳ 배분일시: 5월 6일(수)
11:30~13:00

밥상안부 꾸러미

일반찬 4회 이용권
↳ 배분일시: 매주 금요일
(5월 8, 15, 22, 29일)
11:30~13:00

주관



후원



문의 : 민들레 사무처 042-638-9053 / 010-6334-4606 이자우 국장

●● 감사패 수여

수 상 자	공 로 내 용
이 근 수	<p>귀하는 민들레의 초창기 조합원으로, 사회복지 공직자의 역할을 다하며 지역주민에게 헌신해 왔으며, 대덕구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의 역할을 맡아 민들레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동네돌봄(커뮤니티케어)'을 위한 대덕구와의 민관협력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이끌어 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p>
박 영 기	<p>귀하는 민들레 조합원으로서, '지역사회 건강문제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효과적인 건강자원 연계시스템과 협동조합을 위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개발한 공로가 크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p>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혁

2001년	2002년	2003년
<p>■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회원8명 민들레의료생협 준비모임 결성</p> <p>■ 민들레의료생협 준비위원회 결성(20여명)</p>	<p>“주민의 참여와 협동으로 만드는 건강한 마을”</p> <p>■ 민들레의원·한의원 개원</p> <p>■ 발기인 대회 (발기인50명, 대표 김조년)</p> <p>■ 창립총회 (조합원303명, 이사장 김조년)</p> <p>■ 소식지 창간호 ‘민들레’</p>	<p>“주치의 사업의 기반마련, 조합원 기초조직을 통한 조합운영, 진료권 내 중심을 둔 조합활동”</p> <p>■ 홈헬퍼파견사업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p> <p>■ 공동체화폐로 만드는 건강한 마을사업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p>
2004년	2005년	2006년
<p>“조합원 가족주치의, 법동품앗이, 민들레 학교”</p> <p>■ 일본아마가사끼 의료생협 방문 환영회</p> <p>■ 법동품앗이 창립</p>	<p>“체조하고 걷는 해”</p> <p>■ 건강실천단 발대식 만걸음 걷기 행사(계족산)</p> <p>■ 새터가족과 함께하는 건강운동회</p> <p>■ 민들레 중장기 발전을 위한 워크숍</p>	<p>“체조하고 걷는 해”</p> <p>■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 지정</p> <p>■ 한국의료생협연대 개소식</p> <p>■ 민들레의원 1층 이전</p> <p>■ 전화상담 민들레 교육훈련</p> <p>■ 공동체 자원활동가 교육훈련</p> <p>■ 치과 개원</p>

2007년

“건고 체조하고
자전거타는 해”

- 월평공원-갑천 생태계 지키기 시민대책위
- 「공생공빈」저자 스찌다 다카시 초청강연회
- 암치유 전략워크숍(나준식)
- 공동생협학교

2008년

“지구와 함께 건강해지는 해”

- 태안 자원활동
- 건강실천단 발대식
- 한의원 뜸 전략 기획단
- 슬로건 만들기 대의원 WS
- 창립6주년 등반대회
- 건강캠프 ‘오약사 따라잡기’
- 소액금융지원 약정체결 (사회투자지원재단)
- 의료생협 서비스 품질 WS

2009년

“건강증진활동의
기초를 다지는 해”

- 일본 미나미 의료생협 민들레 방문 및 교류회
- 제1차 이용자 간담회
- 건강증진실 개소
- 창립7주년 야간산행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 보건분야 개강
- 호숫가품앗이가게 개소식
- 노인복지센터 이전개소식

2010년

“건강한 마을의 기초를
다지는 해”

- 일본 / 일본의료생협 연수
- 건강검진센터 개소
- 비영리경영컨퍼런스
- 가정간호사업소 개소

2011년

“조합원이 함께
민들레를 세우는 해”

- 건강검진 협약 (세이브더칠드런 등)
- 대전지역생협연대 공동산행
- 조합원 방문의 날
- 제2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워크숍
- 임시대의원 총회(둔산진출)
- 둔산민들레 추진위원회
- 우수 사회적기업 표창 (대전광역시장)

2012년

“새로운 10년을 펼치는 해”

- 둔산민들레 개원
- 황성수 박사 초청 특강
- 한미FTA폐기 동네춧불
- 현미채식건강실천단
- iCOOP씨앗기금 전달식
- 조합원 제안사업
- 우수 사회적기업 표창 (대통령)
- 업무협약(양심과 인권‘나무’)
- 10주년 기념행사, 토론회
- 해고노동자 검진(민주노총)
- 치과진료협약(굿네이버스)
- 여성새일센터 협약
- 여성친화기업 인증
- 대덕치과 이전

2013년
<p>“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창립 ■ 민들레-한밭생협 세화강좌 ■ 씨앗기금 협약 ■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가입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전환창립 ■ 의료생협 현지조사 참여 (보건복지부)

2014년
<p>“조합원과 더 많이 만나는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이사 학교 ■ 장애인부모연대 치과치료협약 ■ 임시총회(건물매입) ■ 세상콘테스트 성장기부문 수상 ■ 건물매입계약 ■ 의료민영화반대 기자회견 ■ 민들레 방문의 날 (비영리협동조합연대) ■ 사회적기업 월드포럼 참가자 민들레 방문 ■ 건물매입을 위한 조합원 행사 진행(구별) ■ 건강의 집 담당자 교육 ■ 사회공헌 한마당 참여

2015년
<p>“흑자경영 원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사회성과인센티브 참여 ■ 우수 협동조합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 ■ 건물매입을 위한 일일찾집 (유성구 조합원) ■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간담회 ■ 홈커밍데이 ■ 건강나눔터 “바르게 걷기” ■ 전국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우수상(어린이집) ■ 지역사회주도형 노인건강돌봄지원사업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문제해결 기술연구 리빙랩사업 선정(연구재단) ■ 건물매입완료

2016년
<p>“건강의 집으로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는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이사학교 ■ 1기 건강조직가 양성과정 ■ 유성구 진잠동 주민참여형 건강마을만들기 ■ 리빙랩-당뇨자조모임 ■ 가족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 ■ 사회성과인센티브 어워드 ■ 노인의료복지연구모임 ■ 우리건물꾸미기, 본부이전 ■ 아동여성안전병원 협약(대전광역시) ■ 민들레 산악회 발족 ■ 사회적기업 클라우드 펀딩대회 최우수상 ■ ‘청춘은행’ 시스템 구축 ■ 스포츠의학센터 개소 ■ 1기 건강리더양성과정 ■ 민들레 혁신전략 TTeam 운영 ■ 여성친화기업 인증(대전광역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약

2017년
<p>“주민참여 보건의료혁신을 통한 대전의 건강한 미래를 주도해가는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종 감사 사회적기업가 대통령 표창 ■ 나준식 이사장 사회적기업 유공 대전광역시장 표창 ■ 드림터 청소년 희망멘토 사업장 인증 (대동종합사회복지관)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개소 ■ 지역사회주도형노인건강돌봄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적격차해소 연구개발 프로젝트(연구재단)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대전광역시 공동체활성화 가꾸자 사업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 사회적기업 홍보 캠페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민들레 스마트 주치의 ■ 2017년 제1차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대전광역시)

2018년

“대덕구 지역사회중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스템 단계적 준비 및 건강리더, 건강반 조직을 통한 주민건강자치력 향상”

- 청소년 진로 동기강화 및 성숙도 향상 기여 감사장(대동종합사회복지관)-1.19
- 대전광역시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3월~11월)-2.13
-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지원(3월~2019년 2월)
-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R&D, 비R&D분야, 산업통상자원부)-3월
- 건강보험공단 의료협동조합 임직원 교육(3.21~22)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커뮤니티케어 일본연수(치바)-6.19~23
-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커뮤니티케어 선진지 연수(후쿠오카) 7.23~25
-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협약-8.24
- 법동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구성-10.01
- 일본케어매니저제도와 교육과정 및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벤치마킹 연수(이바라키)-10.13~17
-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나준식 이사장)-12.12
- 지역, 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관 협력 협약(대덕구청)-12.21
- 건강리더 양성과정(5개 기수) 36명 수료, 청소년 건강리더(1개 기수) 18명 수료

2019년

“마을주도 통합돌봄 모델을 만드는 해”

- 민들레-자산관리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업무협약 -4.19
- 2019년도 건강반 46개 승인 및 반장설명회 -4.26
-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경제의만남 마주봄 엑스포개최 -4.30
- 10,11기 건강리더양성과정 시작 -5.7
- 한울야학 장애인 건강교육 진행(장애인주치의사업)
-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 만성질환(고혈압,당뇨)관리 교육 및 영상제작 활용 -7~12월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수탁 운영 -6월~
- 둔산치과 사업종료 -6.30
- 사회적경제정부포상 고용노동부장관 감사패 수상 -7.5
- ICT기술 활용한 노인치매·낙상예방‘편편’활동 -8~11월
- 건강자원조사위한 동네돌봄단 활동 시작
- 중장년남성위한 꽃중년 건강리더양성과정 -10~12월
- 케어매니저양성 기초교육과정개설 -10~12월
- 장애인체력측정,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금연상담, 건강의달인 프로그램 -9~12월
- 2019 건강반 축제 개최 -11.1
- 민들레대의원씨앗모임 -11~12월
- 제8기 민들레대의원선거 12~1월

2019년도 수상, 인증 내역

일자	내용	수상자
2019. 07. 05	사회적경제정부포상 고용노동부장관 감사패	민들레의료사협
2019. 11. 23	대덕구청장 표창장 “협동조합 발전과 지역일자리 정책발전 기여”	민들레의료사협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국현정 국장
2019. 12. 31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창장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기여 공로”	민들레의료사협 나준식 이사장 민들레건강검진센터 허애령 원장
2019. 12. 13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인증”	민들레의료사협
2020. 02. 0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혁신상 “민들레의료사협 케어매니저양성”	민들레의료사협
2020. 02. 0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로상	민들레의료사협 김성훈 부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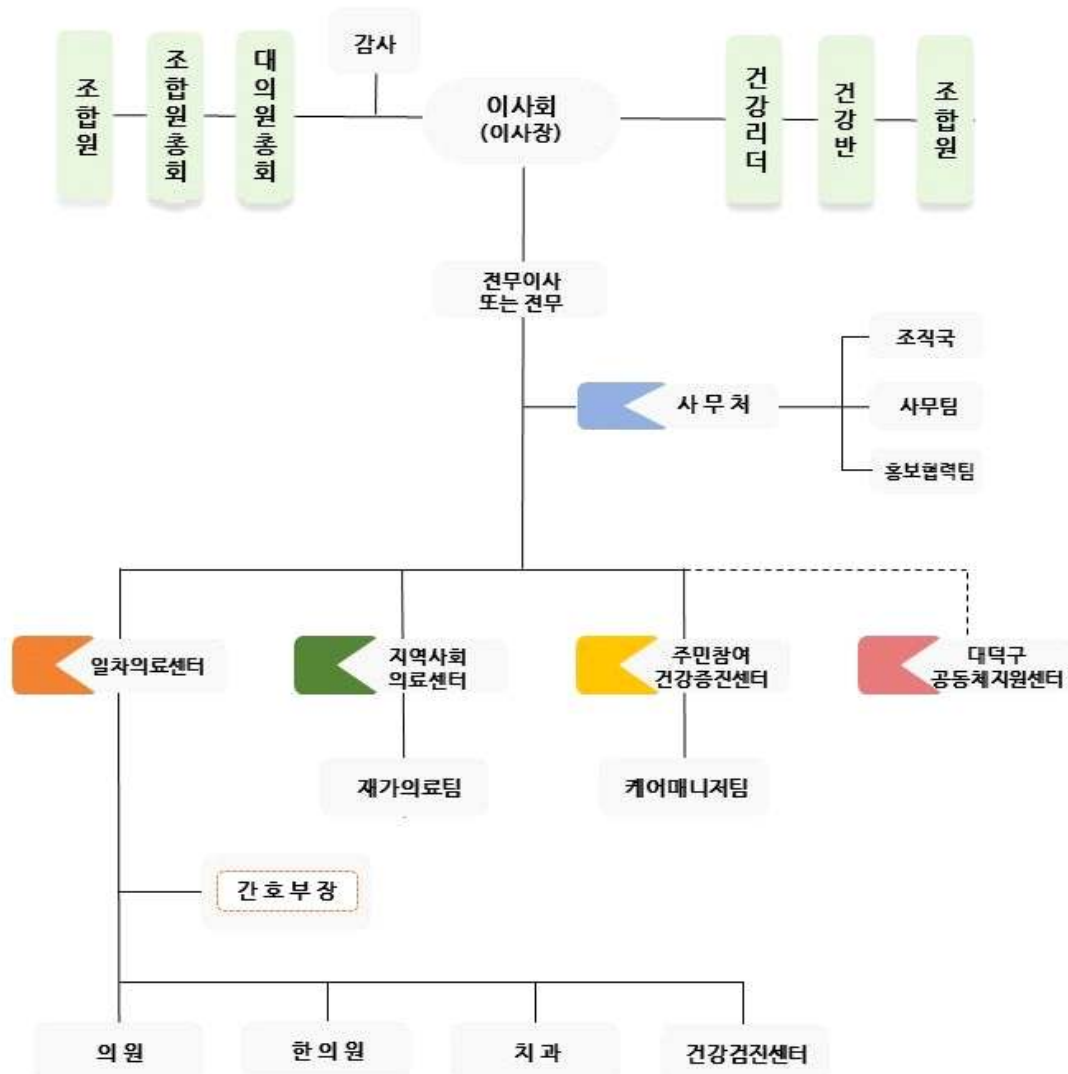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황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황

1. 기본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조합원(세대)	3,607	3,749	3,797
출자금(원)	1,299,503,241	1,291,703,211	1,146,439,922
총자산(원)	2,064,180,853	2,109,944,875	2,187,848,931
직원(명)	41	52	48

2. 조직도



3.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임기	민들레 활동
이사장	나준식	2018. 2. 24 ~ 현재	민들레의원장 / 재정위원회
부이사장	김성훈	2018. 2. 24 ~ 현재	전략기획단장 / 건강마을위원회(교육)
이사	권경미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조직)
이사	김지훈	2018. 2. 24 ~ 현재	재정위원회
이사	김진호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홍보)
이사	김찬옥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조직)
이사	민혜란	2018. 2. 24 ~ 현재	사무국장, 건강마을위원회(조직)
이사	박봉희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교육)
이사	봉미경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조직)
이사	송직근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조직, 홍보), 재정위원회
이사	신태연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교육)
이사	이원호	2019. 2. 23. ~ 현재	총회준비위원장
이사	유승민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홍보)
이사	장기홍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교육)
이사	정운재	2018. 2. 24 ~ 현재	재정위원회
이사 계			15 명
감사	조세종	2018. 2. 24 ~ 현재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소셜경영연구소장
감사	배남익	2018. 2. 24 ~ 현재	공인회계사
감사 계			2 명
임원 계			17 명

4. 부서별 직원 조합원 현황

<2020. 4. 30. 현재>

구 분		현원	비고				
총 계		60명					
임원	임원 계		17명				
	이사장 이사 감사		1명 14명 2명	원장 겸직 전무이사 포함			
	직군	직원 계	43명				
사무기능직	전무이사 또는 전무		0명				
	사무처	사무처장	1명				
		사무팀장 총무회계 등 팀원	1명 3명				
		조직국장 조직팀장 팀원	1명 1명 2명				
		홍보협력팀장 팀원	1명 1명				
		일반기능	1명				
		소계	12명				
	원장단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1명 1명 1명	이사장 · 센터장 겸직		
		소계		3명			
	의료직	일차의료센터	센터장	1명	원장 겸직		
			간호부장	1명	검진팀장 겸직		
			의원	팀장(간호조무사) 가정전문간호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1명 - 1명 3명		
검진센터				팀장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 1명 1명 1명 3명	간호부장 겸직	
				한의원	팀장(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1명 2명	
				치과의원	팀장(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1명 2명	
소계			19명				
지역사회의료센터		센터장	1명	원장 겸직			
		가정전문간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3명 - - 1명	치과의원 겸직			
		소계		4명			
		보건복지직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	센터장	1명	외부 자원 사업 수탁에 따른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케어매니저팀장 케어매니저				4명			
소계				5명			

5. 대의원 현황 (8기)

선거구	이 름
소비자 조합원	김계숙, 김상수, 김연준, 김영순, 김창근, 김창원, 김현철, 남해성, 민순옥, 박미자, 박영순, 박은배, 박지숙, 박희인, 석연희, 석희옥, 송민호, 신용희, 여인표, 오민성, 유승화, 윤자윤, 윤주현, 이광춘, 이기엽, 이선아, 이은영, 이현소, 임경옥, 임은경, 전성옥, 전향숙, 정은희, 정춘택, 조봉순, 조영숙, 주웅식, 천수경, 최미나, 최상선, 최윤나, 최은숙, 최정혜, 최채옥, 추경미. (45명)
후원자 조합원	고미경, 권의경, 김대희, 김도화, 김동중, 김윤기, 김지훈, 김진호, 김현나, 문희균, 박미양, 박병철, 봉미경, 신태연, 유병규, 유인수, 이자우, 임종윤, 정운재, 조세종, 최순례, 최은남, 최장희, 홍은영, 홍춘기. (25명)
자원봉사 조합원	강경숙, 강소영, 김경성, 김성훈, 김준형, 김찬옥, 박미리, 박정희, 박지훈, 서원모, 신경자, 신연순, 신옥영, 오민우, 유난형, 이영은, 임남희, 임주성, 장기홍, 진옥화. (20명)
직 원	국현정, 김문경, 김옥순, 김혜원, 나준식, 남은순, 박종례, 박현주, 양영미, 유미경, 윤미경, 이경민, 이은주, 이지명, 임영신, 장현미, 전경화, 최수이, 한영수, 황신애. (20명)
계	110명

6. 위원회 현황

위원회 명		위 원	실무간사
건강마을 위원회	조 직	권경미, 김찬옥, 민혜란, 봉미경, 송직근 / 지역사회조직팀(이자우)	이자우
	교 육	김성훈, 박봉희, 신태연, 양봉석, 장기홍 / 지역사회조직팀(남은순)	남은순
	홍 보	김진호, 송직근, 유승민, 지역사회조직팀(양정수)	송직근
신 사업 추진 단		김지훈, 나준식, 송직근, 정운재 / 경영지원실(한영수, 전경화)	한영수

7. 건강리더 현황

구 분	통합 기수	명단	인원 (명)
어르신 건강리더	1기	김창순, 박상옥, 신귀연, 신명희, 심석순, 이정자, 이정자, 임종분, 정옥금, 정춘택, 조정자, 주웅식, 천재경, 최신강	14
청소년 건강리더	2기	김윤기, 김희진, 박준서, 고경민, 최동민, 오지은, 채지은, 양인준, 임호진, 백찬하, 하예은, 고가원, 김묘선, 정형준, 송성민	15
1기 건강조직가	3기	민혜란, 배영미, 김정준, 이명희, 전경화, 이자우, 송직근	7
1기 건강리더	4기	장기홍, 봉미경, 오민우, 이주현, 장현미, 민혜란, 이자우, 김성훈, 송직근, 김문경, 이정민, 김찬옥, 김수연, 박윤민	14
2기 건강리더	5기	김수진, 임주성, 배영미, 남은순, 박은배, 이금자, 김옥순, 박종례, 박진숙	9
시니어 2기	6기	강영순, 권영주, 김경순, 김경희, 김정자, 김태순, 소유례, 송선희, 서경숙, 심석순, 안영숙, 우종숙, 윤정순, 이정자, 이정자, 정옥금, 정춘택, 주웅식, 천재경, 최신강, 한귀분	21
3기 건강리더	7기	최미경, 국경덕, 한영수, 김혜원, 이명희, 이영은, 박경희	7
청소년 2기	8기	강규혁, 고경민, 구재모, 구지영, 김동용, 백찬하, 심지후, 안경민, 안도현, 윤희섭, 이민수, 허재영	12
4기 건강리더	9기	이시현, 최석민, 박미리, 정성미, 최은숙, 김영미, 신지혜, 이순희, 유난형, 신철교, 이임향	11
5기 건강리더	10기	고달숙, 박은용, 안순희, 유난형, 임명숙, 최은숙	6
6기 건강리더	11기	강경숙, 박지숙, 손형우, 신경자, 신경희, 신옥영, 최성옥	7
7기 건강리더	12기	강소영, 국현정, 김현나, 양정수, 이경민, 진옥화, 황정인	7
8기 건강리더	13기	김지영, 김희순, 박지훈, 백종범, 이나영, 이현소, 임은정, 조영숙, 최수이, 함보현	10
2기 건강조직가	14기	국현정, 김현나, 남은순, 송직근, 이경민, 이자우, 황정인	7
9기 건강리더	15기	김경성, 박정연, 신정희, 이호숙, 임영신, 최원숙	6
청소년 3기	16기	구슬기, 구재모, 김민아, 김윤이, 박규정, 오가은, 유한결, 유한울, 이민서, 이윤형, 이은채, 이진, 장영은, 전성민, 정지혜, 정혜원, 홍서연, 황유경	18
시니어 3기	17기	김경희, 김태순, 박미자, 신귀연, 심석순, 오남순, 정옥금, 주웅식, 천재경, 최신강, 홍성례	11
10기 건강리더	18기	강승희, 김영순, 박은심, 배진숙, 양지윤, 이문희, 이순복, 이현희, 임남희, 정혜진, 조미희, 천수경, 최인호	13
11기 건강리더	19기	김미나, 김정현, 김준형, 김희경, 박성호, 석희옥, 신연순, 윤자윤, 이인원, 이현우, 이환성, 임미숙, 임은경, 장현선, 전성옥	15
12기 건강리더	20기	구원일, 김창일, 서원모, 이현소	4
계			214

8. 스스로 조합비(기부금) 참여현황 (2019.12.31)

총액(원)	스스로조합비		일반 후원금		비고
	회원수	금액	후원건수	금액	
37,220,000	207	27,470,000	21	9,750,000	단체 포함

o 스스로 조합비(기부금) 참여자 명단 (2019.12.31)

강수환 강종예 고경숙 고광현 고명순 고명호 고미경 고영철 구영희 국현정 권경미 권기철
 권미양 권의경 권지명 권지연 권지훈 김경희 김광희 김대희 김도화 김동석 김동수 김동중
 김문경 김미선 김미영 김민희 김병조 김성훈 김수경 김연주 김영선 김영순 김영준 김옥순
 김윤기 김인화 김재용 김종남 김지훈 김진호 김찬옥 김춘화 김춘화2 김태희 김현나
 김현영 김현주 김현태 김형렬 김혜영 김혜원 김희형 나성은 나준식 남은순 남해성 노미정
 문희균 민혜란 박명구 박명화 박미양 박범진 박병철 박봉희 박영민 박유경 박유미 박재연
 박종래 박종례 박종희 박준규 박지숙 박지영 박진희 박찬주 박태일 박현주 박호연 배남익
 백경수 백수홍 백유선 백종범 봉미경 서정빈 석필환 선재규 성광진 손태희 송영숙 송지현
 송직근 신경희 신명섭 신소연 신옥영 신용희 신원식 신지혜 신태연 신현정 신호섭 안영섭
 양봉석 엄경애 엄기정 엄종원 오민우 오선희 오수민 우광제 원종승 유 미 유미경 유병규
 유수진 유승민 유승우 유영희 유인수 유진석 유하영 윤명숙 윤보국 윤창재 이경민 이기병
 이기순 이기업 이덕희 이동철 이민영 이선아 이선영 이성현 이 송 이영은 이영희 이원표
 이은영 이은주 이자우 이정례 이종현 이주선 이지명 이진건 이진미 이충신 이해순 이형옥
 이호진 이해경 임병언 임서연 임영신 임인선 임종윤 임주성 임창국 임효진 장기홍 장병천
 장윤희 전송희 정나현 정연희 정영자 정운재 정종하 정현숙 조병민 조성주 조세종 조영국
 조윤희 조정선 조희중 주영배 주웅식 진옥화 차주연 채유희 천성아 최소영 최수이 최순례
 최은남 최장희 최혜경 한영수 허애령 허영란 홍미옥 홍완기 홍은영 홍종순 홍춘기 홍현채
 황선희 황신애 황 용 황정인 (207명)

9. 일반 기부금 납부실적 : 총21건 / 9,750,000

한국자산관리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외

정기총회

2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의사록 서명날인인과 서기 선임
 - 경과보고
 - 의사일정확정
 - 전차의사록 낭독과 승인
 - 상정의안 심의
 - 폐회선언
 - 기념촬영
-

●● 통합21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경과보고

2019.11.28	2020년 임원 및 제8기 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승인 - 이사회
2019.12.26	2020년 총회 개최일 및 총회 상정 의안 확정 승인 - 이사회 2020년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승인 - 이사회
2020.01.16	총회준비위원회 1차 회의 -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이원호(위원장) - 총회개최일정 검토
2020.01.31	임원(이사)선거 공고 (~7일) - 선거관리위원회
2020.02.06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 2019년도 주요 사업 실적 보고
2020.02.07	임원입후보자 등록 (~7일) - 선거관리위원회
2020.02.10	사업감사 - 이사장
2020.02.13	회계감사 - 이사장
2020.02.13	총조합원 확정 및 조합원 출자금 고지
2020.02.13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 2020년도 사업기초 수립 - 2020년도 주요 사업계획
2020.02.14	임원 입후보자자격심사 및 확정 - 선거관리위원회
2020.02.14	총회공고, 개최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 이사장
2020.02.17	총회준비위원회 4차 회의 (확대총준위, 이사회) -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 총회 포상자 확정
2020.02.21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정부 권고에 따른 무기한 연기 공고 - 이사장
2020.04.23	총회 개최일 확정 - 이사회
2020.05.09	통합21차 정기총회, 임원선출 선거일

<총회 연기 공고문>



민사2020-59(2020.02.2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1차 대의원총회(정기) 연기 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2. 22. 14:00 예정이었던 우리 민들레의료복
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 21차 대의원총회(정기)를
무기한 연기하오니 대의원 및 조합원께서는 양지하시
길 바랍니다.

2020년 2월 21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총회 연기 권고문(보건복지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위기 경보 관련 안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정기총회 연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의료사협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의료사협의 정기총회는 「협동조합기본법」제92조 및 제28조에 따
라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개최하여야 할 것이나, 현
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효 중이
므로 의료사협은 이사회 결정 등을 통해 감염 위험이 종료될 때
까지 정기총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영공시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별 의료사협이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이유로 부득이 정기총회 및 경영공시를 연기한 경우에 대해서는이
를 정당행위로 보아 정관 등 위반에 대한 별도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입니다.

통합20차(전차) 정기총회 의사록

전차회의록

의사록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서명날인의 확인을 마쳤습니다.
자료집의 가독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원본대조필 : 이사장 나준식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0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의사록

1. 회 의 명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0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2. 공고일시 : 2019년 2월 15일(금)
3. 개최일시 : 2019년 2월 23일(토) 오후2시(기념식), 3시10분~5시20분(정기총회)
4. 개최장소 : 우리건물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 3층(법동)]
5. 정기총회 의장 : 나준식 이사장

가. 성원 확인

의장이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한영수 경영지원실장이 총원 104명 중 사고 1인으로 103명으로 변경되었으며, 참석 54명임을 보고하다. 이에 의장은 정관에 의거하여 대의원 과반 참석으로 이 회의가 정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선포하다.

나. 개회선언

성원을 확인한 의장이 오후 3시10분에 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다. 의사록 서명날인인 및 서기 선임

의장이 참석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김도화, 전경화, 이자우 대의원을 선임하고, 서기로는 남은순, 김지영 조합원을 선임한 후 참석 대의원에게 승인을 요청하다. 다수의 대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통해 서명날인인과 서기를 확정하다.

라. 경과보고

의장이 정관과 규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총회가 성사되기까지의 경과를 주문하다. 이에 이원호 총회준비위원장이 자료집 12쪽을 활용하여, 2018년 12월 이사회 승인으로 구성하여 2019년에 총 7회차 회의를 진행하였음을 보고하고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이견이 없음을 물어 확인하고 오늘의 이 회의가 합당하게 개최되었음을 선포하다.

마. 의사일정확정

의장이 공고와 자료집 11쪽에 상정되어 있는 의안 이외에 추가안건이 있는지 참석대의원에게 확인하

다. 다수의 대의원이 원안대로 확정할 것을 동의하고 재청하다.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는지 확인하고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확정하다.

바. 전차의사록 낭독 및 승인

의장이 지난 통합19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승인해야 함을 설명하고 전차의사록 낭독을 부탁하다. 전차의사록 서명날인인 오민우 대의원이 전차의사록 낭독을 대신해 자료집 26~39쪽에 작성되어 있는 전차회의록을 서면으로 확인 할 것을 제안하고, 참석한 대의원 대다수가 동의, 재청하다. 이에 의장이 총회 의사록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재차 당부하고 승인여부를 확인하다. 이은영 대의원이 동의하고, 다수의 대의원이 재청하여 전차의사록을 승인하다.

사. 상정의안 심의

1) 제1호 의안 : 2018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조세종 감사가 자료집 45쪽~47쪽을 참고하여 감사보고를 하다.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감사보고 중 의료법 위반에 관한 진행 경위는 자료집 62쪽을 참고하며, 질문이 있는지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승인절차를 진행하다. 이원호 대의원이 동의하고 정운재 대의원 외 다수 조합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2018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승인하다.

2) 제2호 의안 :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의장이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에 대한 의안을 설명하다. 탈퇴 신청시 총회를 거쳐 출자금을 환급하는 규정을 설명하고, 의안에 대해 한영수 대의원이 동의하고, 유승민 대의원이 재청하여 2018년도 탈퇴 조합원 101명에게 출자금 16,683,000원을 환급하는 것을 승인하다.

3) 제3호 의안 : 2018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의장의 요청으로 한영수 경영지원실장이 자료집 55쪽을 참고하여 설명하다.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정관에 의거하여 변경 건을 총회에서 사후 승인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김찬욱 대의원의 동의하고, 석연희 대의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2018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4) 제4호 의안 :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의장이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의안 설명을 요청하다. 자료집 60쪽~67쪽의 총평을 중심으로 송직근 전무이사가 사업보고를 하고, 자료집 146쪽~158쪽의 경영보고를 중심으로 정운재 이사가 결산(안)을 설명하다.

- 정운재 이사: 일반 사업체들이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다. 현실과 규정의 괴리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렇지만 잘못된 점은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의장: 142쪽의 외부 자원사업 수행에 따른 조합 재정 기여를 보면 프로젝트 사업의 공로를 알 수 있다.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오민우 대의원이 동의하고, 김도화 대의원이 재청

하여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5) 제5호 의안 : 2018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의장의 요청으로 정운재 이사가 의안을 설명하다. 의안에 대해 **홍은영** 대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대의원이 동의하고 **박미양** 대의원이 재청하여 2018년 당기 순이익 24,783,983원은 기존의 손실금 917,610,474원에 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6) 제6호 의안 : 정관 및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의장의 요청으로 송직근 전무이사가 자료집 165쪽~180쪽을 참고하여 설명하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반영,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개정 및 규약의 개정, 의료법상 관련 조항(의료법 제33조제9항) 신설로 의료기관 소재지 정관 반영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또한 또한 개정(안)의 제61조제4항 지역사업형 누락된 문구 삽입을 요청하고, 변경에 따른 각 조의 번호는 정관 및 규약의 변경 후 상관관계에 따라 일괄 조정됨을 확인하다.

정관개정(안)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조(목적)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전문에서 밝힌 네가지 이념에 따라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의료의 공공성 실현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목적)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p>	<p>• 표준정관 필수기재 사항 반영.</p>
<p>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법동)에 둔다. ② 지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탄방동)에 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 2층(법동) 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p>	<p>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법동)에 둔다. ② 지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탄방동)에 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 2층(법동) 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 4.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7, 2층(탄방동)</p>	<p>•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재지 삭제.</p>
<p>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p>	<p>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p>	<p>• 단체조합원 정의 추가.</p>

<p>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p> <p>5. 단체조합원</p>	<p>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p> <p>5. 단체조합원: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단체출자를 한 법인</p>	
<p>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p>	<p>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기수정.
	<p>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p> <p>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p> <p>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p> <p>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관에 따른 조문삽입.
	<p>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p> <p>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관에 따라 조문삽입.
<p>제21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다.</p> <p>1. 차량 및 시설 사용료<삭제></p>	<p>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다.</p> <p>1. 시설 사용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조항 추가로 인한 조문번호 수정 (이하 조문 순연).
<p>제66조(법정적립금)</p>	<p>제25조(법정적립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관에 정관 제66조를 제25조로 이동.
<p>제67조(임의적립금)</p>	<p>제26조(임의적립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관에 정관 제67조를 제26조로 이동.
<p>제25조(대의원총회)</p> <p>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변경전 정관의 임기로 선출된 대의원도 변경후에는 변경된 정관을 적용한다.<삭제></p>	<p>제28조(대의원총회)</p> <p>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변경으로 인한 경과 규정 삭제.
<p>제2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p>	<p>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관에 따라 수정.
<p>제30조(임시총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9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제31조(임시총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p>제31조(총회의 소집절차)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p>	<p>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p>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p>	<p>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p>	
<p>제33조(총회의 의사) ③ 총회는 제31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4조(총회의 의사)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p>제35조(의결권 및 선거권) ③ 제36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p>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p>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p>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p>제42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삭제>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p>	<p>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감사 및 표준정관에 따라 제2항 삭제.
<p>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되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는 임원선출선거공고 3일전까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삭제>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p>	<p>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5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관에 따라 수정. ※ 표준정관: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0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0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p>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관에 따라 수정.
<p>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해당 기수 임원</p>	<p>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관에 따라 수정.

<p>의 임기종료일까지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p> <p>⑤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p> <p>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p> <p>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p> <p>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p>	<p>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p> <p>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p> <p>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p> <p>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정관에 따라 수정.
<p>제65조(운영의 공개)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 규약, 규정 사업결산보고서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회 활동 상황 사업결과보고서(정관 제56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삭제> 	<p>제58조(운영의 공개)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 규약,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회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정관에 따라 수정.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p>제57조(사업의 종류)</p> <p>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사업<삭제> 2.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사업<삭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임대사업 <p>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다음 각호중 하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지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2.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 목적에 해당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p>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상호 구분 계리되어야 한다.</p>	<p>제61조(사업의 종류)</p> <p>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임대사업 <p>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p> <p>④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p> <p>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은 아래 내용 중 정관으로 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서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

		<p>분의 40 이상일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p> <p>4. '위탁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입이 전체 사업 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p> <p>5. '기타 공익증진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p> <p>•주 사업으로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선택할 경우는 해당 유형을 모두 기재</p>
<p>제58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57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p> <p>② 조합원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p> <p>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1천만원 이내로 한다.</p> <p>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5%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한도 이내로 한다.</p> <p>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5배를 최고 한도로 소액대출계약시에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다.</p> <p>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p> <p>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 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p> <p>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57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삭제></p>	<p><조문 삭제></p>	<p>• 사업 미시행에 따른 조문 삭제</p>
<p>제59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p> <p>② 조합원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 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p> <p>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1백만원 이내로 한다.</p> <p>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p>	<p><조문 삭제></p>	<p>• 사업 미시행에 따른 조문 삭제</p>

<p>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p> <p>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p> <p>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57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삭제></p>		
<p>제60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p> <p>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p> <p>2.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p> <p>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p> <p>4.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p> <p>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p> <p>6.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p> <p>7.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p> <p>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삭제></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p> <p>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p> <p>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p> <p>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p> <p>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p> <p>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p> <p>7. 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한다)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사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p>	<p>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p> <p>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p> <p>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p> <p>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p> <p>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p> <p>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p> <p>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사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p> <p>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p>	<p>•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p>

<p>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삭제></p>		
<p>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u>3개월 이내</u>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u>2개월 이내</u>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 표준정관에 따라 수정.</p>
<p>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 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가 필요할 때 설치한다.</p>	<p>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가 필요할 때 설치한다.</p>	<p>• 표준정관에 따라 수정.</p>
<p>제68조(손실금의 보전)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p>	<p>제68조(손실금의 보전)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p>	<p>• 조항 변경에 따라 수정.</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3년 2월 23일 일부개정 제3조(2차 개정) 2013년 7월 11일 일부개정 제4조(3차 개정) 2014년 2월 22일 일부개정 (2014.4.21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5조(4차 개정) 2015년 2월 28일 일부개정 (2015.4.9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6조(5차 개정) 2017년 4월 4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57조(사업의 종류) 일부개정</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3년 2월 23일 일부개정 제3조(2차 개정) 2013년 7월 11일 일부개정 제4조(3차 개정) 2014년 2월 22일 일부개정 (2014.4.21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5조(4차 개정) 2015년 2월 28일 일부개정 (2015.4.9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6조(5차 개정) 2017년 4월 4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57조(사업의 종류) 일부개정 제7조(6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8조(출자), 제28조(대의원총회), 제29조(정기총회), 제42조(이사회의 의사), 제44조(임원의 경수),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65조(운영의 공개), 제57조(사업의 종류), 제58조(소액대출: 삭제), 제59조(상호부조: 삭제), 제60조(사업의 이용),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일부개정</p>	

규약개정(안)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총회운영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관 조항변경에 따라 수정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 중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 중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정관의 내용에 맞춰 수정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 조항변경에 따라 수정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관 조항변경에 따라 수정
제15조(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의사록 기록, 서명날인인이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총회에서 선출한 2인의 서기가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관계조항의 내용에 맞춰 수정
출자좌수감소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7조제5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1조제5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관 조항변경에 따라 수정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제2조[단체의 정의] 단체출자의 단체라 함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노동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공익적 시민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제2조[단체의 정의] 단체출자의 단체라 함은 정관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법인으로 국내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른 단체의 정의 명확화
과태금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3조제3항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4조제3항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관 조항변경에 따라 수정

의장이 참여 대의원에게 의견 및 질문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승인절차를 진행한다. 이자우 대의원이 동의하고, 신용희 대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대의원이 재청하여 정관 및 규약 개정(안)을 승인한다.

7) 제7호 의안 : 임원(이사) 선출의 건

의장의 요청으로 이원표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 선출을 위하여 의장석에 앉아 진행한다. 자료집 183 쪽을 참고하여 선거를 진행하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고 입후보하였음을 설명한다. 임원(이사) 1명의 사임으로 인한 보궐 선거이며 선출될 임원의 경수는 이사 1명, 임기는 현 임원의 잔여기간임을 설명하고 입후보자 소개를 진행한다. 이원표 선거관리위원장이 1인 입후보에 따라 입후보자의 찬반 투표의 절차로 진행됨을 설명하고 참석 대의원 모두 찬반 투표 진행 여부를 묻고 선거 절차를 확인한다. 이원호 이사 후보의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선출을 참석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모든 대의원의 동의로 임원 선출을 승인하고 이원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원호 이사후보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한다.

기호	이름	구 분	당선 여부
1	이원호	이사	당선

이어 나준식 의장이 의안을 진행한다.

8) 제8호 의안 : 대덕 · 둔산 치과 통합운영(안) 승인의 건

의장이 의안설명을 요청하여 자료집 187~191쪽을 중심으로 송직근 전무이사가 설명한다. 조합원 의견 조사 결과 현행 유지보다 대덕으로 통합운영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음을 확인한다.

- 이자우 대의원: 둔산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
- 한영수 경영지원실장: 작년 4월에 2년 계약했으므로 내년 4월까지 유효하다. 임대는 아이쿱 연합회 관련,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 내에 세입자가 계약 해지일 경우 세입자 부담, 현재 보증금 1억과 월세 385만원, 관리비 지출, 권리금이 있을 수 있다.
- 정운재 이사: 한발생협과 협동조합의 기본 이념과 일치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2인에서 1인 체제로 전환하는 등 존속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부담 요인이 커지고 기반이 없는 상황이며, 치과는 전반적으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현재의 유지도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결단이 필요하다.
- 의장: 둔산에 처음 시작할 때도 논란이 많았다. 협동조합의 협동에 의존하여 시작, 부피를 줄이고 집중을 할 시기와 체계를 마련해야겠다. 여러 어려운 사정이 있어 두 원장님과 직원들이 통합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고 여러 의견을 주셨다.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추가로 더 논의할 내용이 있는지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승인절차를 진행한다. 김계숙 대의원이 동의하고, 이종현 대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대의원이 재청하여 원안대로 대덕 둔산 치과의원의 통합 운영을 승인한다.

9) 제9호 의안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이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의안설명을 요청한다. 자료집 196~201쪽의 사업기조를 중

심으로 송직근 전무이사가 설명하고, 자료집 219~227쪽의 예산수립 기초를 중심으로 정운재 이사가 예산(안)을 설명한다.

- 의장: 검진의 공간 확장과 인력 준비 등 보완이 필요하다.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며, 민관협치와 관련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정운재 이사: 치과 통합운영에 따른 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 의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추가로 더 논의할 내용이 있는지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승인절차를 진행한다. 봉미경 대의원이 동의하고, 이송 대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대의원이 재청하여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10) 제10호 의안 :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의장이 229쪽의 차입금 한도를 20억원 이내로 하는 안건을 설명하고 참여 대의원에게 승인요청을 한다. 이원호 대의원의 동의와 정운재 대의원 재청으로 2019년도 차입금 최고 한도를 현재의 차입금 1,453,925,542원을 포함한 총 합계액 기준 20억원 이내로 할 것을 승인한다.

11) 기타의안

의장이 자료집 18쪽 일반현황에 있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수 3,749명, 총출좌자 수 128,991좌, 총 출자금 1,291,703,211원에 대하여 확정 승인을 대의원에게 요청한다. 이에 오민우 대의원이 동의하고, 홍은영 대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대의원이 재청하여 2018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수 3,749명, 총 출좌자수 128,991좌, 출자액 1,291,703,211원이 총 출자금임을 확정한다.

아. 폐회선언

의장(나준식 이사장)이 이외의 여타의안이 있는지를 대의원에게 묻고, 없음을 확인하여 오후 5시 20분에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0차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한다.

자. 의사록 서명 날인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0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차. 참석 대의원 명단(57명)

권의경	김계숙	김대희	김도화	김문경	김성훈	김옥순	김윤기
김찬옥	김창원	김혜원	나준식	박미양	박종례	변동명	석연희
송이석호	송직근	신경자	신귀연	신용희	신현정	양봉석	오민우
오순희	유미경	유승민	유인수	윤미경	이선아	이 송	이순순
이원호	이은영	이자우	이정민	이종현	이주현	이지명	장사라
장현미	전경화	정운재	정은희	조미선	조세종	진옥화	최수이
최장희	최재덕	한영수	홍미자	홍은영	홍춘기		이상 54명

※ 성원보고 후 참석 대의원 : 김창근, 봉미경, 신종섭 (3명)

2019. 2. 23.

의 장	나 준 식 (인감)	서명날인인	김도화 (인감)
			전경화 (인감)
			이자우 (인감)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1차 정기총회 (제16차 대의원총회)

상 정 의 안

제1호 의안	2019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19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2019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제8호 의안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기타 의안	

제1호 의안 2019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19년도 종합감사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6호, 제53조 제1항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제53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연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진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 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2019년 종합감사보고서

감사는 정관 제5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9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 아 래 -

1. 감사 일시

- 사업부문 : 2019년 8월 20일
 2020년 2월 10일
- 회계부문 : 2019년 8월 20일
 2020년 2월 13일

2. 감사 범위 : 201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회계 부문

3. 감사 근거 : 정관 제53조에 의함

4. 감사 결과 보고

가. 사업 부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들레)은 2019년 한해 동안 대내적으로는 3년 연속 흑자 경영의 성과를 이루어 경영의 자신감을 회복하였으며 대외적으로도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통합돌봄에 대한 민들레의 성과와 자신감을 동시에 획득한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지난 6월 30일로 둔산지점은 사업이 종료되어 2012년부터 시작했던 제2진료소는 7년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끝까지 아이쿱 한발생협과 지역의 조합원 여러분들이 함께 불편함과 어려움을 나눠주셨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9년도 출자금은 전년 대비 3억1천9백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액 출자자의 출자금이 대부분 상환되고 그 자리를 저리의 은행 부채로 채워, 자본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민들레 병원의 직원 여러분들은 토요일 대체 휴무를 시행하여 비용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

였지만 대체 휴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기간에 걸쳐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감염관리, 약재 및 주사관리 등 유통기한, 재고, 폐기물 처리 등 일상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자율점검표 등을 통해 정기적인 점검사항을 기록하고 문서로 남기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는 민들레가 대덕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공동체지원센터와 민들레 사이에 각자의 역할과 제휴 관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취지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5.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차량 및 기계, 시설 등 자산 취득 및 개선에 사용될 금액을 위해 수익금 중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스스로조합비 제도가 시작된지 오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쉽습니다. 먼저 대의원부터 실천하면서 일반 조합원들도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커뮤니티(지역)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합돌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 말에 ‘일차의료 왕진 수가’를 제도적으로 적용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지역돌봄에 많은 활력을 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에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주최하는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세계대회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립해 나갔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기회들을 맞이하는 해를 맞이하여 민들레도 안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밖으로 더욱 연대하여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회계 부문

본 감사인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2019년 12월 31일자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감사결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제표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2019년 경영성과는, 경영진의 책임있는 경영계획과 각고의 노력으로 흑자(당기순이익 : 63,478,396원)를 유지하였으며, 또한 2018년에 이어 2019년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합원들의 후원금(금 : 35,617,760원)을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하고 있습니다.

단, 2019년 12월 31일까지 누적된 카드회사 및 신용기관에 청구된 금액 중 중복된 2,325,122원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2019년 결손금처리계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감사 조 세 종



회계감사 배 남 익



제2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19년도 탈퇴 조합원 125명의 출자금 22,945,600원 환급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16조 제1항, 제33조 제9호, 제35조 제4호

※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 먼저 지급한 후 총회에서 승인한다.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 2019년도 탈퇴 신청 조합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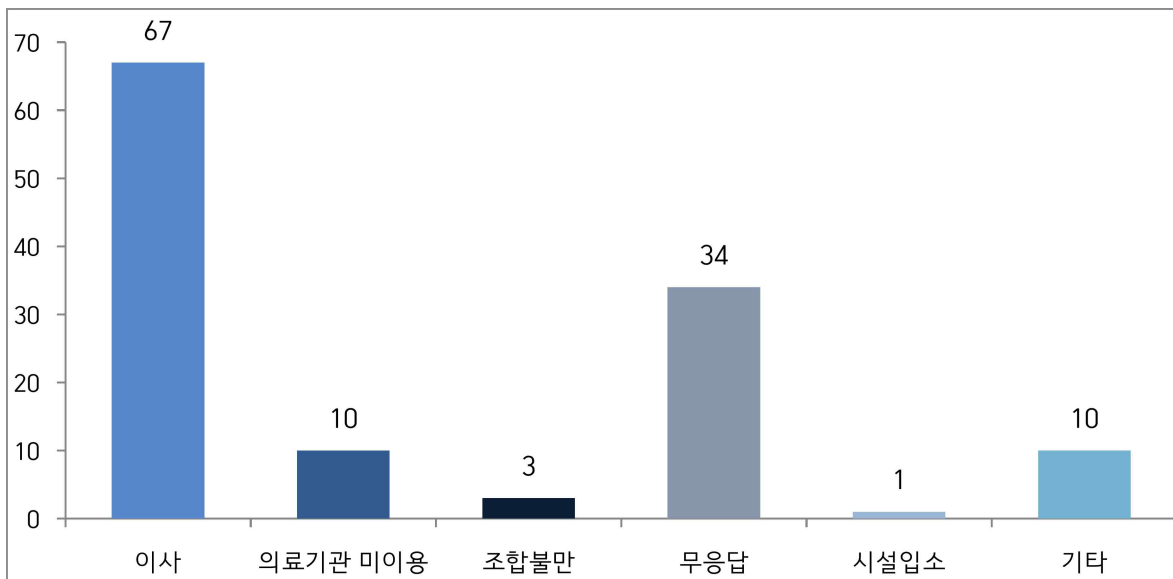
1-1 탈퇴조합원 명단 및 환급출자금 (단위: 원)

강■희	50,000	박■주	50,000	이■호	2,340,000
강■섭	50,000	박■수	50,000	이■희	100,000
강■성	50,000	박■수	60,000	이■현	50,000
고■석	50,000	백■숙	50,000	이■화	50,000
고■태	50,000	복■희	50,000	이■연	130,000
고■순	50,000	석■재	50,000	임■정	250,000
곽■록	50,000	손■형	50,000	임■웅	50,000
곽■진	50,000	손■희	490,000	장■라	1,410,000
권■려	50,000	손■연	100,000	장■영	50,000
권■경	50,000	송■경	50,000	전■애	50,000
권■현	100,000	송■원	50,000	전■용	50,000
권■자	50,000	신■연	500,000	정■위	50,000
권■택	55,000	신■호	100,000	정■해	50,000
길■아	50,000	양■연	100,000	정■실	55,000
김■란	50,000	양■필	1,270,000	정■주	315,000
김■애	50,000	양■봉	50,000	정■호	50,000
김■중	100,000	양■순	50,000	조■님	50,000
김■정	64,000	엄■경	50,000	조■제	100,000
김■향	50,000	오■선	181,000	조■진	50,000
김■순	50,000	오■빈	50,000	지■섭	100,000
김■영	50,000	오■진	580,000	최■연	50,000
김■	50,000	오■아	95,000	최■시	50,000
김■기	50,000	오■주	50,000	최■영	50,000
김■화	80,000	유■화	590,000	최■영	50,000
김■주	50,000	유■옥	100,000	최■자	55,000
김■길	50,000	유■숙	50,000	최■미	50,000
김■희	50,000	유■애	50,000	최■경	50,000
김■	50,000	육■진	50,000	최■윤	50,000
김■검	50,000	윤■문	270,000	최■수	100,000
김■화	50,000	윤■정	130,000	하■희	50,000
김■임	115,000	이■민	50,000	한■애	50,000
김■화	50,000	이■천	50,000	현■정	50,000
김■연	6,690,000	이■신	60,000	형■숙	60,000
김■희	50,000	이■자	50,000	홍■자	950,000
김■	50,000	이■인	50,000	홍■주	100,000
나■숙	50,000	이■정	50,000	홍■숙	50,000
노■은	50,000	이■수	520,000	황■임	50,000
문■숙	50,000	이■미	50,000	황■정	50,000
박■자	50,000	이■원	50,000	황■주	50,000
박■주	50,000	이■경	50,000	행정오류(미*미)	130,000
박■정	95,000	이■순	50,000		
박■순	50,000	이■옥	105,600		
합 계					22,945,600

※ 출자금 환급은 2020년 3월 26일 이사회 승인 후, 2020년 3월 28일 환급하여 사후 승인 요청
 - 사유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총회 연기로 환급요청 민원 발생

1-2 2019년 탈퇴조합원 탈퇴 현황: 가입기간, 탈퇴사유별

가입기간	총계	이사	의료기관 미이용	조합불만	무응답	시설입소	기타
총계	125	67	10	3	34	1	10
10년 이상	18	4	3		7	1	3
5년 이상 10년 미만	53	31	2	2	16		2
2년 이상 5년 미만	41	24	4	1	9		3
2년 미만	13	8	1		2		2



제3호 의안 2019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19년에 이사회 승인을 득한 변경된 사업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63조 제3항

※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년 사업예산전용 이사회 승인 내역

1. 요약

- 2019년도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자산)예산을 적시된 사유로 일부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 이사회 승인 후 정관 제63조 제3항에 따라 자산 취득 변경 건을 총회에 사후 승인 요청함.

2. 총회 승인 예산 변경 현황

구분	최초 승인 예산	원안 집행	미수립 예산 집행(전용)	미집행	계
건수	4	2	4	2	12
금액 (원)	91,000,000	82,954,000	6,710,000	-	89,664,000

3. 예산 변경 세부내역

구분	품명	'19 수립 예산 (단위: 원)	취득일	집행결과 (단위: 원)	이사회 승인일	사유
의료기	검진 내시경 세트 교체	80,000,000	'19. 5. 21	78,000,000		원안 집행
	내시경 운용 게이트웨이 PC	-	'19. 4.11.	4,000,000		원안 초과 집행
	아네로이드 혈압계	-	'19. 4.16.	1,320,000		수은혈압계 대체
	양팔 혈압계	-	'19. 4.16.	990,000		수은혈압계 대체
	Mammo 카세트	-	'19.10.11.	1,100,000		정도관리
	심전계	-	'19.11. 1.	3,300,000		노후기기 교체
	의료기기 소계	80,000,000		85,410,000		
비품	의원 쇼파 교체 및 집기비품	5,000,000	'19. 4.19.	954,000		원안 집행
	비품 소계	5,000,000		954,000		
시설장치	치과 간판 교체	4,000,000	-	미집행		연장 사용
	한의원 등 간판 교체	2,000,000	-	미집행		연장 사용
	시설장치 소계	6,000,000		-		
총 계		91,000,000		89,664,000		

제4호 의안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5호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201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i. 총평

ii. 활동 보고

1. 설립이념 및 정관에 따른 2019년도 사업 실적
2. 2019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
3. 마을주도 통합 돌봄 사업 실적
4. 정부 및 지자체 위탁 사업 실적
5. 단위 부서별 계획 대비 실적

iii. 2019년도 결산(안)

1. 주요실적
2. 자본결산
3. 수지계산서
4. 재무상태표
5. 예산 대비 집행계산서
6. 부서별 매출 / 손익 안분 적용

iv. 민들레 10원칙 실적 보고

i 총 평

1. 활동보고 총평

2019년은 ‘마을주도 통합돌봄 모델을 만드는 해’로 정하고, 조합원에서 건강리더로 건강리더에서 대의원으로, 건강반을 중심으로 소생활권 주민조직, 민관협치에 기반한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구축을 세부과제로 삼았다.

우리 조합의 지난 17년간 이어온 활동을 근거로 조합원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민들레의 이념을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에도, 조직의 내실화에 대한 부족함과 사회적경제 확장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맞추기 위한 사업기조였다.

2019년 우리 민들레는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민관협치 기반을 통한 **민들레형 마을주도 통합 모델**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조합의 기초 조직강화를 위한 조합원 주도의 대의원 선출을 훌륭하게 마감하였다. 그리고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한 소생활권 주민조직인 건강반을 활성화시키고 유지시키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으며, 대덕구형 동네돌봄의 모델 구축에 민관협치를 통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2019년도 사업기조에 따른 사업 실적은 목표 대비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외부 위탁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조건이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직원 스스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방향의 흔들림 없이 목표를 유지하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 민들레는 2019년도에 잘 다져진 기초를 이어받아 내부 조직과 연계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전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2020년도에 이어가야 하겠다.

2. 조합경영 총평

2019년 6월 30일자 둔산지점의 사업 종료로 인한 조직의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과 임직원이 힘을 합쳐 3년 연속 흑자 경영 구조를 만들었다.

그동안 누적적자와 협동조합의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과 자신감을 잃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성과는 단순 경영적 흑자 논리를 떠나 매우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2019년도 흑자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의원 검진의 혁혁한 매출 신장에 기인하였다. 이는 원장단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헌신으로 치과와 한의원의 부진을 만회하고 그 이상의 성과를 도출시켰다.

둘째, 조합의 적자해소를 위한 직원들의 공헌을 볼 수 있다. 토요일 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를 대체 휴무로 감당하여 더욱 높아진 노동강도를 이겨내고 만든 절감된 비용이 약 1,300만원을 상회하였다.

셋째, 현금유동의 흐름을 적절히 읽어내어 안정된 현금유동성 확보 및 이자비용 절감을 만들었고, 예측 가능한 상환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저금리 차입을 실현하였다.

넷째, 철저한 예산 수립과 전체 예산에 맞추어 적절한 비용 통제로 사업을 전개하여 수지 균형을 맞추었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 지원금 등 정부 재원을 적극 수급하여 영업수지 적자분을 충당시켰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에 따른 당연한 지원금이나, 건전한 경영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영업수지의 흑자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들레 의료를 믿고 이용한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우리 민들레는 흑자 구조의 선순환 경영 시스템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발전시켜 누적적자 조기 해소와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믿음직하고 선도적인 협동조합으로 지켜내야 하겠다.

ii 활동 보고

1. 설립이념 및 정관에 따른 2019년도 사업 실적
2. 2019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
3. 마을주도 통합 돌봄 사업 실적
 - 1) 민들레형 동네 돌봄 구현도
 - 2) 참선 주요 활동 실적
 - 3) 지역사회의료센터(재가의료팀) 활동 실적
 - 4) 조직활동 주요 실적
4. 정부 및 지자체 위탁 사업 실적
5. 단위 부서별 계획 대비 실적

1. 설립이념 및 정관에 따른 2019년도 사업 실적

1-1 설립이념에 따른 2019년도 사업 실적

설 립 이 념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2.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 나간다.3.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4.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조합의 존립과 지속 발전
 - 조합원 수 : **3,797명**
 - 출자 금액 : **1,146,439,922원**
- 협동조합으로 운영
 - 총회(대의원) : 매년 개최(2019. 2. 23.)
 - 이사회 : 매월 개최(2019년 총 12회 개최)
 - 기타 위원회 운영
- 건강 자치력 향상 및 서로 돌봄 활동
 - 건강반, 건강리더 양성 및 취약계층 돌봄 활동
- 스스로조합비(기부금) 모금을 통한 재분배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 연대활동 참여
 - 여타 단체 및 협동조합 등에 출자, 회비 납부, 운영 참여 등

②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 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 환자권리장전을 준수하는 의료기관 운영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검진센터 등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역사회의료센터(재가의료팀) 운영
 - 왕진,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구강건강서비스 등 기타
-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개선
 - 장애인주치의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왕진사업 등 참여
- ICT를 접목한 노인 치매·낙상예방 활동
 - 건강리더의 편편(funfun) 사업 전개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의 마을주도 통합돌봄 민들레 모델링
 - 케어메니지먼트를 위한 케어메니저 양성
 - 고령층,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한 돌봄 사례 발굴

③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 건강 자치력 향상 활동
 - 건강반 활동 지원 및 건강리더 양성
 - 건강화폐 운영 : 조각통장 발행 및 조각 지급
- 맞춤형 건강교육
 - 장애인의 작업치료
- 지역사회연계 보건예방활동
 - 금연상담, 행복상담소 건강상담 등
- 예방 교육용 영상자료 제작
 -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자의 질환관리교육용 영상

4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 주민 자치, 협동을 위한 민관협치 참여
 - 대덕구형 동네돌봄 시스템 구축 일익 : 워킹그룹, 기획회의, 시행팀 회의 참여
 - 주민자치회 건강복지분과 활동
 -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수탁 운영
- 동네돌봄단 지역사회 건강자원조사
- 법1동 마을축제 공동주관 진행
- 건강리더를 통한 주민 참여 전개
 - 돌봄영역 사각지대 주민을 건강리더가 방문하여 안부확인, 건강상태확인, 병원동행, 낙상위험환경평가, 치매·낙상예방운동 지원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함.
- 한밭레츠 지역화폐 '두루' 통용
- 대전 푸드플렌네트워크 참여
- 대덕 푸드플렌네트워크 참여

1-2 정관에 따른 2019년도 사업 실적

□ 2019년도 전체 사업량 대비 주사업 비율 실적
 <정관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구분			사업비(단위: 원)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총계(A)			2,760,637,405	2,739,131,419
주 사 업	지역주민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인건비	1,618,739,361	1,618,790,889
		의약품	295,279,532	314,189,222
		보건예방활동비	72,000,000	53,996,995
		기타운영비	723,683,512	707,837,210
	소계(B)		2,709,702,405	2,694,814,316
기 타 사 업	조합원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교육훈련비	9,255,000	9,728,530
		회의비	10,080,000	9,437,585
		조직활동비	4,000,000	959,510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연대활동비	17,600,000	18,182,176
	조합 홍보 및 지역 사회를 위한 사업	홍보활동비	10,000,000	6,009,302
	소계		50,935,000	44,317,103
주사업 비율 (C=B/A)			98.15%	98.38%

㉔ 2019년도 총공급고 조합원 이용률 산정 (2019. 12. 31. 기준)

<정관 제62조>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구분		비율(%)		산출근거	비고 (법정 의무 비율)
조합원 이용률	인원 대비	평균	33.9	$\text{평균} = \left(\frac{\text{당해 조합원연인원}}{\text{전년 총 연인원}} \right) \times 100\%$ $= \left(\frac{19,158}{56,490} \right) \times 100$	50% 이상 (일차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인정)
		산정 비율	40.0	$\text{치과} = \left(\frac{\text{당해 조합원연인원}}{\text{전년 총 연인원}} \right) \times 100\%$ $= \left(\frac{2,151}{5,373} \right) \times 100$	
	금액 대비	평균	41.3	$\text{평균} = \left(\frac{\text{당해 조합원매출}}{\text{전년 총매출}} \right) \times 100\%$ $= \left(\frac{1,045,585,804}{2,532,099,263} \right) \times 100$	
		산정 비율	60.8	$\text{검진} = \left(\frac{\text{당해 조합원매출}}{\text{전년 총매출}} \right) \times 100\%$ $= \left(\frac{273,996,865}{450,995,512} \right) \times 100$	

㉕ 2019년도 자산대비 출자금 유지 비율 (2019. 12. 31. 기준)

<정관 제18조 제5항>

㉕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비율	산출근거	비고 (법정 의무비율)
자산대비 출자금 비율	52.38%	$\left(\frac{\text{출자금}}{\text{총자산}} \right) \times 100\% =$ $\left(\frac{1,146,439,922}{2,188,676,487} \right) \times 100$	50% 이상

1-3 2019년도 주사업 실적

①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실적

<p>가. 의료시설 운영</p>	<p>○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건강검진센터 운영 [둔산 치과의원 6월30일 사업 종료('19총회 의결)]</p>
<p>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p>	<p>○ 건강 자치력 향상 활동 - 건강반 활동 지원 및 건강리더 양성 - 건강화폐 운영 : 조각통장 발행 및 조각 지급</p>
<p>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p>	<p>○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운영 - 돌봄 시스템 구축 - 케어메니저 양성교육 및 활동 - 건강리더 돌봄서비스 활동 - 사례건강반 운영 ○ 재가의료팀(지역사회의료센터) 운영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장애인주치의 서비스 ○ 취약계층 등 의료비 지원 ○ 비보험 진료비 조합원 할인, 적립</p>
<p>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p>	<p>○ 맞춤형 건강교육 - 작업치료사의 장애인의 작업치료 및 교육 ○ 지역사회연계 보건예방활동 - 금연상담, 행복상담소 건강상담 등 ○ 예방 교육용 영상자료 제작 -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자의 건강 증진용 동영상 ○ 건강리더 양성과정 - 동네돌봄 활동가 32명 수료</p>
<p>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p>	<p>○ 대전 충청 보건의료연대 활동 ○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활동 참여 ○ 사회적인료기관협의회 활동 참여 ○ 대덕구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와 연계 - 절주, 금주 교실 운영 ○ 대덕구 보건소 - 건강의 달인 민들레 건강교실 운영</p>
<p>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p>	<p>○ 한발레츠 '두루' 거래 ○ 건강화폐 '조각' 발행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프로젝트 수행 - 산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p>
<p>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p>	<p>○ 조합원 및 단체의 활동 공간 제공 - 3층 회의실 및 지하 공간 개방 ○ 노래교실 운영 - 주1회</p>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1] 현황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 내용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주민참여 커뮤니티케어 기반 조성 및 의료·건강 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공동체지원센터 수탁		대덕구	공동체 중간지원 조직
액티브에이징을 위한 고령자 자립 생활지원 서비스디자인		산업통상 자원부 [㈜디맨드]	웰패밀리하우스의 종단적 사용자경험 평가를 위한 실증연구
생활중심형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통합 운영 솔루션 개발		대전정보문화 산업진흥원 [㈜봄소프트]	고령자 건강요구진단시스템 개발 실증연구
정부 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대덕구	일자리 제공(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두드림 일자리 지원사업	대전경제통상 진흥원	일자리 제공(사회적기업)
참여	2019 NPO 연계형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	청년재단	일자리 제공(비영리단체)

2] 외부재원 활용 사업 수행 실적

프로젝트명	사업비(원)	기관
주민참여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지원 ICT통합솔루션개발사업	249,900,000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주민참여 커뮤니티케어 기반 조성 및 의료 건강 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290,467,000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 사회적경제연구원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디자인	15,400,000	전담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기관 : 주식회사 디맨드
계	555,767,000	

3] 정부지원금 수급 실적

단체명	사업비(원)	사용처
대전고용노동청	15,369,240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고용안정) - 2명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5,706,350	대전형일자리두드림사업 인건비지원 - 2명
청년재단	17,500,000	NPO연계형 청년일경험확동지원사업 - 2명
대덕구청	51,914,470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 - 4명
계	100,490,060	

1-4 2019년도 기타사업 실적

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조합원 및 직원 교육
 - 대의원 씨앗모임 및 교육
 - 직원CS교육
 - 직원 연차별 리더십, 업무교육
 - 직원 지역관리기업 교육
 - 임직원 워크숍 진행
- 지역주민교육
 -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케어매니저 양성교육
 - 중년남성 건강리더 교육

②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 민들레조합원 자원조사 사업
- 동네돌봄단 대덕구 건강자원조사
- 법1·2동 공간자원조사

③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 우리조합에 출자한 법인(협동조합)
 - 한살림대전, 한밭생협, 아이쿱대전, 품앗이생협, 품앗이마을, 사경원
 - 3,000만원
- 우리조합이 외부 법인(협동조합)에 출자
 - 의료사협연합회 등 14개
 - 50,292,620원
- 회비납부 단체
 - 의료사협연합회 등
- 활동 참여 단체
 - 대덕품앗이협동조합 등

④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조합 정기간행물 발행
 - on, off-line 소식지
- 민들레 홍보 브로셔 발행
 - 민들레 소개, 의료기관 안내, 건강반 소개 등
- 스마트주치의 모바일 건강 상담 및 정보 제공
- 지역현안, 핵안전 관련 연대
- 푸드플랜네트워크 참여
 - 대전푸드플랜네트워크
 - 대덕푸드플랜네트워크

5 임대사업

- 옥상 중계기 임대
 - 2개 업체(KT, SKT)
- 둔산 유희공간 임대
 - 마음의숲협동조합
- 기타 단체 무상 임대
 - 대덕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등 5개 단체

2. 2019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

2-1 5대 핵심지표

① 달성 실적

구분	목표	성과	세부 내역
조합원	총 조합원 4,000세대	3,797세대 신규 173세대 탈퇴 125세대	조합원 권유 5명 홈페이지 8명 의료기관방문 107명 사무실 41명 건강리더,건강반 활동 5명 기타 7명
출자금	증좌 1억원	출자금 총 누계액 :1,146,439,922원 △145,263,289원	증가 181,052,311원 감소 326,315,600원
건강리더	신규 30명	32명	참여 조합원 22명 조합원 참여율:68.7%
건강반	총 40개 (400명 반원)	48개 (반원 : 438명)	참여 조합원: 119명 (가족조합원 포함) 조합원 참여율: 27%
스스로조합비	400세대	207세대	전체조합원 대비 5.45% 스스로조합비 - 총액: 27,470,000원 - 월평균 액수: 2,289,166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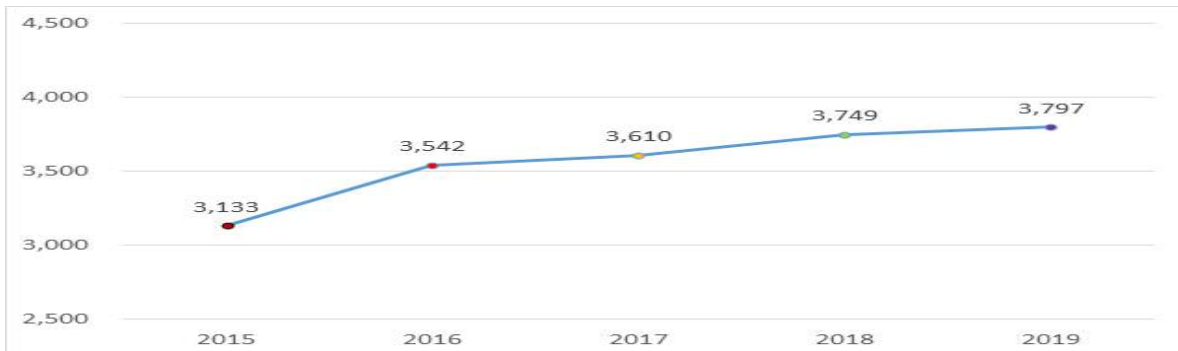
② 실적 분석

1] 조합원

- 조합원은 3,797명으로 최근 5개년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소폭 증가 추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증가폭이 오히려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된 상태라 할 수 있겠다.
- 이는 조합원 조직사업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 2016년부터 시작된 외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위주의 사업보다 범 지역주민의 사업으로 확대된 것으로 기인한다고 판단되며, 이는 조합원 증감폭으로 확인된다.
- 2019년도 탈퇴조합원은 그동안 최고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둔산 치과를 이용하는 조합원이 6월 30일 사업 종료로 탈퇴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 2020년도에는 이를 극복하고자 조직사업(사무처)과 위탁사업(참선)의 전담 부서를 분리 운영하여 조합원 조직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최근 5개년 조합원 변동 추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총 조합원(세대)	3,133	3,542	3,610	3,749	3,797	
신규 조합원	428	290	170	243	173	
탈퇴조합원	83	61	107	101	125	



○ 최근 5개년 신규, 탈퇴 조합원 추이



2) 출자금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출자금은 1,146,439,922원으로 2016년 1,372,695,591원 이후 대폭 감소하였다.
- 그 원인은 2015년 우리건물 갖기 운동에 동참한 고액 출자 조합원의 가계자금 필요로 출자금 환급이 진행되었다.
- 우리건물 갖기로 재정 및 조합 운영의 안정화를 이루었으나, 고액 출자자의 출자금 환급으로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이 다소 발생하였고, 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만회하였다.
- 2019년도에는 고액 출자금 환급에 따른 현금 유동성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6월부터 시행된 조합원 건강 지원비(비보험 진료 할인액)의 출자 적립금 및 다양한 소액증자 조합원을 확대하여 운영의 안정화를 꾀하였다.
- 우리 민들레의 소액증자 방법은 자동이체 증자, CMS이용 증자, 직원 정기증자, 조합원 건강 지원비(비보험 진료 할인액) 증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 해당 정기증자는 약 300여 명의 조합원으로 연간 약 1억원 가량이 증자되어 조합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 정기증자 현황

구분	자동이체 증자	CMS이용 증자	직원 정기증자	조합원 건강 지원비	계
금액(천원)	약28,000	약25,000	약39,000	약10,000	약102,000

○ 최근 5개년 출자금 변동 추이

2015	2016	2017	2018	2019
1,304,842,581원	1,372,695,591원	1,299,503,241원	1,291,703,211원	1,146,439,922원



3] 건강리더

- 스스로 자기 건강을 돌보며,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의 건강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마을주도 통합 돌봄의 주체로서 지속적인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 2019년도에는 3기수 교육으로 32명을 배출하였다.
- 2020년에 펼쳐질 다양한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으로 교육 이수 후 조합과의 관계 설정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향후 우리 민들레를 이끌 중추적인 역할수임자로 양성해야 하겠다.

4] 건강반

- 건강반은 스스로 건강자치력을 유지, 향상시키는 민들레의 소모임으로,
- 2019년도는 외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48개에 달하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지원금 종료에 따라 건강반 활동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 예측 되어 진다.
- 따라서 우리 민들레는 건강반이 지원금으로 유지되는 모임이 아니라, 참여자 스스로 건강 증진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지속 유지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건강반 운영을 기획하여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5] 스스로조합비(기부금)

- 우리 민들레는 2002년 설립 이래 지역 주민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건예방활동 사업과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 그러나 상당한 금액의 누적적자로 인한 부담을 감당하고, 보건예방활동 사업비의 재원을 조합원과 함께 해결하고자 기부금(스스로조합비)을 모금하여 충당하고 있다.
- 2019년도에는 스스로조합비 조합원 207명으로 27,470,000원을 모금하였고 매년 증가 추이에 있다.
- 우리 민들레는 이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보건예방활동 사업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 도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③ 대의원 조직

- 대의원은 민들레 조합원 대의체제를 행하는 조합원으로 조합원 유형에 따라 선출 함.
- 현재 민들레는 제8기 대의원 110명으로 구성되어,
- 2020년 ~ 2022년까지 임기 3년간 역할을 함.
- 대의원을 단순 의사 결정자를 넘어 조합 운영과 조합의 다양한 활동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이 사뭇 증가 됨.
- 대의원 역할을 효율적으로 전개키 위하여, 대의원 새싹모임을 개최하였고,
- 대의원 역할 수임에 따른 필요 비용을 2020년도 사업예산에 편성함.
- 나아가 대의원 활동을 고민하고 지속시키는 구심점으로 자치회를 신설할 예정임.
- 이를 통해 대의원 활동이 민들레흙씨처럼 확산될 것을 기대하며, 민들레의 가치를 나눌 뿐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제8기 대의원 구성 현황
 - 총 110명, 조합원 유형별 선출

구분	소비자 (건강반원)	직원	자·봉 (건강리더)	후원 (스·조)	계
선출인원(명)	45	20	20	25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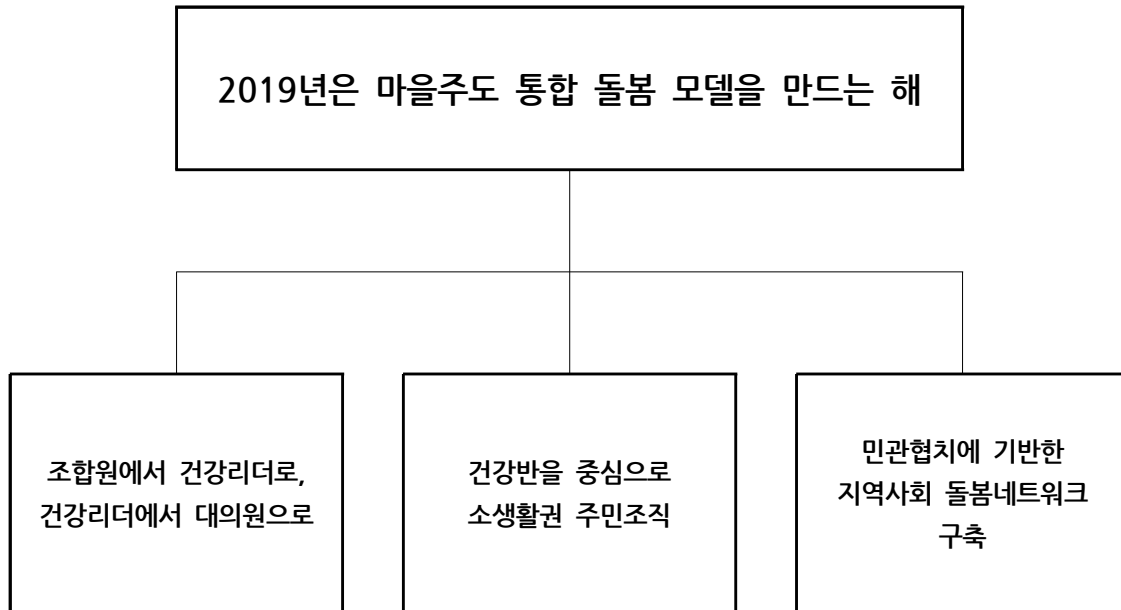
2-2 2019년도 총회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실적

㉠ 사업실적 총괄표

구분	계획		성과	비고
5대 지표	조합원	총조합원 4,000명	3,797 명	
	출자금	증좌 1억원	증자 100,839,311원 출자금 총액 : 1,146,439,922원	
	건강리더	30명	32명 (조합원 : 22명)	
	건강반	40개 (반원:400명)	48개 (반원: 438명 / 조합원: 119명)	
	스스로조합비	400세대	207세대	
대덕둔산치과 통합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6. 30. 사업종료 ○ 둔산 직원 2명 대덕 근무 	
사업 기초에 따른 사업 계획	1. 조합원에서 건강리더로 건강리더에서 대의원으로		○ 건강리더 조합원 총 22명 중, 대의원 12명 선출	
	2. 건강반을 중심으로 소생활권 주민조직		○ 건강반 48개 운영 반원: 438명(조합원: 119명)	
	3. 민관협치에 기반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 자원 조사 - 자원 목록화(DB구축) : 99개 - 활용 및 연계 시스템 구축 	
주요 사업 계획	비보험 진료비 조합원할인액 출자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기간: 2019. 1. 1 ~ ○ 시행일 : 2019. 6. 1. ~ ○ 총 적립액: 6,228,311원 	
	신사업추진단 발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족일: 2019. 4. 18. - 회의 개최 횟수 - 정식 3회, 온라인회의 수시 ○ 건물매입 검토, 치과 통합운영 등 	
	직원 역량강화 및 CS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교육 횟수 : 9회 - 의무법정교육 : 온라인 2회 - 역량강화교육 : 5회 - 협동조합강해 : 2회 ○ CS교육 실시: 3회 	
	비용절감	유연근무		○ 시간외근무수당 대체휴무 절감 액: 13,619,680원
이자비용절감			○ 대환대출 이자비용 절감 ※ 차입 증가액: 약2억6천만원 - 절감 액: 1,351,556원	
예산준칙 준용			○ 수립예산 대비 집행 실적 - 98.9%	

㉔ 사업기조에 따른 세부 실적

□ 2019년 사업기조



1] 조합원에서 건강리더로 건강리더에서 대의원으로

세부 목표	세부사업 계획	성과
1) 마을과 링크 (LINK) : 마을정보센터	① 마을소식이 담긴 조각보(소식지) : 마을신문, 노인복지관 기자단 ② 마을을 품은 민들레 ▪ 마을 및 마을주민의 건강육구를 의료협동조합이라는 그릇을 통해 모으고 실현해나가는 과정 설계 ③ 마을 속 민들레 ▪ 활동(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얻게 된 다양한 마을정보를 건강리더(직원, 조합원, 지역주민)을 통해 지역과 나눔 ▪ 정보를 통해 마을(주민)과 소통	○ 민들레 소식지 ON, OFF - Line 발행 - 인쇄물 소식지 : 3회 발행 - ON - Line 소식지 : 5회 발행 ○ 스마트주치의를 통한 건강활동 공유 - 기사 발행 5회 ○ 민들레 홍보 브로셔 발행 - 민들레 소개, 의료기관 안내, 건강반 소개 등 • 2020년을 목표로 마을신문 발행 : 미이행 • 마을기자단 : 미조직 ○ 건강리더 양성교육 조합원 참여 - 3기수 32명(54명 참여) 이수, - 조합원 22명 이수 참여율 69% ○ 동네돌봄단 활동 - 지역사회 건강자원조사 실시 ○ 주민자치회 건강복지분과 활동 ○ 법1동 마을축제 공동주관 진행 ○ 건강리더를 통한 주민 참여 전개 ○ 청소년안녕학교 진행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 활동을 통한 정보교류 ○ 마을활동 인력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려 - 4명(법동, 송촌동 거주) 채용 (3명 연속근로)
2) 조합원에 의한 운영관리	① 조합원 욕구 및 참여에 기반한 활동과 사업	○ 의료기관 자율점검표에 의한 점검 시행 - 년1회 실시 결과 보건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차의료센터 의료서비스 양과 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 조합원의 건강육구를 담은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미션과 활동(홍보, 참여구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투자를 통한 의료기관 서비스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시경 장비 교체 - 백신 전용냉장고 교체 - 수은 혈압계 사용 중지예 따른 대체 장비 구입 활용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미션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마을주도건강돌봄 시스템 구축 - 케어매니저, 건강리더, 건강반장 직무분석 및 인력양성 - 지역사회 건강자원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주민의 건강반을 통한 건강자치력 향상 										
	<p>② 조합원에 의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민들레 사회성과 지표관리 위원회 구성: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 주요지표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민들레 사회성과 지표관리 위원회 구성 : 미조직 • 주요지표 공시: 미이행 										
<p>3) 조합원 의사 소통체계 공고화</p>	<p>① 민들레 의사소통 경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원선출을 계기로 조합원 교육 및 의사소통 경로 확보를 위한 자치회 구성 및 예산 편성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총회시 구성, 예산 2,500만원 편성 ○ 대의원선출을 위한 대의원 씨앗모임(TF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운영 										
	<p>② 2020년 대의원 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민들레 이해관계자와 접점이 있는 조합원(건강리더) ▪ 이해관계자: 의료기관 이용자, 건강자치력 향상 활동(건강반, 건강리더)참여자 등 ▪ 지역별 대의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임 대의원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10명, 조합원 유형별 선출 <table border="1" data-bbox="996 1021 1563 1161"> <thead> <tr> <th>구분</th> <th>소비자 건강반</th> <th>직원</th> <th>자·봉 건강리더</th> <th>후원 스·조</th> </tr> </thead> <tbody> <tr> <td>선출인원 (명)</td> <td>45</td> <td>20</td> <td>20</td> <td>25</td> </tr> </tbody> </table> 	구분	소비자 건강반	직원	자·봉 건강리더	후원 스·조	선출인원 (명)	45	20	20	25
구분	소비자 건강반	직원	자·봉 건강리더	후원 스·조								
선출인원 (명)	45	20	20	25								

2] 건강반을 중심으로 소생활권 주민조직

세부 목표	세부사업 계획	성과
1) 건강을 중심으로 지역조직	① 주민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육구별, 지역별 다양한 신규 건강반 조직 ▪ 기존 공동체 활동 촉진을 통한 건강반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계기로 조합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활동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반 총 48개 조직, 반원 : 438명 - 참여 조합원: 119명, 조합원 참여율: 27% ○ 건강자원(공급기관)이 당사자 조직으로 참여하는 마주봄협동조합 출자 및 설립 운영 기여
	② 건강자원(공급기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반의 건강문제해결 및 건강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건강자원 조사·발굴·연계 ▪ 공급기관 네트워크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구형동네돌봄을 위한 공급기관 네트워크: 10203차 병원 네트워크, 복지기관 네트워크 등 공공자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선 주관 네트워크 구축 : 총 99개 단체 ○ 건강자원 확보를 위한 조합원 자원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조합원 3811세대 중 2,800명(73.4%) - 참여 조합원: 160명(5.7%)
2) 네트워크	① 건강주제별 네트워크: 주민, 공급기관 ② 활동지역별 네트워크: 주민, 공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등록 99개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public, market, social) 자원 조사 - 자원 목록화(DB구축) - 활용 및 연계 시스템 구축

3] 민관협치에 기반한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구축

세부 목표	세부사업 계획	성과
<p>1) 지역사회 돌봄 욕구 파악 : 건강리더 활동 연계</p>	<p>① 지역사회 주민 건강/돌봄 욕구 조사 ② 지역건강조사</p>	<p>○ 충남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단 산학공동 기술개발 연구과제 ‘동네돌봄단’ 마을건강조사 실시 - 9월~10월 - 마을주민 12명 참여</p> <p>○ 건강자원 확보를 위한 조합원 자원 조사 실시 - 전체 조합원 3811세대 중 2,800명(73.4%) - 참여 조합원: 160명(5.7%)</p>
<p>2) 지역사회 돌봄 자원 네트워크</p>	<p>① 기존 자원 목록화</p>	<p>○ 공공, 사회적경제 영역 자원 목록화</p>
	<p>② 신규 자원 발굴 및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의료팀 신설: 방문의료서비스 ▪ (가칭)마을돌봄협동조합 설립: 신규사회 서비스, ICT기반 건강관리서비스 </p>	<p>○ 재가의료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2019. 1. 1 ~ - 의사, 한의사, - 가정전문간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p>○ 마주봄협동조합 설립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 및 임원 참여 </p> </p>
	<p>③ 공공, 민간, 소셜 자원 네트워크 구축</p>	<p>○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개 단체 구축 - 행정, 복지관, 3차의료기관, 보건소, 노인시설 등 </p>

3) 민관협력형 지역 사회 돌봄 네트워크 워크 구축	① 대덕구 커뮤니티케어 워킹그룹, 추진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구형 동네돌봄 모델구축을 위한 민관워킹그룹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를 통한 사업 및 예산의 근거마련 ○ 대덕구 지역케어회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체계마련
	② 법동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주도 통합 돌봄 모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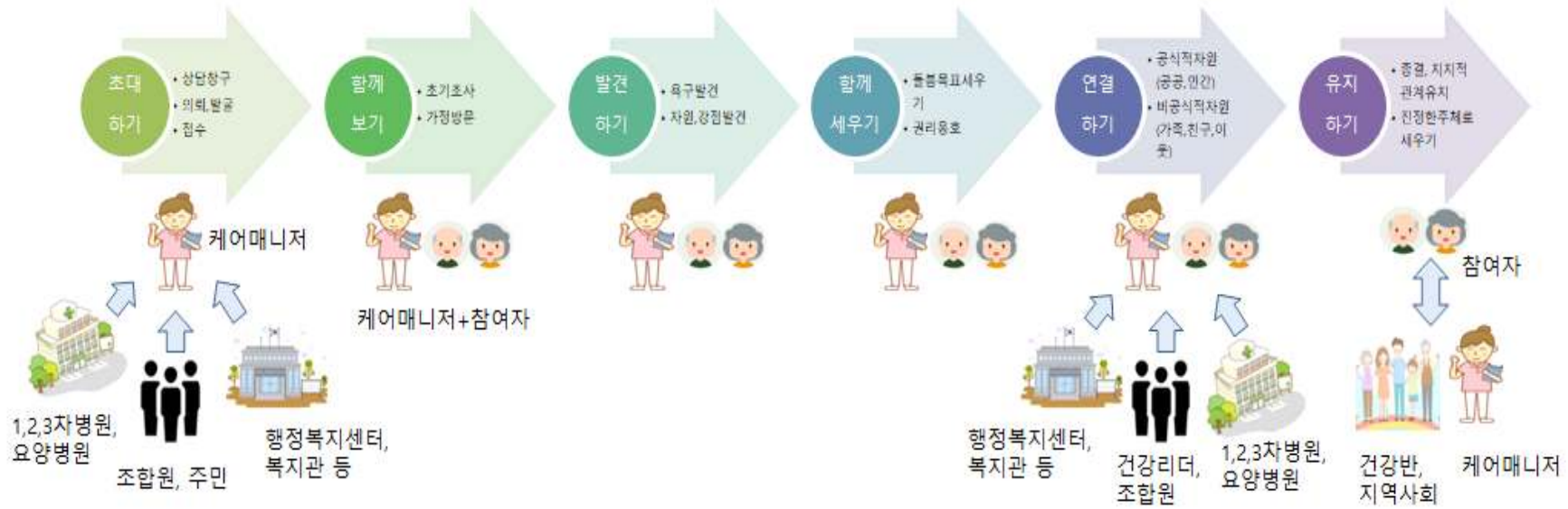
③ 조합 경영 계획에 따른 실적

세부사업 계획	성과
1] 의료기관 이용시 비보험진료비 조합원할인액 출자적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 2019년 6월1일 ○ 조합원 진료비 지원액 출자금 적립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기간 : 1월 ~ 5월 ○ 2019년도 총 적립액 : 6,228,311원
2] (가칭)민들레 신사업준비단(TFT)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운재(단장), 나준식, 김성훈, 송직근, 김지훈, 한영수 ○ 정식 3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온라인 소통 ○ 주요 추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우리건물 갖기 검토 - 진료비 할인액 출자금 적립 - 치과 통합운영 방안 수립 등
3] 직원 역량 강화 및 CS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의무교육 : 연 2회 중 2회 실시 ○ 전직원 정기교육 : 연12회 중 6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 교육 : 3회 - 감수성 교육 : 2회 ○ 직원 위탁교육 : 5회 실시 (마음의숲협동조합) ○ 자격유지 보수교육 : 진행중
4] 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금리 이자 저금리 이자로 대환대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액은 2억6천만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 130만원 이자 비용 감소 ○ 시간외근무 대체휴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감액: 13,619,680원

3. 마을주도 통합 돌봄 사업 실적

3-1 민들레형 동네 돌봄 구현

① 민들레형 통합돌봄 구현도



② 민들레형 동네 돌봄 성과

주요 항목	성 과
<p>마을주도통합 돌봄 모델 구축 (대덕구형 동네돌봄)</p>	<p><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마을주도 통합돌봄 모델 구축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대학교 링크+사업단, ‘대전충청권커뮤니티케어협의회 MOU’체결 - 대덕구형 동네돌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기획팀, 시행팀회의 참여 - 일본 이바라기현 ‘사회복지법인 21세기회’ 대전시의회, 대덕구, 대전 충청권 커뮤니티케어 협의회, 민들레의료사협 방문 및 교류의 장 마련 - 대덕구형 동네돌봄 추진 워크숍 참선 주관 개최 - 대덕구형 동네돌봄 민관협의기구 구성 간담회 참여 - 케어매니저 양성 기초교육과정 참선 운영
<p>민들레형 동네돌봄 모델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차병원 입퇴원시스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민들레의료사협 간담회 ○ ICT주민참여커뮤니티케어시스템을 활용하여 건강상태평가 및 케어 플랜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어매니지먼트 참여60명(노인33명, 장애인27명), - 직접서비스 292회(방문상담 173회, 전화상담 94회, 내방상담 25회) - 자원연계 907회(공공-민간사회적경제) ○ 건강리더 돌봄활동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안부확인 및 말벗 서비스에서 낙상 환경평가 및 낙상 예방운동으로 확장 - 건강리더 16명, 돌봄참여주민 69명 ○ 건강취약계층 건강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어매니저의 케어플랜을 통한 사례건강반 5개 운영, 45명 참여 - 노인,장애인,영양,만성질환 등 ○ 지역사회사례공유 및 네트워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사례회의 및 대덕구 법1,2동, 유성구 온천2동 통합사례회의 참여 - 대덕구 지역케어회의 참여 ○ 돌봄자원(인적,공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구 법1,2동 공간자원조사 및 조합원자원조사 실시

③ 동네돌봄 참고 자료

1] 용어 정의

○ 민들레형 동네돌봄

- 민들레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과 조합원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
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
봄, 사회서비스를 연결하고 주민의 참여로 건강과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케어매니저

- 참여자의 욕구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삶의 질을 최대
한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해주는 사람
- 민들레에서 1기 8회차 교육 실시

○ 건강리더

- 스스로 자기 건강을 돌보며,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의 건강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 2019년도 3기수 양성교육 진행

2] 공급자원 연계기관

- 행정 : 대덕구청, 법1,2동 행정복지센터(시범지역)
- 주거 : 대덕구청, 대덕구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공헌센터, 대전도시공사, 대전내주택공사
- 보건의료 : 대덕구보건소, 대덕구건강생활지원센터, 대덕구치매안심센터, 대전보훈병원,
대덕구정신 건강복지센터, 충남대학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 요양 : 한남요양병원, 보니파시오요양병원, 홍제요양병원, 대전가톨릭노인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 복지관 :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대전종합사회복지관
- 공동체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대덕구자원봉사센터
- 사회적경제 :
 - 영양 : 열린부뚜막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대덕품앗이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도원참사랑나눔,
 - 심리상담,영성 : 협동조합 마음정원영성센터, 코칭배달부 심청이협동조합,
치유공간마음의숲사회적협동조합
 - 운동 : 바른자세365협동조합
 - 여가,여행 : (주)여행문화학교산책, (사)한국청소년인성교육협회숲엔생태놀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대전체험여행협동조합
 - 주거환경 : (주)조은컴퍼니, (주)파란세상

3] 활동구축을 위한 연대 협의 기구

- 대전충청권커뮤니티케어협의회
- 대덕구 커뮤니티케어협의회
- 법1,2동 지역사회협의체

4] 민들레 주민참여 활동

- 주민참여를 위한
 - 케어매니저 양성 기초교육과정
 - 건강리더 양성과정
 - 건강반, 건강리더 돌봄활동
 - 동네돌봄단 지역건강자원조사
- 의료서비스 제공
 - 일차의료센터를 이용한 진료(취약계층 30% 의료비 지원)
 - 지역사회의료센터 활동
 -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왕진, 장애인주치의,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 방문재활서비스 제공(작업치료)

3-2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주요 활동실적

□ 역할

- 2019년도 사업기조인 마을주도 통합 돌봄 모델을 만드는 주무 부서
 - 마주봄 system 구축
 - 커뮤니티케어 민들레 모델 구축
 - 건강자치력 향상
 - 마을건강활동분야 주민참여 활동
 - 마을일자리 개발
 - 지역사회 건강자원 네트워크 구축
- 조합원 조직 및 조합활동 촉진
 - 건강반 조직 및 촉진
 - 건강리더 양성 교육 수행

□ 팀 구성

- 센터 소속 모든 직원 케어메니저 역할 수행
- 지역사회 조직팀 : 자원 발굴 및 조합원 조직화
- 사례관리팀 : 돌봄 대상 사례관리

□ 2019년 주요 활동 실적

- 커뮤니티 케어 민들레형 모델 개발 : 지역돌봄 모델 완성
- 수요자 중심 포괄 케어 모델 : 케어메니저 양성 교육
- 건강 자치력 향상 교육 훈련 수행 : 건강리더 양성 교육
- 건강반을 통한 건강자치력 향상 : 건강반 조직 및 촉진 및 사후관리
- 지역사회 건강자원 네트워크 구축 : 자원 목록화(DB구축) 과 활용 및 연계 시스템 구축
- 마을 일자리 개발 :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이수
- 마을건강활동분야 주민참여 : 마을건강위원 양성/활동

□ 성과 및 의의

2016년 부터 운영되어 온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는 조합원 및 주민 스스로 건강자치력 증진을 위해 외부 재원을 이용한 사업을 전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2019년도는 조합원을 넘어 사업기조인 지역돌봄 모델을 만드는데 민들레의 중추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 또한 민들레형 '케어메니저'를 양성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돌봄을 위한 큰 줄기를 구축해 내었다.

□ 주요 활동모습



민들레 건강리더 양성과정



민들레 케어매니저 양성과정



건강반 축제 개최



ICT를 활용한 건강리더의 돌봄활동



노인 치매·낙상예방 '편편'사업

3-3 지역사회의료센터(재가의료팀) 활동 주요실적

□ 역할

2019년 마을주도 통합돌봄 구현의 중요한 축으로서 발족한 '재가의료팀'은 재가(방문) 의료서비스 제공과 작업치료를 결합하여,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에 대한 왕진(의사)과 가정간호(가정전문간호사), 방문간호(간호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작업치료사)를 통한 포괄적 재가 의료서비스 제공

□ 팀 구성

- 의사, 한의사(의원, 한의원 겸직)
- 가정전문간호사, 간호사
- 작업치료사
- 치과위생사(치과 겸직)

□ 2019년 주요 활동 실적

- 재가의료서비스 제공(방문의료서비스)
 - 가정간호(건강보험) : 연인원 313명 (상반기 134명/하반기 179명, 월평균 26명)
 -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 : 연인원 159명(상반기 75/하반기 84명, 월평균 13명)
 -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 등록장애인 80명, 연서비스대상자 489명
 - 방문작업치료(전화상담 포함) : 왕진, 방문간호, 가정간호 시 동반하여 케어메니저 역할, 월 30건 이상 방문
- 건강 교육 및 건강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관리 집단교육실시 : 6회
 - 보건소, 주민센터, 장애관련 기관 교육 및 발표
 - 자체교육 뿐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건강교육 진행
- 지역사회연대(보건예방활동) 전개
 - 장애인금연상담 지원
 - 자체교육 뿐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건강교육 진행

□ 성과 및 의의

- 2019년도 민들레 시범사업으로 펼쳐진 재가의료팀의 발족에 기인하여
- 적극적 수요층 발굴과 왕진시범사업 전개 등으로 재정 자립 확보 및 역할 다각화를 통하여
- 2020년에는 지역사회의료센터로 확대 운영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주요 활동모습



장애인주치의 활동(뇌병변 장애인 진료 및 상담)



민들레 왕진 서비스



재가의료팀 가정간호 활동



행복상담소와 연계한 건강상담 활동



장애인주치의 활동(디딤돌반 건강증진 프로그램)

3-4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조직팀 활동 주요실적

□ 청소년안녕학교

- 목적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1%의 청소년 자원봉사 리더 양성
 - 청년멘토단과 청소년리더의 5가지 분야별 기획 자원봉사 활동 실천
- 일정: 2019.06.~07.
- 주최: 대덕구 자원봉사센터
- 성과
 - 대덕구 청년·청소년의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진행
 - 법동·중리동의 독거노인을 연계, 다양한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력
 - 민들레의료사협의 가치 및 건강관과 조합 홍보

□ 법1동 마을축제

- 목적
 - 법1동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 주민이 만드는 마을축제
- 일정: 2019.03.~10.
- 주관: 법1동마을공동체네트워크 마을꽃, 법1동 마을축제추진위원회
- 지원: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성과
 - 주민의 의견을 나누는 원탁회의에 조합원 및 주민 조직
 -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주민 주도의 축제 실현
 - 건강반과 건강리더가 직접 보드게임, 장애인식개선, 서예 및 캘리그래피 등 부스 운영
 - 건강상태 측정 및 상담으로 보건예방활동을 실천, 조합 홍보

□ 동네돌봄단

- 목적
 - 동네돌봄단을 모집하여 주민 욕구 조사와 돌봄 환경 파악
 - 주민참여 건강계획 수립
- 일정: 2019.07.~11.
- 주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민들레의료사협
- 성과
 - 주민이 직접 조사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민 인식 및 의욕 향상
 - 11개 영역별 건강자원 파악
 - 대덕구 동네돌봄의 주민 주체 발굴

□ 주요 활동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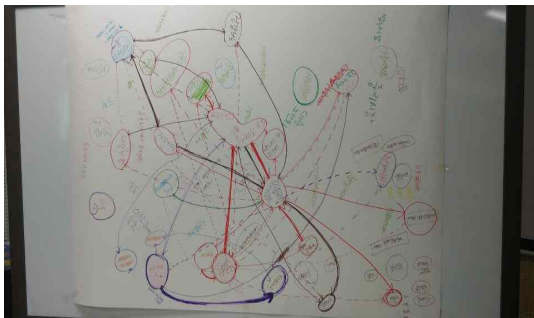
○ 청소년안녕학교



○ 법1동 마을축제



○ 동네돌봄단



3-5 조합원 자원조사 결과 보고

□ 목적

- 조합원의 직종 파악을 통한 전문분야에 대한 자원 DB구축

□ 개요

-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문자 링크)
- 기간 : 2019. 11. 19. ~ 26.
- 응답률 : 전체 조합원 3,811명 중 응답 인원 160명(4.1%)
- 설문 문답수 : 총 6문항
 (①기본정보 ②직업군 ③도움여부 ④자원내용 ⑤추천여부 ⑥하고싶은 말)

□ 성과

- 조합원의 인적자원, 도움에 대한 DB구축
 → 160명 / 683건의 도움 제공 의사 발굴

□ 자원DB 활용 방안

- 건강반, 건강리더 및 조합원에 대한 도움 필요시 전문직별, 지역별, 도움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원 연계
- 케어메니지먼트 사업에서 지역 자원과 함께 조합원 개인의 자원연계
 - 본 조사에서 얻은 DB를 활용한 전문적 자문과 상담 및 1:1 도움

□ 자원조사 결과 요약

1. 전문분야 + 직업별

구분	인원	%	구분	인원	%
관리직	63	32.8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28	14.3
교육 등 관련직	24	12.3	법률, 경찰, 소방교도 관련직	2	1.1
금융, 보험 관련직	2	1.1	보건, 의료 관련직	15	7.6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5	12.8	문화, 예술, 디자인, 관련직	2	1.1
운전 및 운송 관련직	5	2.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8	4.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5	2.5	미용, 여행, 스포츠 관련직	3	1.5
음식서비스 관련직	3	1.5	화학관련직	1	0.6
전기전자 관련직	1	0.5	정보통신 관련직	1	0.5
건설 관련직	3	1.5	환경, 목재, 생산 단순직	2	1.1
			농림어업 관련직	2	1.1
			합계	195	100

- 관리직: 교육관리자, 보건의료 관련 관리자, 경영지원 관리자가 많이 분포
- 경영, 회계사무직: 총무사무원, 기타 사무원이 많이 분포.
- 합계 195명: 중복 체크로 인한 누적 인원

2. 도움제공 유형별

구분	인원	%	구분	인원	%
보건의료	76	11.1	교육 및 돌봄	54	7.7
사회복지	77	11.1	직업	28	4.4
생활여가	82	12.0	권익보장	40	6.1
심리정서	72	10.0	주거환경	40	6.2
사회참여	51	7.3	이동지원	28	4.4
경제활동	33	5.2	문화예술	50	6.9
			민들레봉사활동	52	7.6
			합계	683	100

- 생활여가 : 책 읽어주기, 운동같이 해주기가 가장 많음
- 사회복지 : 사회복지기관 정보제공, 병원 동행이 가장 많음
- 합계 683명: 중복 체크로 인한 누적 인원

4. 정부 및 지자체 위탁 사업 실적

4-1 사업 추진 관련 근거

- 정관 제61조 [사업의종류] 제1항 제2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4-2 사업 수행 내역(요약)

순번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 내용	비고	
1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주민참여 커뮤니티케어 기반 조성 및 의료·건강 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2	공동체지원센터 수탁	대덕구	공동체 중간지원 조직		
3	엑티브에이징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디자인	산업통상자원부 [㈜ 디맨드]	웰패밀리하우스의 종단적 사용자경험 평가를 위한 실증연구		
4	생활중심형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통합 운영 솔루션 개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봄소프트]	고령자 건강요구진단시스템 개발 실증연구	2020년도 사업 개시	
5	일자리 및 지원금 수급	고용유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지원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대덕구	일자리 제공	
		두드림 일자리 지원사업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 제공	
		NPO 연계형「청년 일·경험지원 사업」	청년재단	일자리 제공	

4-3 단위 사업별 실적

㉠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1] 목적

- (R&D) 주민참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건강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ICT 통합 솔루션 개발
- (NON R&D) 주민참여 커뮤니티케어 기반 조성 및 의료, 건강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2] 수행기간

- 2019. 1. ~ 2019. 12. (12개월)

3] 주요사업 내용

- 총 사업비 : (R&D) 249,900천원, (NON R&D) 290,467천원
- 산업통상자원부
- (R&D) ICT 솔루션 요구사항 도출, ICT 솔루션 개발 관리 및 시범적용, 사용자별 솔루션 운영환경 구성, ICT 솔루션 실증 및 개선, ICT 솔루션 연동성, 확장성, 안정성 구축
- (NON R&D) MHC(건강반) 조직과 운영, 케어매니저 및 건강리더 양성, 주민참여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성과 운영

4] 주요 추진 업무 실적

① R&D 사업

- 사회적성과 : 건강관리비용절감, 사회서비스 및 건강자원의 효과적 연계, 지역사회 보건 및 건강관리체계의 전환, 보건 환경의 중요성 부각
- 경제적성과 : 주민참여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지원 ICT 통합 솔루션 참여한 34개의 기업 중 26개 기업에서 매출 발생, 솔루션을 통한 부가세 포함 매출 83,214,370원 발생
- 특허 : 주민참여 커뮤니티 헬스케어시스템 및 주민참여 커뮤니티 헬스 케어 방법에 대해 특허 출원함
- 논문 : 포괄적건강요구진단시스템 개발에 대한 과정을 국제전문학술지인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에 논문으로 출간함
- 기타산업재산권 : 주민참여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지원 ICT 통합솔루션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함.

② NON R&D 사업

- MHC(건강반) 48개 (438명) 조직과 운영
- 케어매니저 17명 양성, 건강리더 32명 양성
- 주민참여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성과 운영(사례건강반 5개, 사례관리 60명)

5] 사업 총평

2차년도에 걸쳐 주민참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건강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ICT 통합 솔루션 개발하여 MHC(건강반) 참여 주민 혹은 개별 주민(환자)의 전인적 건강문제와 욕구를 평가하고 이에 적합한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건강문제 해결과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을 최적화해서 연계할 수 있는 케어매니지먼트체계를 운영하였다. 또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케어매니저와 건강리더를 양성하고,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를 유지-개선시킬 수 있는 소생활권 주민건강공동체(MHC) 건강반을 조직하고 확산시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조직한 건강반을 연결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서비스와 제품의 표준화, 품질이 개선되도록 건강증진에 필요한 CB자원을 최적화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였다.

㉔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수탁 운영

1] 목적

- 조합원에 국한된 한계를 넘어, 지역주민과 대덕구에 민들레 사명을 넓힌다.
- 민들레 조합원 대상의 공동체 활성화 경험을 대덕구에 확산 시킨다.
- 민들레형 마을주도 통합 돌봄체계를 확장시킨다.

2] 현황

- 설립근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 설립일: 2019년 8월 1일
- 주소: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11 송촌동행정복지센터 3층
- 단체 성격 : 비영리단체

3] 경과

- 사업수탁 이사회 승인 의결 : 2018. 5. 30(목) 정기이사회
- 위탁자 : 대덕구청장
- 수탁계약 체결일 : 2019. 6. 25. 대덕구청
- 직원채용 : 2019. 7. 11. 센터장 1인, 팀장 2인 채용 확정(2019. 8. 1일부 근무)

4] 수탁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19. 8. 1 ~ 2022. 7. 31(3년)
- 수탁사업 내용
 - ① 공동체 지원센터 관리
 - ② 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③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 ④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 평가, 연구
 - ⑤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네트워크 형성
 - ⑥ 공동체, 주민교육(마을과 자치)에 관한 사항
 - ⑦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한 자원 육성 및 관리
 - ⑧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주요 추진 업무

- 대덕구 마을자치의 허브로서의 '대덕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 대덕구 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및 관리
-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
- 주민참여정책의 다양한 사업과 계층이 함께하는 민-관, 민-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세부 실행 실적

- ① 2019년 좋은마을만들기 공동체전체회의
 - 일시,장소 : 2019.9.4.(수). 지역품앗이 한밭레츠
 - 추진 목적 : 센터설치 목적 및 사업이해, 사업수행과정이해
 - 주요 내용 : 25개 공동체 참석, 사업공유, 네트워크파티 준비단 구성
- ② 2019년 좋은마을만들기 네트워크파티
 - 일시,장소 : 2019.10.1.(화).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
 - 추진 목적 : 센터 출범, 공동체 네트워크 촉진 및 친목교류
 - 주요 내용 : 43개팀 122명 참석, 센터소개, 공동체소개, 타운홀미팅, 친교의 시간
- ③ 2019년 좋은마을만들기 양성과정 '우리 마을에서 다르게 살아보기'
 - 교육 기간 : 2019.10.16. ~ 11.6.(매주 수요일)
 - 추진 목적 :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공동체성 강화
 - 주요 내용 : 마을공동체의 이해(강의), 호혜와 협력의 마을살이(견학), 공동체와 주민참여(강의+실습)
- ④ 성과공유회
 - 일시장소 : 2019.12.5.(목). 대덕구청 청렴관
 - 추진목적 : 공동체사업을 통해 변화된 주민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과에 대한 격려와 자축의 장, 사례공유를 통한 질적 성장 노하우 축적

7] 사업 총평

2019년 8월1일부터 향후 3년간 수탁운영하게 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성장 단계별 핵심 과제(1단계:등장 - 2단계:성장 - 3단계:협치)를 통해 주민이 주민을 돕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공동체간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해인 2019년은 인력구성 및 규정마련 등 안정적인 운영의 기초를 다졌고, 본격적인 사업운영은 2020년 진행될 예정이다. 2020년 주요사업은 인력구성, 공간조성, 홈페이지 구축, 운영위원회, 조사연구와 같은 기반조성 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조성사업과 마을공동체 학교, 주민자치교육 등), 공모사업(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마을축제 활성화사업 등) 등이다.

③ 액티브에이징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디자인

1] 목적

Active aging산업에서 서비스 디자인적 접근을 통해 시니어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제품,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에서의 성과를 창출하고자 함.

2] 수행기간

o 2019. 08. ~ 2019. 11. (4개월)

3] 주요 사업 내용

- o 총 사업비 : 19,360천 원
- o 산업통상자원부
- o (취디맨드-웰패밀리하우스의 종단적 사용자경험 평가를 위한 실증연구
- 건강리더와 함께 '건강 FUNFUN'사업 진행

4] 주요 추진 업무 실적

- o 만65세 이상 어르신 48명, 건강리더 9명이 참여하여 4개월간 주2회씩, 건강리더가 어르신 가정을 주2회 방문하여 웰패밀리하우스 앱을 활용, 낙상예방환경 평가 및 낙상예방 활동 진행
- o 건강리더 사업설명회, 참여어르신 건강교육, 건강리더활동(말벗서비스, 신체능력평가, 낙상위험환경평가, MMSE-DS검사, 낙상예방운동), 사업평가회, 건강반활동으로 연결
- o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외부활동 증가, 만성질환 관리 및 우울증 해소 등 건강증진효과
- o 사업 참여 건강리더(대학생 및 중장년)들의 민들레가치공유 및 어르신들에 대한 편견 및 인식개선, 건강증진효과

5] 사업 총평

웰패밀리하우스의 종단적 사용자경험 평가를 위한 실증연구 결과, '건강 FUNFUN'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의 신체능력과 위험환경이 개선됨을 확인함, 어르신이 낙상을 예방하려는 노력과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활동이 늘어났고 스스로 낙상 예방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건강리더와 함께 해서 재미있고 즐겁다라는 의견이 많았음.

웰패밀리하우스 앱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낙상예방을 증진시킨 결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창출하여 성과경진대회에 참여, 우수사례 발표로 건강리더 활동과 민들레 활동을 소개할 수 있었음. 어르신들의 낙상예방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강반으로 연결하고 건강리더 돌봄활동에서 건강증진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덕구청과 보건소에 제안하여 건강리더와 함께 건강반을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건강증진 활동의 기본단위로 구축할 예정임.

④ 생활중심형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통합 운영 솔루션 개발

1] 목적

- 전문가를 활용한 '건강요구진단 프로세스 도출 및 수립 과정' 평가 검증 수행

2] 수행기간

- 2019. 12. ~ 2020. 10. (11개월)

3] 주요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3,000천 원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주)봄소프트-고령자 건강요구진단시스템 개발 실증연구

4] 주요 추진 업무 실적

- 고령자 건강요구진단 간단테스트 알고리즘 분석 요약 보고 실증협의체 회의 참석
- 고령자 건강요구진단 시스템 메뉴구조도 및 건강백과(가칭) 카테고리 분류 및 내용 작성

5] 사업 총평

본 사업은 고령자 건강요구진단 시스템은 신체건강평가, 활동평가, 환경평가로 구성된 평가요소를 통해 사용자별 선택사항에 따라 평가과정을 차별화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생활중심형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정보화 체계 수립하는 생활중심형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통합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임. 민들레는 2020년 1월부터 시스템별 관리 항목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실제 사용자 데이터 기반 생활중심형 고령자 커뮤니티케어 통한 운영 솔루션 실증을 해나갈 예정임.

5) 일자리 및 지원금 지원사업 수급

1) 목적

-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부족한 비용(인건비 및 기타) 충당
- 사업 수행에 따른 부족한 인력 단기간 채용
 - ➔ 수행 업무 역량에 따른 5명 재고용

2) 참여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부처	대상자 수	수금액	비고
고용안정 장려금	육아기 단축근로	고용노동부	2명	15,369,240원	발생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대덕구	4명	51,914,470원	총 3년 사업 중 2년차
두드림 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 제공	(재)대전경제 통상진흥원	2명	15,706,350원	총 2회 8개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	‘19 NPO연계형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재단	2명	17,500,000원	5개월
계			10명	100,490,060원	

3) 주요 추진 업무 실적

- 조합 재정 기여
- 미비했던 우리 조합 홍보활동 전개
- 액티브에이징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디자인 사업 전개
-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참여

4) 사업 총평

- 민들레의 가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아 조합 재정에 기여하였음.
- 청년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민들레 사회 가치 실현을 확보하였음.
- 지원사업을 통하여 홍보인력 충원으로 미진했던 조합 홍보 강화

5. 단위 부서별 계획 대비 실적

5-1 단위 사업부서별 모범사례

① 의원

- ① 만성질환관리 교육사업과 교육영상으로 대기시간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장애인주치의, 지역사회주민참여사업으로 지역의료센터, 주민참여센터와 소통하며 협력에 힘썼다.
- ③ 상시 2인 진료로 대기시간 줄이고 진료의 질이 향상되어 환자수 증가로 이어짐

② 검진센터

- ① 7시30분 출근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장내시경이 정확한 검사 시작으로 환자분들 대기 시간 단축과 민원 감소
- ② 검진센터에 2명의 검진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내시경, 초음파 검사 대기 시간 단축으로 민원 감소
- ③ 소변검사를 소변 통으로 교체 후 화장실 환경과 검사에 대한 신뢰도 증가

③ 한의원

- ① 보약 처방시 체질에 근거한 처방으로 신뢰도 향상
- ② 공진단 등 환제 제작 크란룸 운영

④ 치과

- ① 소아 환자 중에 장애[자폐]가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치료를 잘 못 받을 거라 생각해서 소아 치과로 보내려 했으나 원장님과 스텝의 끈질긴 노력과 사랑으로 아이를 보듬어 끝까지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한번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내원하여 진행하는 치료였기에 보호자도 감동 받아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음. 이렇듯 타 치과에서는 주저할 수 있는 환자의 치료도 우리 민들레치과에서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치료 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② 임플란트 미시행에도 불구하고 예방진료인 스켈링을 통해 매출확보를 하였으며 직원의 노동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매출성과를 위해 함께 애쓰고 있음

⑤ 지역사회의료센터(재가의료팀)

- ① 조합사업의 재 편성으로 신설된 조직으로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큰 힘을 발휘하여 센터로 격상되었음.
- ② 수행 사업 중 장애인건강주치의 등록인원이 40명에서 출발해서 80명으로 늘었고, 연서비스 대상인원 498명(월평균 40.8명, 상반기평균 31.3명, 하반기평균 50.2명).160% 증가.
- ③ 방문진료 건수가 3.5→8.5명으로, 방문간호도 11.2명→23.2명(2배 이상 증가)
- ④ 수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전문가인 작업치료를 고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인 팀원들이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팀이 함께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민들레 건강교육을 기획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의 등록자 증가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⑥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마을주도통합돌봄 모델 구축(대덕구형 동네돌봄)〉

실적내용	평가
-충남대학교 링크+사업단 지역맞춤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구축을 위한 '대전충청권커뮤니티케어협의회 MOU'체결(01.24) -대덕구형 동네돌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기획팀, 시행팀회의 참여(03월~07월) -대덕구형 동네돌봄 추진 워크숍 개최(04.12)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감마당 참여(07.04) -대덕구형 동네돌봄 민관협의기구 구성 간담회 참여(08.01) -대전시 추진과제 정책토론회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현황과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개발 연구 주요결과' 참여(10.01) -케어매니저 양성 기초교육과정 개설 운영(10.17.~12.06) -대덕구형 동네돌봄 정책토론회 참여(12.20) -대덕구형 동네 돌봄 서비스자원 공유대회 참여(12.27)	-대덕구형 동네돌봄을 구축하는데 있어 민·관·학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냄. -커뮤니티케어의 선진국가인 일본 이바라기현 '사회복지법인 21세기회'와 커뮤니티케어 모델구축을 위한 간담회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함. 일본과의 관계회복 후, 지속가능함. -대덕구형 동네돌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워킹그룹에 참여함으로써 민들레형 동네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참여 중요성 제고 -케어매니저양성기초교육과정을 통해 대덕구 동네돌봄에서 민간의 선도적 역할을 드러내고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돌봄전문 인프라 구축, 민관협치 이끌어냄.

⑦ 경영지원실

- ① 철저한 예산 수립과 적절한 지출관리를 통하여 예산대비 집행율이 100%를 근접케하여 흑자를 달성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② 안정적인 기관 대환대출 통해 예측 가능한 현금유동을 확보하고, 이자비용을 절감하여 조합재정에 기여하였음.
- ③ 상하반기 전직원 워크숍으로 전직원 화합의 장을 열고, 팀별 교류 및 조합의 방향을 이해하는 성과를 얻음.

5-2 단위 사업부서별 계획대비 실적

1 의원

□ 2019년도 사업평가 총평

- 만성질환관리 교육사업으로 로딩이 추가되었으나 기존인력 재배치로 사업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짐.
- 환자가 늘어남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기화면 설치예정)방법을 찾아가고 있음.

□ 2019년도 세부 사업 계획대비 평가

기초	“더불어 소통하고 성장하는 해”				
	항목		내용	방법	목표
성과	재무적 성과	매출증대	급여복부초음파확대	진료시 의심질환자 권하기	작년대비20%증가
		비용감소	시간외 근무절감. 소모품 절약	토요일 근무. 평일대체휴무	
		매출목표			1,490,764,370 (의원,검진,재가)
	사회적 성과	조합원 조직	조합원 가입유도	단골환자 권유	30명 (스즈 10명)
		조합활동참여	산자부, 참선과 연계활동 스마트주치의	지역주민, 조합원대상강의 (소아관련,기본의학지식관련 강의 박원장님)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신뢰형성
		지역사회연대 (보건예방활동)	장애인주치의사업 방문진료(수가)시행예정	내원 또는 방문	
혁신	시설개선	화장실냄새와 손잡이	변기옆 손잡이 설치	환경개선	
	장비개선	소아치료개선	네블라이저, 헤드랜턴구입	소아환자	

				신뢰·만족도형성	
	서비스개선	환자응대	눈맞추며 응대하기	신뢰도 형성	
	이용자(조합원, 지역주민) 관리	조합원,지역주민 관리	원장님 장기휴가시 문자발송	환자의 불편감소	
	학습과 성장	직원교육 및 워크숍	상·하반기 워크숍	원활한 소통	
	소통(협동조합 운영, 내/외부)	직원교육	민들레전체적인 사업공유	원활한 소통	
	환자권리장전(적정진료)	주사줄이기.약한알 줄이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며 줄이기	적정진료	
위험	법적측면 (의료법)	유통기한	재고 정리	매월 재고조사	100%준수
		본인부담금	본인 부담금 발생	상담진료시 받아야 함을 고지	100%준수
	의료행위	주사관리	마약, 주사 잔여량 관리	잔여처리문제	100%준수
	의료기관 관리	감염관리	손씻기, 유행성 질병시 마스크 착용 의료인 필수예방접종하기.	홍역,파상풍,독감맞기	청결한 관리

□ 제안 사항

- 대기화면 설치.발판제작,화장실 손잡이 설치
- 영유아실 리모델링 (간호부장실, 초음파실)

② 건강검진센터

□ 2019년도 사업평가 총평

-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검진으로 신뢰 받는 민들레’
- 조합원과 지역주민,직원의 가족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후 만족도가 상승되어 가까운 가족, 지인들에게 검진센터를 알려서 신환 환자가 증가되고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 하는데 중요한 자리매김이 되었다.

□ 2019년도 세부 사업 계획대비 평가

기 조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검진으로 신뢰받는 민들레”				
		항목	내용	방법	목표	실적(달성율)
성과	재무적 성과	매출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공단5대암(직장인)검진확보 ○ 지역사회단체검진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위암검진시(골밀도/갑상선/혈관나이검사중 택 일) ○ 직장인 검진시 비만, 고혈압 위험군 발굴 ○ 행지실과 연계하여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암검진 100건 ○ 비만 / 복부비만시 체성분검사 ○ 혈압체크 중요성으로 의사 상담후 검사 진행 ○ 10개 기관과 협약 확대(현6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건 위암검진 3개월 달성 ○ 인바디프린트교체 후 대기공간에비치 ○ 자산관리공사 종검 협약 /여성자활청소년검진
		비용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확보 위해 직원 전화작업 ○ 시간외 축소(월2회등록) ○ 의료소모품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분량 연락하고 소통하기 ○ 대체휴무 사용(평일) ○ 검사실에 일회용주사기 지원 받기 ○ 제약회사 명단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중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초 전화작업과 문자 발송으로 암 검진 확보 ○시간외를 대체휴무 사용으로 업무 로딩 발생 ○ 랩지(주사기)와 소독액 구입(마우스피스)지원
		매출목표			1,490,764,370원 (의원,검진,재가통합)	1,798,897,494 (의원,검진,재가)
	비재무적 성과	조합원 조직	조합원	내원검진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받아 필요시 적극안내	접수시 인적 받을 때 조합에 대한 안내 문구 추가 삽입, 필요시 설명 안내자료확보	○ 조합원 60명

		스스로조합비	스마트 주치의 활용안내		○ 스스로조합원 30명	업무공간에서도 안내필요) 7명(30%정도 달성) (스조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직원이 가입권유시 필요한 부분 안내 어려움)
		조합활동 참여	조합과 직무교육 다양화 조합활동 영역확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진행 업무로딩 최소화로 오후시간대 활용	○ 모든 직원 건강리더 교육 이수 하기	○ 업무상황에 맞춰 진행 가능 ○ 매월 행복상담소 지원으로 검진홍보 함
		자주관리	사업소 수지에 관심	매월 회의시 수입 / 지출 공유		○ 매월 2째주에 업무 / 수지 관련 회의 진행
		지역사회연대 (보건예방활동)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연계기관 담당자 확보	공문으로 검진 안내 발송	○ 10개 이상 협약 확대	○ 자산관리공사 종검 진행 중 ○ 한살림은 검토 중
혁신	시설개선		대기실환경변화	인바디 검사기 계측실로 위치변경 대기실 의자 리폼	○ 여유 공간 확보로 대기 환자 편안함 제공	○ 대기공간확보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연말엔 의자 배치하기
	장비개선		검사의 정확성과 신속성 확보	위/대장내시경 최신형으로 교체	○ 연말 위암 검진 500건 달성	○ 내시경 거부 환자분께 최신형 기계에 대한 안내로 비수면 내시경 수검율 상승
	서비스개선		진후 사후관리 체계 완비(주치의프로그램이용) 시설,환경 재정비	○ 1:1전화와 문자 연락과 상담 ○ 초음파실 자바라 설치 / 슬리퍼, 화장실 휴지통 교체	○ 혈변, 미세석회화, 제균 요법,간기능상승시 연락 ○ 쾌적한 검진 환경 마련	○ 100% 전화작업 후 내원상담 안내
	이용자(조합원, 지역주민) 관리		부가서비스 진행 내용 안내	우선 순위로 전화작업안내 검진독려	대덕구조합원은 민들레에서 검진을 높이기	부가서비스 안내로 대덕구 조합원 검진율은 80%
	학습과 성장		매년보수교육/업무관련직무교육이수 원장님과 함께하는 질환별교육 진행 검진팀과 소통하기	○ 9월까지 이수 ○ 정기적진행(격월로) ○ 정기 미팅(3째 수요일)진행	○ 업무능력 향상으로 자신감 증대 ○ 원활한 업무수행	○ 관련보수교육 이수중 ○ 격월로 원장님과 함께하는 질환교육 진행 함 (총2회)

	소통(협동조합 운영, 내/외부)	내과와 소통부재로 기회 마련	정기적 진행(격월로)	대장내시경예약 환자 조정 비율 감소	썩수달에 의원과 정기적인 회의 진행	
	환자권리장전(적정진료)	알 권리 / 선택할 권리 안내	모든 검사시에 환자와 소통	추가 검사 확보 / 검사 누락 감소	추가검사시 검사항목과 비용 안내로 누락 감소함	
위험	법적측면 (의료법)	단체검진/종합검진시 공단검진 시 진료 접수 안하기	원하는분은 다른 날 내원해서 접수 하시도록 안내	부당 청구행위 위험 감소	본인에게 선택하여 결정 하도록 진행함	
		비급여 처방시 청구 오류 줄이기	비급여처방전(대장약)시 혈당/혈압 체크 후 상담 : 진료의사 소견 기록하기)	부당 청구행위 위험 감소	초진환자인 경우 내원 후 원장님 상담 후 처방전 발행 원칙 수립	
	의료행위	검사 시 개인정보 보호	초음파실 자바라 설치	개인 사생활 보호의 일상화	자바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보류함	
		채혈 후 지혈 안내	환자마다 자세한 설명	적극적인 안내	지혈방법과 약물 복용에 대한 상담으로 감소함	
	의료기관 관리	감염 관리	신뢰도와 정확한 검사 진행/쾌적한 화장실 환경	소변검사는 검사 마지막 진행	재검사안내감소 / 뚜껑 있는 휴지통으로 교체	검사누락으로 첫 번째로 진행하고 소변검사는 오더 확인 후 처리하기
		폐기물 관리	폐기물 중요성	폐기물 종류 따라 정확히 분류		내용물에 따라 분류 후 배출
		화재 관리	화재위험성 인식 (냉/난방기/소독기/전열기)	담당부서 책임자가 마지막 확인	화재위험 감소	담당자가 전기점검 후 감소

□ 제안 사항

- 토요일은 적정(5명) 직원이 근무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가능 - 대체근무 해지 요망
- 검진 시작 시간을 8시로 하여 일찍 검사받기 원하는 환자분들을 수용

③ 한의원

□ 2019년도 사업평가 총평

- 비보험 매출에서 500여 만원의 매출감소가 있었으므로 보험진료에서 매출감소는 대략 1,070만원으로 추계할수 있음.
- 2018년에 비해 진료패턴등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2019년 매출의 감소는 실물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 타 한의원의 매출도 감소 추세에 있음.
- 2020년에는 침과 탕약등 기본진료 영역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함.
- 요슬환, 숙면탕, 성장환등의 특화제품군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사항은 없으나 환자들 선택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차기연도에도 기본 사업 아이템으로 구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됨.

□ 2019년도 세부 사업 계획대비 평가

기초	1.체질 맞춤 진료 표방 2. 침, 탕약 치료 등 기본에 충실한 진료업무 강화				
	항목	내용	방법	목표	
성과	재무적 성과	매출증대	비보험 영역의 다각화	요슬환 홍보	비보험 비중 10%
		비용감소	비생산적 근무시간 축소	조기 퇴근 또는 반차	1월부터 시행중
		매출목표			310,026,105원
	사회적 성과	조합원 조직	조합원, 스스로조합비 회원	상담시 권유	조합원: 50명 스스로조합비 : 15명
		조합 활동 참여	조합연계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 유도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연대 (보건예방활동)	방문진료를 통한 지역 의료안정망 구축	참선 연계	
혁신	시설개선	침구실 난방보완	전기 라디에이터 도입		

	서비스개선	블랙 컨슈머 응대교육 강화	항시적인 내부 교육 및 조합 교육 필칭	서비스 개선	
	이용자(조합원, 지역주민) 관리	한 의사사랑방 운영	사회관계망서비스	30-50대 가입률 제고	
	학습과 성장	조합내 직원 교육 참여	전직원 동참	조합 실시 교육 목표	
	소통(협동조합 운영, 내/외부)	지역밀착형 의료사협의 특성을 부각.	한 의사사랑방에 치료후기를 사진과 함께 업로드	홍보 및 조합원 결속의 재료로 활용	
	환자권리장전(적정진료)	환자진료시간 적정확보	충분한 상담 진행	환자 주관적 만족도 제고	
위험	법적측면 (의료법)	약재유통기한	보건소 약재실 점검대비	약재관리대장 운영	점검 미지적
		약침 관리	약침시술 행위산정 관리	약침관리대장 기입	
	의료행위	의료사고	침 시술 후 부작용		한 의사 배상 보험 가입
		투약	부작용 또는 효과불만족시		복용후 에프터콜서비스
	법적측면 (의료법)	한약재유통기한	약재관리대장에 기입	매달 재고정리시 확인,처리	
		의료행위	의료사고	침 시술후 부작용	한 의사 배상 보험 가입
		의료기관 관리	소방안전관리	소화기점검,화재대피훈련	소화기교체필요

□ 제안 사항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의원 상품군에 대한 꾸준한 리플렛 홍보가 필요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인만큼 지역 내의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기업,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한의원 비보험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자산관리공사 방문 건강상담을 통한 공진단 및 탕약 매출 증대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4) 치과

□ 2019년도 사업평가 총평

- 상반기는 대덕/법동 통합 예정 상황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불안정하였음.
- 하반기는 원장님교체와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 가운데 시작하였으나 원장님과 직원들이 합심하여 새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환자의 구강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스켈링 권유와 잇솔질 교육을 통하여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9년도 세부 사업 계획대비 평가

기조	“믿음을 주는 편안한 치과☺”					
	항목		내용	방법	목표	
성과	재무적 성과	매출증대	보험 진료 확대 (청구액 늘리기)	- 보험레진, 실란트, 부분치석제거 등 소아환자 진료 늘리기 - 이벤트 활성화	소아환자 진료 늘리기 (청구건수 늘리기)	
		비용감소	-보철 골드 줄이기 -소모품 및 치과재료대 줄이기 -시간외 축소	-골드 외 다른 재료 유도 -치과재료 가격비교 -재료 적정량만큼 사용 -평일 대체 휴무 전환	지르코니아 개수 늘리기	
		매출목표			440,000,000원	
	비재무 적 성과	조합원 조직	조합원	조합원 확충	비보험진료 환자대상으로 적극권유	40명
			스스로조합비		스스로조합비 회원 권유	15명
		조합활동 참여		조합관련 행사 참여	전직원 참석	

		자주관리	매출, 지출 공유	팀장회의 후 팀장이 전달	발생시
		지역사회연대 (보건예방활동)	취약계층 지원	- 타 단체 연계 - 내원환자 중 치료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별도 취합	
혁신		시설개선	환경 개선	- 화장실 보수 - 차트장 확장 - 대기실 개선 → TV 활용, 책꽂이 교체	차트장은 하반기 (3/4분기 이후)
		장비개선	업무 효율 증대	-고장 잦은 체어 교체 -상담용 태블릿 PC 구입	
		서비스개선	친절, 꼼꼼한 진료	- 부족한 부분 서로 체크 - 스켈링시 O.E 꼼꼼이 → 해피카인활용해서 편안한 스켈링!	친절하고 편안한 진료 분위기 만들기
		이용자(조합원, 지역주민) 관리	- 문자전송 - 정기검진 중요성 강조	-리콜,해피콜	정기검진으로 지속적인 치과내원과 치아 관리
		학습과 성장	- 보수교육 - 보험청구	보수교육 참석, 직무관련 세미나 참석 및 관련 책 구입	직무능력 향상
		소통(협동조합 운영, 내/외부)	- 직원회의 참석 - 원장님과 내부 미팅 진행	월 1회	
		환자권리장전(적정진료)	- 환자 상황별 맞춤진료 - 알기쉽게 설명	알 권리 충족 위해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설명, 원하는 범위내에서 성심껏 진료	
위험	법적측면 (의료법)	재료 유통기한	치과재료 사용기간 엄수	매달 재고정리시 확인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차팅 후 자필사인	누락된 내용은 메모지 작성후 다시 한번 원장님 확인	
	의료기관 관리	감염관리	멸균과 위생관리	교차감염 방지, 철저한 멸균	
		폐기물관리	지정된 곳에 폐기물 두기		

□ 제안 사항

- 치과 화장실 보수
- 치과 메이크업실 개수대 수리
- 전자차트시 필요한 노트북 교체
- 치과 컴퓨터 교체
- 구강 카메라 교체

5 지역사회의료센터(재가의료팀)

□ 2019년도 사업평가 총평

1월 갑자기 만들어진 작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건강주치의, 만성질환집단교육,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방문작업치료 및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교육,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지도 등 다양한 업무에 도전하였고,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 2019년도 세부 사업 계획대비 평가

기 조	집으로 찾아가는 건강, 함께 만드는 건강마을 실현을 위한 “1차 의료기관 재가의료서비스(및 지역사회연계) 모델 구축” “Community care for Ageing in Place”				
	항목	내용	방법	목표	실적(달성율)
성 과	재 무 적 성 과	매출증대 재가의료서비스 제공 (방문의료서비스)	-가정간호(건강보험)	- 월 40건	연인원 313명 (상반기 134명/하반기 179명, 월평균 26명)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		연인원 159명 (상반기 75/하반기 84명, 월평균 13명)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등록장애인 50명 (월40건)	- 등록장애인 80명 - 연서비스대상자 489명 - (상반기188명/하반기 301명) - 연평균 41명 -대덕구장애인복지관연계로 디딤돌반 단체등록 후 매월 정기 서비스 제공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작업치료 (전화상담 포함) 	- 월 3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30건 이상 방문 -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정간호 시 동반하여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함(씨앗기금의 방문의로 모델링사업 코디네이터로 사례를 정리해서 연합회, 사의련 등에서 발표함. 사례발표함) -씨앗기금 비용 및 발표자 비용 등 	
		만성질환관리 (집단교육/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12월 월 1회 만성질환대상자들을 위한 집단교육실시 	(사전 계획에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부터 만성질환 대상자들에게 월 2회 문자발송, - 혈압, 혈당 측정치 입력 - 의원담당자 교육 및 협력 	(사전 계획에 없었음)		
		건강 교육 및 건강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주봄 플랫폼 건강교육 및 건강서비스 제공 	(사전 계획에 없었음)	9개의 건강반을 대상으로 9번의 건강교육과 12번의 만성질환관리서비스를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주민센터, 장애관련 기관 교육 및 발표 	(사전 계획에 없었음)		
		지역사회 보건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지도 	(사전 계획에 없었음)	상명대 간호학과 충남대 간호학과	
		지역사회 컨설팅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회의 	(사전 계획에 없었음)	법1동주민센터회의, 대전광역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사회적 성과	비용감소	전화통신료 감소	- 개인전화 (방문 시)		일상적 관리
		문자료 감소	- 정보 발신시 카톡 활용		일상적 관리
	조합원 조직	방문가정을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	- 조합원 가입안내 및 권유	- 권유: 전원 - 가입: 년 20명	조합원 4명(20%) 스스로조합비조합원 2명
	조합활동 참여	민들레 의료 사협에 대한 이해도 및 충성도 제고	- 스마트 주치의 등 SNS를 통한 정보공유	- 스마트주치의 가입 200명	
	지역사회 연대 (보건예방 활동)	장애인금연상담 지원 과흡연자 충남대 캠프연결	- 대전세종금연상담지원센터 연계	- 년10회 누계 참여인원 00명 - 6개월 금연성공자 0명	년 12회 장애인금연상담 회당 10명 정도의 장애인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상담전화를 했지만, 출석자는 회당 3~5명 정도. -2019년 12회 실시 전화상담: 약100명 대면상담: 약50명 3개월 금연에 성공한 장애인 3명, (2명 재흡연->1명 재금연, 1명 금연지속 중)
		장애인/노인운동교실	- 건강반 대상(CB 자원 활용)	- 수시	건강반활동참여 및 교육진행 9개의 건강반을 대상으로 9번의 건강교육과 12번의 만성질환관리서비스를 제공함. 특히 당뇨건강반은 상시관리
		- 장애인,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체력측정, 운동프로그램 연계 유치	(사전 계획에 없었음)	- 장애인체력측정 2회 - 장애인운동교실 7회	

		지역사회 건강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응모사업 지원 - 또는 장애인단체 교육강사파견 (예,한울야학 등) 	- 년 6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 40 회 - 보건소 CBR 18회 - 한울야학 7회 - 대전시활동지원센터연합회 1회 - 중리동주민센터 치매교육 1회 - 대덕구중독통합지원센터 7회 - 만성질환교육 6회
혁신	시설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동성 확보를 위한 전용 자동차 구입 또는 렌트 (가능하면 휠체어 탑승 가능용) - 자동차보험, 책임배상보험가입 	- 예산 가능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잠금장치 - 개인정보 유지를 위한 시건장치설치 	- 1/4분기 내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복사용지통을 넣어서 활용
	장비(도구)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용 도구/재료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의료팀용 유니폼,명찰(사회적 인지도 및 책임성 개선) - 업무효율개선을 위한 아이패드구입 활용(예, 포괄평가, 방문교육앱활용, 기록 목적 → 인쇄 비용 절약 효과) 	-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폼맞춤 - 개인아이패드사용 - 업무일지 구글입력으로 체계마련.
	서비스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작업치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생활기술평가 및 훈련실시 	- 생활기능향상 및 만족도 개선	관찰과 면담을 통한 수행도 및 만족도 향상이 보이는 사례가 몇몇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주관적인 만족도는 평상시 면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자치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관리인원 20명 (신규모델사업)	보건소에서 의뢰된 장애인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자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교육실시 - 정기적 건강행태 모니터링 (예, 금연, 금주, 식단조절, 운동 등) 		
이용자 (조합원, 지역 주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건강교육 실시 - (사회적 성과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참여인원 파악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응모사업 지원 - 또는 장애인단체 교육 강사파견 (예, 한울야학 등) 	-교육참여 인원 연 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참여 인원(추정치) 685명 - 대덕구보건소(누계) <상>8명*8회=64명, <하>10명*10회=100명 - 장애인 한울야학 : 10명*7회=70명(누계) - 민들레만성질환교육 (7월부터 월1회) : 6회 누계 117명 - 대덕구장애인복지관 대상자 교육 9명*11회=99명(누계) - 행복상담소 년8회, 평균20명*8회=160명 - 경로당 건강교육 2회 30-40명 - 절주단주동기향상프로그램진행, 평균5명참여*7회=35명 (대덕구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와 연계)
학습과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전문가 협업을 위한 교육 및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의료팀 사례 회의(월1회) - 사례관련 정보공유 (민서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의료팀회의 주1회 진행. - 단톡방 활용으로 실시간 사례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보건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위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건법, 정신보건법, 장애인건강주치의관련교육, 검진센터 교육 참여 	-수시(교육 내용 정리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 3회에 걸쳐 5명 참여 (의사2, 간호사2, 작업치료사1회) -타임뱅크 교육 -대전복지재단 알코올사례관리교육 등 참여 -케어메니저양성과정참여 1명 -국립보조기기센터 교육참여
소통 (협동조합 운영, 내/외부)	건강관련 단체와의 연계	보건소/ 3차 의료기관 / 지역의료기관 등과 사례회의 또는 협력 사업 기획 및 참여	- 3차 의료기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장애인 보건 의료 센터,	(이행 실적)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운영회의 및 총회참석 6회(2-7월) -사의련회의 1회

				중독 관리 센터, 여성장애인연대 등	-대덕구장애인건강(재활)협의체준비모임주최(7월1회, 7개 기관 13명 참석) -대전시장애인보건의료센터 회의참여 -법1동사무소 사례회의참석 1회 -조합 내 독서모임 구성 진행 -실습지도(충남대의대생,충남대노인간호사, 상명대 8명)
	환자권리장전 (적정진료)	환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	-환자 권리장정 숙지 및 정보전달 -서비스 내용 및 전달 과정 정리한 리플릿 제공	- 개발 및 제공	이행 실적 (미시행)
의안	법적측면 (의료법)	재가의료에 대한 법 제도 미비	법을 제정을 위한 사회참여 연대활동참여		이행 실적 (국회 등 관련 교육 행사 참여)
	의료행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구분한 서비스 제공	위험성이 있는 의료처치 (예, tracheotomy 관련 처치→대학병원 연계)		이행 실적 (입퇴원연계 의뢰서 작성 1건)

□ 제안 사항

- * 방문의료서비스용 차량지원 필요(가정간호, 방문간호, 왕진 등 주로 많이 사용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는 보험지원 필요)
- *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간호사 구인필요

⑥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2019년도 사업평가 총평

2019년도는 참선이 그동안 해왔던 성과를 정리하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주도 건강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참선은 산자부 2차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를 100% 조기 달성하였고,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착을 위해 1·2·3차 병원이 협력하여 입퇴원 시 지역돌봄이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케어매니저 양성과정과 건강리더 양성과정을 통해 대덕구형 동네돌봄이 실행되기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공과 민간의 협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대덕구 동네돌봄 워킹그룹에 참여하여 케어매니지먼트 우수사례와 기존에 하고 있던 주민참여형 지역돌봄을 공유하여 대덕구에 동네돌봄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는 산자부 사업으로 조직된 건강반 48개(420명)가 2020년에도 지속가능하게 되었고 건강반에서 건강리더로, 건강리더에서 대의원으로 확대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지역확대와 더불어 주민과 조합원의 건강과 돌봄문제를 상담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상담창구의 역할과 주민의 참여로 동네돌봄을 실현하는 일에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 2019년도 세부 사업 평가

2019 사업계획		주요 세부 실적 및 실행 내역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 (%)
주사업 계획	세부 계획	세부 실적	평가 지표 실행 내역	
마주봄 system 구축	민들레형 케어매니지먼트 system 구축	-케어매니지먼트 정의, 절차, 방법 정리 -현장 적용, 수정보완 -시스템 확정	-입퇴원시스템 및 케어매니지먼트 시범사업을 위한 간담회, 협력체계 구축 -대덕구 동네돌봄 시범지역 법1,2동 지역케어회의 참여	100%
	케어매니저, 건강리더, 건강반장 직무분석 및 인력양성	-직무분석(HR컨설팅 결과 활용) -인력양성(충남대LINK+사업단) -매뉴얼 수정보완	-케어매니저 민간자격 등록 직업능력개발원 신청 -건강리더양성과정 10기~12기 진행(54명 참여/32명 수료) -케어매니저양성과정(33명 참여 /17명 수료) -건강반,건강리더 매뉴얼 수정보완	100%

	지역사회 건강자원 네트워크 구축	-영역별(public, market, social) 자원 조사 -자원 목록화(DB구축) -활용 및 연계 시스템 구축	-산자부 건강케어시스템 건강자원 네트워크 등록 99개	100%
	건강반을 통한 건강자치력 향상	-건강반을 통한 사후관리 (지속적인 건강관리) -집중→정기→자가관리(선순환)	-사례건강반(5개)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100%
우수 사례 발굴	마주봄 시스템을 활용한 우수사례발굴	-우수사례 기준마련 -사례관리 축적 -우수사례 분석 및 확산	-ICT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강평가기준마련 -사례관리 60명/우수사례 공유 -‘편편사업’ 낙상예방운동 우수사례 확산	100%
커뮤니티케어 민들레 모델 구축	민들레 마주봄 모델 정리	민들레 커뮤니티케어 내용 및 성과과정리, 범동솔루션위원회 구성 (맞춤형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일본 이바라기현 ‘사회복지법인 21세기회’와 커뮤니티케어 모델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 및 교류의 장 마련 (대전시의회, 대덕구, 대전충청권 커뮤니티케어협의회, 민들레의료사협) -대덕구형 동네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지원 -제주도 ‘제주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 견학 -민간영역에서 민들레형 동네돌봄 모델 정리	100%
건강자치력 향상	- 건강반 활동을 통한 건강 자치력 향상 - 주민주도 건강증진활동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건강반 조직, 운영, 촉진 -지역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확산	-건강반 48개, 438명 조직 운영 : 지역별(대덕구25개, 유성구10개, 서구9개, 중구3개, 동구1개) : 연령별(영유아18명, 10대 39명,	100%

			20대 12명, 30~40대 187명, 50~60대 142명, 60이상 36명) -‘조각’발행 167명/2,586,000원	
마을건강활동분야 주민참여	마을건강위원 양성/활동	-마을건강위원 시범사업 -마을건강조사,건강의제발굴,건강정책제안,주민참여예산	-충남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단 산학공동 기술개발 연구과제 ‘동네돌봄단’ 마을건강조사 실시(9월~10월/마을주민 12명참여) -‘대덕구 2019 하반기 주민자치학교’ 참여(직원15명, 건강리더8명) -대덕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	100%
마을일자리 개발	- 예방활동 및 커뮤니티케어 신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마을일자리 개발	-이해관계자들과 법인설립, 비즈니스모델 개발	-건강리더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준비회의 (2회), 마을기업 설립 필수교육 참석(5명) -연합회 ‘건강증진 노인 일자리사업’ 시범사업 참여 논의 -‘편편사업’을 통한 비즈니스모델링(건강리더 10명)	70%

□ 제안 사항

-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프로젝트 사업의 한계인 집중의 문제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민들레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하고 조합원과 주민의 '건강자치력'을 향상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참선의 지역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사업과 주민의 참여로 건강과 돌봄문제를 상담하여 통합적인 케어매니지먼트를 수행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사업에 의지하여 운영하다보니 민들레 사명에 맞는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실적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프로젝트 사업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일 경우 수행하고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참선에서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총력을 다해야 하며 조합에서도 참선의 미션과 비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

7 경영지원실

□ 2019년도 사업평가 총평

경영지원실의 미션인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올바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3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할수 있도록 공헌하였고, 직원 조합원들에게 교육 및 워크샵 등으로 각 부서별 수립된 사업계획 및 수립 예산을 지속적으로 소통, 동참시켜 사업실적과 재무적 성과를 목표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2019년도 세부 사업 평가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과 조직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시스템 구축 ○ 최적 재정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의 효율화 ○ 최상의 경영 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성과	항목	내용	방법	목표
	보조금 및 지원사업을 통한 조합 운영 자원 마련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보조 사업 수급	발생시	1,000만원 이상
	직원 역량 강화	교육 훈련	법정 의무교육	
			전직원 매월 교육 - 의료법, CS, 제규정 등	12회 이상
			직원 정서함양 위탁교육	4회 위탁
			전직원 워크샵	1회
			자격 유지보수	해당 직원

			기타 소양교육	필요시
	비용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팀별 예산 집행 실적 점검 ○ 지출의 최소화 ○ 적절한 대환대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회의 개최 ○ 단위 팀장 회의시 예산 집행 실적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4회 개최 ○ 예산 대비 5% 절감
혁신	포스 운영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분석을 위한 전산화 ○ 출자금 카드 수납으로 증자 방법 개선 ○ 의료기관 수납 편의성 제공 	현재 운영을 토대로, 문제점 개선 및 버전 업	활용 매뉴얼 완성
	인사·노무 관리	기준(규정)에 의한 인사 노무 관리	제규정 제·개정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 제정 ○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행정·회계 시스템 정비	제규정 정비	제규정 제·개정후 활용	회계규정, 전결규정, 기부금운영 규정, 차입금 운영 규정 등 운용상 문제점 반영 개정
	예산서 제작	예산의 적정 집행을 위한 세부 예산 지침서 제작	자체 제작	운영 유지
	조합원 출자금 유지 관리	관련 규정 제정	제정후 이행	운영 유지
위험	출자금, 차입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경영의 현금유동성 확보 ○ 조합원 및 출자금의 정확한 데이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안별 현황표 작성 ○ 추계표 작성 	운영 유지

	출자금 환급	○ 법적사항 준수	○ 운영 규정 제정	규정 제정 이행
	조합 운영의 적법성 확보	법규 및 제규정 이행 - 협동조합기본법 준수 - 정관 및 규정 이행 - 감사관련 준수 및 이행	법규 및 제규정 준수에 의 한 업무 처리	미지적

□ 제안 사항

전직원 화합을 위한 교류의장을 확대 운영

iii 2019년도 결산(안)

1. 총평

1-1 총평

1-2 자산 / 부채 / 출자금 현황

2. 주요 결산실적

2-1 예산 대비 부서별 매출 / 손익 실적

2-2 2019년 예산 대비 수지 계산서

3. 자본결산

4. 수지계산서

4-1 통합수지계산서

4-2 부서별 수지 계산서

5. 재무상태표

5-1 통합재무상태표

5-2 재무상태표 상세내역

6. 예산 대비 집행계산서

7. 부서별 매출 / 손익 안분 적용

7-1 안분전

7-2 안분후

8. 2019년 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

1. 총평

1-1 총평

최근 3년 경영 수지는 2017년도 20,284,289원, 2018년도 24,783,983원, 2019년도 63,278,686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이루어 내었다. 이를 위해 그 어느 하나가 아닌 우리 민들레 조합원, 대의원, 직원, 임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협동한 성과라 판단된다.

2019년 6월 30일 둔산 치과의 사업종료에 따른 심적 부담감과 매출 감소 우려 속에서도 의료기관 총 수입금이 2018년 대비 총 9천여만원 증가 된 26억2천여만원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의원/검진의 매출 성과에 힘입어 전체 수지 흑자구조가 유지되었다고 분석된다.

각 부서별 실적과 원인을 살펴보면,

의원/검진의 경우 전년 매출 실적 14억3천만원 대비 2019년도 실적은 125%, 약 17억9천8백만원에 달하였다. 원인은, 검진 수검자의 편의성을 제공기 위하여 조기출근을 하고, 직원 스스로가 검진 확대를 위하여 전화 독려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따른 인력 총원 요인이 있었음에도 직원들 간 역할을 분담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 맡은 바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었다고 분석된다.

한의원의 2019년도는 전반적인 시장 여건 변화로 전년도에 비하여 15% 감소된 2억5천팔백만원의 매출을 보여 주었다. 이는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줄어드는 요즘 사회적 현상이 반영되어 매출 하락까지 이어지는 부침이 있었다. 이를 만회하고자 조합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치과는 둔산 치과 사업 종료와 맞물려 원장 교체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억 1천5백만원의 실적을 나타냈으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검진과 연계된 예방 치료 등을 통해 진료환자 유입을 만들었고, 그 만족도가 높게 평가도 받았다. 따라서 새로 부임한 원장의 치료 철학과 우리 조합의 기조가 잘 접목되어 원장 교체에 따른 어려움을 연착륙시킨 한해로 판단된다.

또한, 재가의료팀(현, 지역사회의료센터)은 새로 구성된 조직임에도 어려운 주변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합 본연의 가치인 취약계층 진료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을 이루어내었다.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위탁 사업수행 시 조직된 건강반 활동 등을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결합을 도출시켜 일차의료센터 매출증대에 충분하게 기여하였고, 여타 외부재원을 활용한 사업 수행을 통하여 유무형으로 조합 재정에 기여함이 상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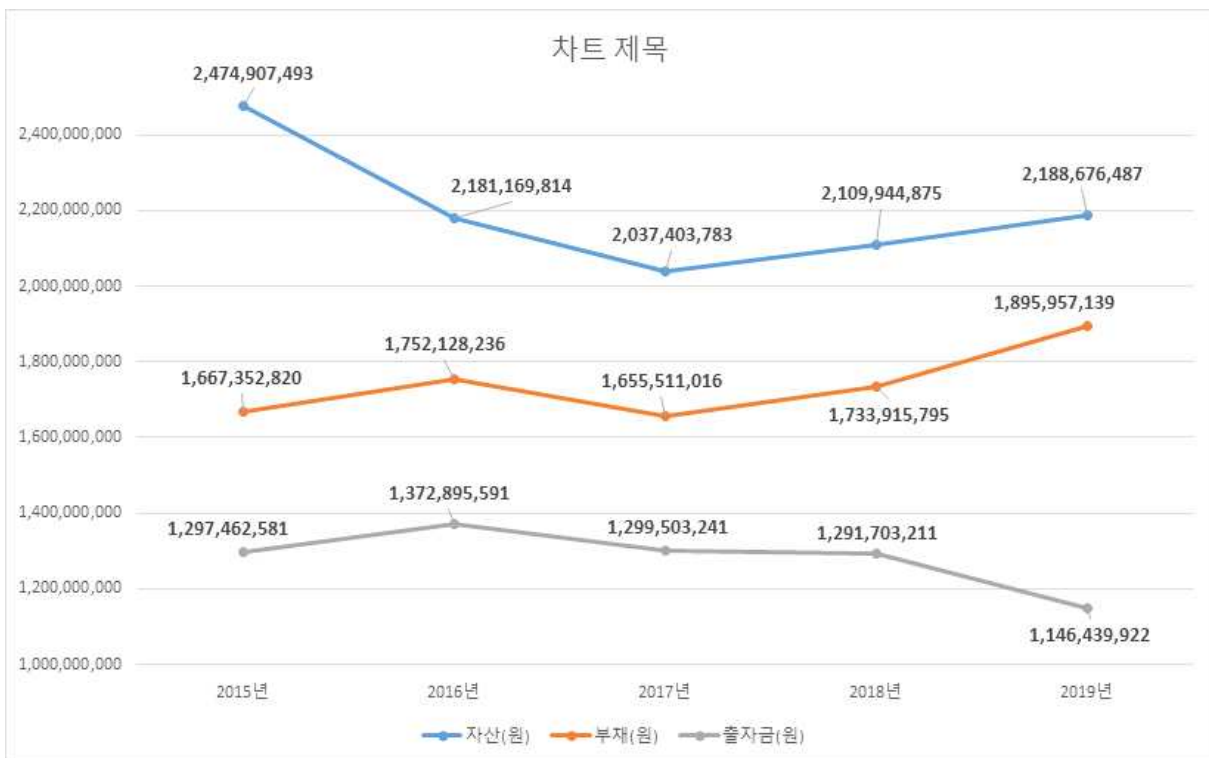
경영지원실(현, 사무처)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대환대출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안정적인 현금 유동 확보와, 조합원 차입 등 경영 불안정 요인들을 찾아내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의 물꼬를 만들어 내었다. 또한 정확한 예산 수립을 기초로 적절하게 비용을 관리하여 수립예산 집행율이 99%에 맞추어 경영수지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2 자산 / 부채 / 출자금 현황

① 자산 / 부채 / 출자금 5개년간 내역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산(원)	2,474,907,493	2,181,169,814	2,037,403,783	2,109,944,875	2,188,676,487
부채(원)	1,667,352,820	1,752,128,236	1,655,511,016	1,733,915,795	1,895,957,139
출자금(원)	1,297,462,581	1,372,895,591	1,299,503,241	1,291,703,211	1,146,439,922

② 자산 / 부채 / 출자금 5개년간 변동 추이



③ 5개년간 변동 분석

- 2016년 사업비인 공동모금회 기금이 2015년도에 선입금되어 2015년의 유동자산이 증가 되었음.
 - 2016년도 공동모금회 기금 사업비 : 약 3억3천만원
 - 2016년도 자산 감소액 : 약2억9천3백만원
- 2016년도는 우리건물 매입으로 악화된 현금유동 확보를 위한 부채와 출자금이 증가하였음.
- 2017, 2018년도에는 자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 2019년도에 건물 매입시 증좌한 출자금이 가계자금 필요로 감좌처리를 위하여 금융권 부채로 충당하였음.
 - 2018년 대비 2019년 부채 증가 : 약 1억6천2백만원
 - 2018년 대비 2019년 출자금 감소 : 약 1억4천5백만원

2. 주요 결산실적

2-1 예산 대비 부서별 매출 / 손익 실적

구분	2019년도 실적		2019년도 예산		실적율(%)	
	매출	손익	매출	손익	매출	손익
누계	2,643,770,424	63,478,396	2,649,990,475	11,879,350	100	534
의원/검진	1,798,897,494	489,791,850	1,490,764,370	286,164,221	121	171
한의원	258,089,405	-20,501,197	310,026,105	22,024,924	83	-93
법치	415,899,532	-1,711,437	440,000,000	51,547,221	95	-3
둔치	148,058,540	-46,914,293	400,000,000	18,975,069	37	-247
참선	15,880,000	-63,508,252	2,000,000	-47,506,840	794	134
경지실	6,945,453	-319,864,562	7,200,000	-339,496,245	96	94
산자부 (비R&D)	-	14,817,678		8,238,000		180
산자부 (R&D)	-	11,368,609		11,933,000		95

2-2 2019년 예산 대비 수지 계산서

구분		2019년 예산	2019년 결산	예산 대비 비율(%)	총액 대비 비율(%)
수입총계		2,772,516,755	2,803,410,105	101.1	100
사업 수익	의료기관수입	2,640,790,475	2,620,944,971	99.2	93.5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2,000,000	15,880,000	794	0.6
	경영지원실	7,200,000	6,945,453	96.5	0.2
사업 외 수입	정부지원 및 보조금	120,460,280	140,378,396	116.5	5.0
	기타	2,066,000	19,261,285	932.3	0.7
지출총계		2,760,637,405	2,739,131,419	99.2	100
사업비		122,935,000	98,314,098	80	4.5
판관비		2,588,702,405	2,583,326,315	99.8	93.8
사업외비용		49,000,000	57,491,006	117.5	1.8
수지합계		11,879,350	64,278,686	541.1	

3. 자본결산

3-1 자본조성계획과 현황

분 류	항 목	예상 금액(원)	집행 현황(원)
출자금	신입조합원	12,550,000	80,050,000
	조합원증자운동	87,450,000	101,002,311
	출자금 소계	100,000,000	181,052,311
차입금	한빛신협	450,000,000	450,000,000
	신한은행(마이너스대출)		350,000,000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100,000,000
	재단법인밴드		144,490,000
	신한은행(대환대출:기존 기업은행)		180,000,000
	차입금 소계	450,000,000	1,224,490,000
기 조성 미사용 자본금 (전년도에서 이월)		1,256,204,353	1,256,204,353
합 계		1,806,204,353	2,661,746,664

3-2 운용 계획과 집행현황

구 분	품 명	예상 금액(원)	집행 현황(원)
의료기기	검진 내시경 세트 교체	80,000,000	82,000,000
	검진 혈압계		2,310,000
	검진 맘모카세트		1,100,000
	의원 심전계		3,300,000
	의료기기 소계	80,000,000	88,710,000
비품	의원 쇼파 교체 및 집기비품	5,000,000	954,000
	비품 소계	5,000,000	954,000
시설장치	치과 간판 교체	4,000,000	이월(미집행)
	한의원 등 간판 교체	2,000,000	이월(미집행)
	시설장치 소계	6,000,000	
소프트웨어	경영지원실 포스 프로그램개발		2,000,000
	소프트웨어 소계		2,000,000
차입금 상환	금융권 및 조합원 차입 일부 상환	470,081,651	1,176,867,557
사업 준비금	운용예비비	1,245,122,702	1,393,215,107
합 계		1,806,204,353	2,661,746,664

4. 수지 계산서

4-1 통합 수지계산서

과 목	제17(당기) 2019년		제16(전기) 2018년	
	금액		금액	
I. 매출액		2,643,770,424		2,553,217,780
임대료수입	6,945,453		6,054,547	
의원수입금	1,236,832,274		982,431,767	
한의원수입금	258,089,405		295,262,957	
치과수입금	563,958,072		803,409,027	
검진센터수입금	562,065,220		450,995,512	
장기요양수입금	0		13,240,370	
조합본부수입금	15,880,000		1,823,600	
II. 매출원가		314,189,222		282,082,686
의약품매출원가		168,105,436		116,847,614
기초의약품재고액	13,030,802		12,728,737	
당기의약품매입액	168,622,348		117,149,679	
기말의약품재고액	13,547,714		13,030,802	
의료소모품매출원가		146,083,786		165,235,072
기초의료소모품재고액	40,228,974		36,444,125	
당기의료소모품매입액	117,945,475		169,019,921	
기말의료소모품재고액	12,090,663		40,228,974	
III. 매출총이익		2,329,581,202		2,271,135,094
IV. 판매비와관리비		2,367,451,191		2,279,848,729
임원급여	11,700,000		38,850,000	
직원급여	1,735,657,969		1,753,865,080	
(인건비지원금)	253,263,160		404,972,895	
잡급	0		2,000,000	
퇴직급여	124,696,080		135,709,943	
복리후생비	114,968,144		107,812,084	
여비교통비	6,079,502		6,618,413	
통신비	10,945,132		11,067,795	
수도광열비	4,453,354		4,136,906	
전력비	24,115,424		26,322,689	
세금과공과금	47,303,519		73,029,430	
감가상각비	82,786,141		74,672,463	
지급임차료	92,010,000		90,460,000	
수선비	3,297,700		3,134,360	
보험료	52,935,437		58,390,231	
(보험료지원금)	22,965,482		30,089,090	

과 목	제17(당기) 2019년		제16(전기) 2018년	
	금액		금액	
교육 훈련 비	9,728,530		9,795,835	
도서 인쇄 비	1,375,350		2,495,300	
회의 비	9,437,585		8,490,350	
소모품 비	19,941,649		35,320,447	
지급수수료	169,724,449		106,243,510	
대손상각비	0		10,178,700	
건물관리비	7,495,791		5,040,120	
협회비	2,030,000		1,685,000	
무형고정자산상각	7,120,034		6,740,530	
연대활동비	18,182,176		16,520,510	
조직활동비	959,510		6,801,910	
기금사업비	231,144,406		495,822,567	
(기금사업비지원금)	231,144,406		481,481,390	
홍보활동비	6,009,302		4,758,460	
인적용역비	26,722,420		21,510,240	
보건예방사업비	53,996,995		78,919,231	
기부금사업비	35,625,400		28,147,070	
(기부금사업지원금)	35,617,760		28,147,070	
V. 영업이익		- 37,869,989		- 8,713,635
VI. 영업외수익		159,639,681		90,819,426
이자수익	1,668,593		1,456,957	
정부지원및보조금	140,378,396		80,885,740	
유형자산처분이익	699,000		0	
후원금	4,000,000		3,110,000	
잡이익	12,893,692		5,366,729	
VII. 영업외비용		57,491,006		57,321,808
이자비용	56,497,946		55,470,138	
기부금	0		1,591,507	
유형자산처분손실	826,494		255,465	
잡손실	166,566		4,698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64,278,686		24,783,983
IX. 법인세등		0		0
법인세등				
X. 당기순이익		64,278,686		24,783,983

4-2 부서별 수지계산서

1] 의료기관

계정과목	합 계	의원·검진·재가	한의원
I . 매 출 액	2,643,770,424	1,798,897,494	258,089,405
II . 매 출 원 가	314,189,222	165,925,012	40,681,925
III . 매 출 총 이 익	2,329,581,202	1,632,972,482	217,407,480
IV . 판 매 비 와 관 리 비	2,367,451,191	1,145,116,438	238,008,072
임 원 급 여	11,700,000		
직 원 급 여	1,735,657,969	750,390,420	159,504,263
(인 건 비 지 원 금)	-253,263,160		
퇴 직 급 여	124,696,080	59,411,230	11,836,770
복 리 후 생 비	114,968,144	51,821,672	12,597,663
여 비 교 통 비	6,079,502	1,946,512	7,400
통 신 비	10,945,132	3,590,812	1,498,703
수 도 광 열 비	4,453,354	2,167,670	
전 력 비	24,115,424	8,356,681	3,967,350
세 금 과 공 과 금	47,303,519	20,812,499	5,642,900
감 가 상 각 비	82,786,141	54,656,984	2,183,499
지 급 임 차 료	92,010,000		20,196,000
수 선 비	3,297,700	959,900	105,600
보 험 료 지 원 금	52,935,437	13,166,985	3,036,680
(보 험 료 지 원 금)	-22,965,482		
교 육 훈 련 비	9,728,530	2,451,000	287,592

계정과목	합 계	의원·검진·재가	한의원
도 서 인 쇄 비	1,375,350	55,000	216,000
회 의 비	9,437,585	1,597,000	457,290
소 모 품 비	19,941,649	7,434,199	1,707,210
지 급 수 수 료	169,724,449	127,057,445	5,938,382
건 물 관 리 비	7,495,791		
협 회 비	2,030,000		575,000
무 형 고 정 자 산 상 각	7,120,034	1,590,334	
연 대 활 동 동 동 비	18,182,176	444,100	
조 직 활 동 동 동 비	959,510		
기 금 사 업 비 동 동 비	231,144,406		
(기 금 사 업 비 지 원 금)	-231,144,406		
홍 보 활 동 동 동 비	6,009,302	12,000	
인 적 용 역 비	26,722,420	4,400,000	1,238,120
보 건 예 방 사 업 비	53,996,995	32,793,995	7,011,650
기 부 금 사 업 비	35,625,400		
(기 부 금 사 업 비 지 원 금)	-35,617,760		
V . 영 업 이 익	37,869,989	-487,856,044	20,600,592
VI . 영 업 외 수 익	159,639,681	4,012,647	102,504
이 자 수 익	1,668,593	12,631	7,789
정 부 지 원 및 보 조 금	140,378,396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699,000		
후 잡 원 금	4,000,000	4,000,000	
갑 이 익	12,893,692	16	94,715
VII . 영 업 외 비 용	57,491,006	2,112,695	300
이 자 비 용	56,497,946	2,112,086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826,494		
갑 손 실	166,566	609	300
VIII .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64,278,686	489,755,996	-20,498,388
IX . 법 인 세			
손 익	64,278,686	489,755,996	-20,498,388

2] 경영지원실,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2019년 사업종료(둔산치과, 산자부사업 프로젝트)

계정과목	경영지원실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2019년 사업종료	
			둔산치과	비R&D (산자부)
I . 매출액	6,945,453	15,880,000	148,058,540	
II . 매출원가			24,480,275	
III . 매출총이익	6,945,453	15,880,000	123,578,265	
IV . 판매비와관리비	338,035,545	117,218,679	170,424,494	10,687,217
임원급여	11,700,000			
직원급여	125,472,530	77,190,310	115,636,506	184,760,000
(인경비지원금)				-190,693,360
퇴직급여	11,320,310	4,909,611	8,788,270	10,069,839
복리후생비	16,574,091	4,962,706	7,948,500	3,859,011
여비교통비	3,068,590	343,800	713,200	
통신비	4,035,096	221,263	600,247	358,843
수도광열비	904,797	93,774	606,173	647,809
전력비	3,830,745	374,405	3,344,893	852,620
세금과공과금	7,240,970	2,712,870	3,969,410	
감가상각비	23,098,514		1,515,340	
지급임차료	48,450,000		10,164,000	
수선비	2,008,100	11,000		
보험료	3,389,378	2,586,590	3,330,120	16,473,860
(보험금지원금)		-1,232,060		-16,101,160
교육훈련비	5,806,346	30,000	616,796	
도서인쇄비	476,100	200,000		179,000

계정과목	경영지원실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2019년 사업종료	
			둔산치과	비R&D (산자부)
회 의 비	6,291,080	708,200		60,255
소 모 품 비	8,447,150	1,208,800	193,300	
지 급 수 수 료	21,898,698	1,602,340	3,789,200	500
건 물 관 리 비	2,934,792		3,900,439	
협 회 비	1,410,000			
무 형 고 정 자 산 상 각	5,406,500			
연 대 활 동 비	16,649,726	1,088,350		
조 직 활 동 비	465,410	494,100		
기 금 사 업 비				64,220,784
(기 금 사 업 비 지원 금)				-64,220,784
홍 보 활 동 비	5,997,302			
인 적 용 역 비	3,611,480	17,252,820		220,000
보 건 예 방 사 업 비			5,308,100	
기 부 금 사 업 비	33,165,600	2,459,800		
기 부 금 사 업 비 지원 금	-35,617,760			
V . 영 업 이 익	331,073,252	101,338,679	46,846,229	10,687,217
VI . 영 업 외 수 익	66,543,002	37,830,427	801,000	25,504,895
이 자 수 익	1,630,294	3,349	2,690	1,089
정 부 지원 및 보 조 금	52,329,480	37,827,050		25,503,606
유 형 자 산 처 분 익			699,000	
후 원 금				
잡 이 익	12,583,228	28	99,310	200
VII . 영 업 외 비 용	54,489,747		866,264	

계정과목	경영지원실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2019년 사업종료	
			둔산치과	비R&D (산자부)
이 자 비 용	54,385,860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826,494	
갑 손 실	103,887		39,770	
Ⅷ .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319,036,837	-63,508,252	-46,911,493	14,817,678
Ⅸ . 법 인 세				
손 익	-319,036,837	-63,508,252	-46,911,493	14,817,678

5. 재무상태표

5-1 통합 재무상태표

과목	제17(당기)		제16(전기)	
	금액		금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626,883,856		585,682,568
(1) 당 좌 자 산		601,245,479		532,422,792
현 금		12,440,732		8,592,462
보 통 예 금	250,331,680		163,564,712	
기 금 사 업 비 (차 감)	34,012,654	216,319,026	36,410,414	127,154,298
기 타 제 예 금		60,000,000		49,000,000
정 기 예 적 금		16,500,000		30,000,000
단 기 대 여 금		27,000,000		28,000,000
미 수 수 익		0		913,510
미 수 금		221,274,382		228,389,315
선 급 금		42,156,359		57,603,509
선 급 비 용		4,567,520		1,795,888
선 납 세 금		376,760		384,600
전 도 금		610,700		589,210
(2) 재 고 자 산		25,638,377		53,259,776
의 약 품		13,547,714		13,030,802
의 료 소 모 품		12,090,663		40,228,974
II. 비 유 동 자 산		1,561,792,631		1,524,262,307
(1) 투 자 자 산		50,292,620		18,692,620
출 자 금		50,292,620		18,692,620
(2) 유 형 자 산		1,258,683,143		1,252,632,782
토 지		740,676,923		740,676,923
건 물	462,923,077		462,923,077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7,256,727	415,666,350	35,683,651	427,239,426
의 료 기 계	448,269,300		481,722,95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63,352,813	84,916,487	435,114,927	46,608,023
시 설 장 치	123,527,990		212,982,39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12,588,049	10,939,941	188,107,223	24,875,167
비 품	58,211,350		68,876,5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1,727,908	6,483,442	55,643,257	13,233,243
(3) 무 형 자 산		16,136,868		21,256,905
소 프 트 웨 어		16,136,868		21,256,905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36,680,000		231,680,000
임 차 보 증 금		235,000,000		230,000,000
기 타 보 증 금		1,680,000		1,680,000
자 산 총 계		2,188,676,487		2,109,944,875

부 채				
I. 유 동 부 채			882,382,154	1,207,710,790
외 상 매 입 금		23,001,291		24,815,719
미 지 급 금		205,423,419		163,738,959
예 수 금		61,926,960		87,508,090
부 가 세 예 수 금		221,818		245,453
선 수 금		24,407,300		0
단 기 차 입 금		450,205,323		457,638,886
선 수 수 익		2,067,252		3,682,032
유 동 성 장 기 부 채		115,128,791		470,081,651
II. 비 유 동 부 채			1,013,574,985	526,205,005
장 기 차 입 금		1,013,574,985		526,205,005
부 채 총 계			1,895,957,139	1,733,915,795
자 본				
I. 자 본 금			1,146,439,922	1,291,703,211
출 자 금		1,146,439,922		1,291,703,211
II. 자 본 잉 여 금			0	0
III. 자 본 조 정			0	0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V. 결 손 금			853,720,574	915,674,131
미 처 리 결 손 금 (당 기 순 이 익) 당기: 64,278,686원 전기: 24,783,983원		853,720,574		915,674,131
자 본 총 계			292,719,348	376,029,08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188,676,487	2,109,944,875

5-2 재무상태표 상세내역

미 수 금	의료기관청구분,건강보험공단청구분,카드매출미입금분,프로젝트팀미수금, 부가세환급예정분				
	본점	법동한의원	법동치과	둔산지점	합계
건강보험(의원보험)	62,372,260				62,372,260
건강보험(의원보호)	31,636,720				31,636,720
장기요양(방문간호)	251,970				251,970
건강생활유지비(의)	85,500				85,500
의-의사소견서(노인)	387,450				387,450
의 원 촉 탁 의	4,080,220				4,080,220
의금연치료-공단	142,810				142,810
의금연치료-국고	53,210				53,210
장애인의료비(의)	171,750				171,750
건강검진센터	71,022,660				71,022,660
건강보험(한의원보험)		4,866,270			4,866,270
건강보험(한의원보호)		3,317,900			3,317,900
장애인의료비(한)		18,000			18,000
건강생활유지비(한)		1,500			1,500
건강보험(치과보험)			9,228,380		9,228,380
건강보험(치과보호)			3,375,710		3,375,710
장애인의료비(치)			6,750		6,750
건강생활유지비(치)			1,000		1,000
치과-검진			886,710		886,710
매출미수금	2,021,930	510,010	2,335,440		4,867,380
카드사	5,702,120	1,936,900	2,134,500		9,773,520
비R&D미수금	6,450,325				6,450,325
R&D미수금	2,900,563				2,900,563
치유공간마음의숲				4,000,000	4,000,000
서대전세무서				1,305,054	1,305,054
기타	70,770				70,770
미수금합계	187,350,258	10,650,580	17,968,490	5,305,054	221,274,382

- 미 지 급 금** 퇴직연금(10,730만원), 프로젝트팀 1년미만근무퇴사자퇴직금반환, 2019년탈퇴출자금, 카드대금등
- 예 수 금** 원천세(4,880만원), 4대보험 등
- 단 기 차 입 금** 조합원개인차입, 신한은행마이너스대출
- 장 기 차 입 금**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재단법인밴드,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신협

비 유 동 자 산		본점	법동 한의원	법동 치과	둔산
출 자 금	하니쿰협동조합	100,000			
	품앗이마을사회적협동조합	3,000,000			
	아이쿰한밭생협 자연드림	50,000			
	대덕품앗이협동조합	8,000,000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00,000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592,000			
	마음의숲협동조합	500,000			
	한국사회적경제실천연구소협동조합	1,000,000			
	품앗이생활협동조합	30,000,000			
	마주봄협동조합	500,000			
	지역화폐협동조합	1,000,000			
	새마을금고	50,620			
	신용협동조합	100,000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100,000
토 지	대덕282-10토지	740,676,923			
건 물	대덕282-10건물	415,666,350			
의 료 기 기	의료기기등	83,587,988	191,696	1,136,803	
시 설 장 치	인테리어 & 냉난방설치	10,477,035	162,880	300,026	
비 품	간판, 컴퓨터추가 등	5,332,728	969,666	181,048	
소 프 트 웨 어	프로그램	15,911,000		225,868	
임 차 보 증 금	계족로663번길22 (대덕한의원, 참센)	100,000,000			
	계족로663번길28 (대덕치과)			35,000,000	
	둔산임차보증금				100,000,000
기 타 보 증 금	대덕치과 세콤 설치보증금	80,000			
	의원 안구검사기 구입보증금	1,600,000			
합 계		1,423,524,647	1,324,242	36,843,745	100,100,000

6. 예산대비 집행 계산서

관	항	목	2019년 예산	2019년 결산	예산대비	총액대비
수 입 총 계			2,772,516,755	2,803,410,105	101.11%	100%
수 입	사업수익	대덕의원,검진,가정간호.	1,490,764,370	1,798,897,494	120.67%	64.17%
		대덕 한의원	310,026,105	258,089,405	83.25%	9.21%
		대덕치과	440,000,000	415,899,532	94.52%	14.84%
		둔산치과	400,000,000	148,058,540	37.01%	5.28%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2,000,000	15,880,000	794.00%	0.57%
		경영지원실	7,200,000	6,945,453	96.46%	0.25%
		사업수입 합계	2,649,990,475	2,643,770,424	99.77%	94.31%
	사업외수익	이자수익	1,346,000	1,668,593	123.97%	0.06%
		정부지원및보조금	120,460,280	140,378,396	116.54%	5.01%
		유형자산처분이익	-	699,000		0.02%
		후원금(씨앗기금)	-	4,000,000		0.14%
		잡이익	720,000	12,893,692	1790.79%	0.46%
		사업외수입 합계	122,526,280	159,639,681	130.29%	5.69%
지 출 총 계			2,760,637,405	2,739,131,419	99.22%	100%
지 출	사업비	교육훈련비	9,255,000	9,728,530	105.12%	0.36%
		회의비	10,080,000	9,437,585	93.63%	0.34%
		연대활동비	17,600,000	18,182,176	103.31%	0.66%
		조직활동비	4,000,000	959,510	23.99%	0.04%
		홍보활동비	10,000,000	6,009,302	60.09%	0.22%
		보건예방사업비	72,000,000	53,996,995	75.00%	1.97%
		사업비 합계	122,935,000	98,314,098	79.97%	3.59%
	판매관리비	의약품비등(재고반영)	295,279,532	314,189,222	106.40%	11.47%
		직원급여	1,494,220,949	1,494,094,809	99.99%	54.55%
		퇴직급여	124,518,412	124,696,080	100.14%	4.55%
		복리후생비	147,250,000	114,968,144	78.08%	4.20%
		여비교통비	6,100,000	6,079,502	99.66%	0.22%
		통신비	11,100,000	10,945,132	98.60%	0.40%
		수도광열비	3,790,000	4,453,354	117.50%	0.16%
		전력비	25,900,000	24,115,424	93.11%	0.88%

	세금과공과	105,000,000	47,303,519	45.05%	1.73%
	감가상각비	78,092,312	82,786,141	106.01%	3.02%
	지급임차료	91,660,000	92,010,000	100.38%	3.36%
	수선비	3,300,000	3,297,700	99.93%	0.12%
	보험료	27,400,000	29,969,955	109.38%	1.09%
	도서인쇄비	1,650,000	1,375,350	83.35%	0.05%
	소모품비	27,400,000	19,941,649	72.78%	0.73%
	지급수수료	108,220,000	169,724,449	156.83%	6.20%
	건물관리비	5,500,000	7,495,791	136.29%	0.27%
	협회비	3,060,000	2,030,000	66.34%	0.07%
	무형고정자산상각	7,161,200	7,120,034	99.43%	0.26%
	기금사업비	-	0	0	0.00%
	인적용역비	17,100,000	26,722,420	156.27%	0.98%
	기부금사업비	35,617,760	35,625,400	100.02%	1.30%
	기부금사업비지원금	35,617,760	-35,617,760	-100.00%	-1.30%
	예비비	5,000,000		0.00%	0.00%
	판관비 합계	2,588,702,405	2,583,326,315	99.79%	94.31%
사업외비용	이자비용	49,000,000	56,497,946	115.30%	2.06%
	기부금	-			0.00%
	유형자산처분손실	-	826,494		0.03%
	잡손실	-	166,566		0.01%
	사업외비용 합계	49,000,000	57,491,006	117.33%	2.10%
연 간 수 지 합 계		11,879,350	64,278,686	541.10%	

7. 부서별 매출/손익 안분 계산서

7-1 안분전 전년대비 단위 부서별 매출 / 손익 실적

구분	2019년도 실적		2018년도 실적		실적율(%)	
	매출	손익	매출	손익	매출	손익
누계	2,643,770,424	64,278,686	2,553,217,780	24,783,983	104	259
의원/검진	1,798,897,494	489,755,996	1,433,427,279	425,243,841	125	115
한의원	258,089,405	-20,498,388	295,262,957	13,668,995	87	-150
법치	415,899,532	-1,708,627	423,640,450	-2,496,159	98	68
둔치	148,058,540	-46,911,493	379,768,577	2,136,425	39	-2,196
참선	15,880,000	-63,508,252	15,063,970	-64,274,624	105	99
경지실	6,945,453	-319,036,837	6,054,547	-348,031,196	115	92
산자부(비R&D)		14,817,678	-	880,178		1,683
산자부(R&D)		11,368,609	-	12,485,068		91
노인건강돌봄				-14,128,545		
가꾸자				-700,000		

7-2 안분후 전년대비 단위 부서별 매출 / 손익 실적

구분	2019년도 실적		2018년도 실적		실적율(%)	
	매출	손익	매출	손익	매출	손익
누계	2,643,770,424	64,278,686	2,553,217,780	24,783,984	104	259
의원/검진	1,798,897,494	281,150,665	1,433,427,279	230,062,616	125	122
한의원	258,089,405	-50,705,220	295,262,957	-22,443,961	87	226
법치	415,899,532	-48,102,662	423,640,450	-56,638,975	98	85
둔치	148,058,540	-68,036,958	379,768,577	-45,679,946	39	149
참선	15,880,000	-76,213,426	15,063,970	-74,361,145	105	102
경지실	6,945,453		6,054,547		115	
산자부(비R&D)		14,817,678	-	-1,607,067		-922
산자부(R&D)		11,368,609	-	12,162,576		93
노인건강돌봄				-788,632		
가꾸자				-15,921,482		

iv 민들레 10원칙 실적 보고

●●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Co-operative)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의 요구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된 사람들의 자치적인 협동조직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 협동조합 7원칙

- ▷ 제 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 제도
- ▶ 제 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 제 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 제 4원칙: 자율과 독립
- ▷ 제 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 ▶ 제 6원칙: 협동조합간 협동
- ▷ 제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민들레 3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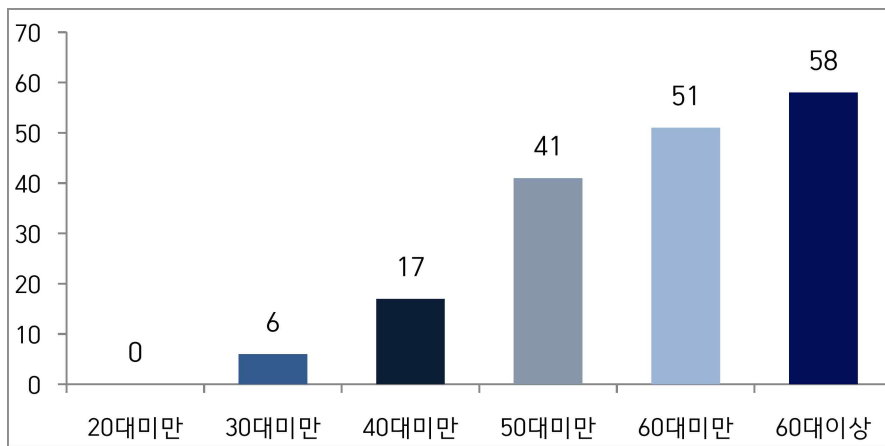
- ▷ 제 8원칙: 걱정진료, 걱정서비스의 원칙
- ▶ 제 9원칙: 노동자 주권의 원칙
- ▷ 제10원칙: 약자우선

1.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성(性), 사회적 신분, 인종, 정파, 종교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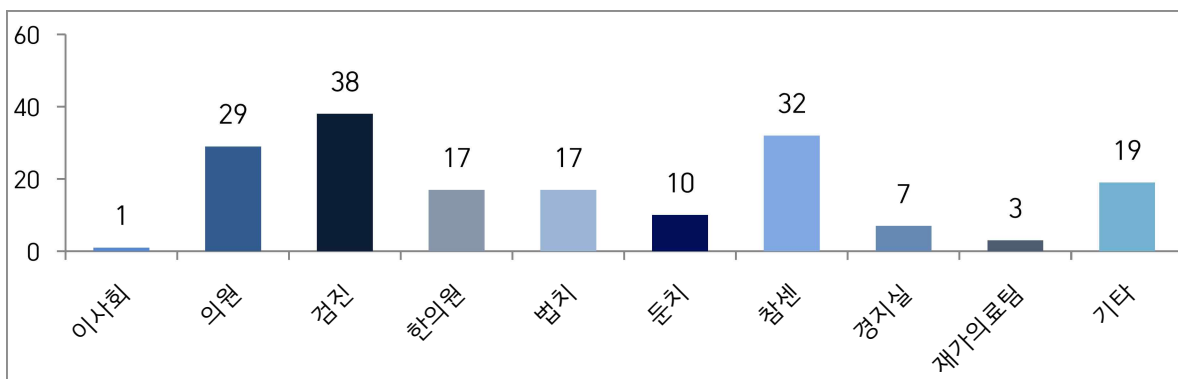
1 2019년 신규 가입조합원 현황: 연령별

구 분	20대 미만	30대 미만	40대 미만	50대 미만	60대 미만	60대 이상	계	비 고
총계(명)	-	6	17	41	51	58	173	
비율(%)	-	3.5	9.8	23.7	29.5	33.5	100	



2 2019년 조합원 가입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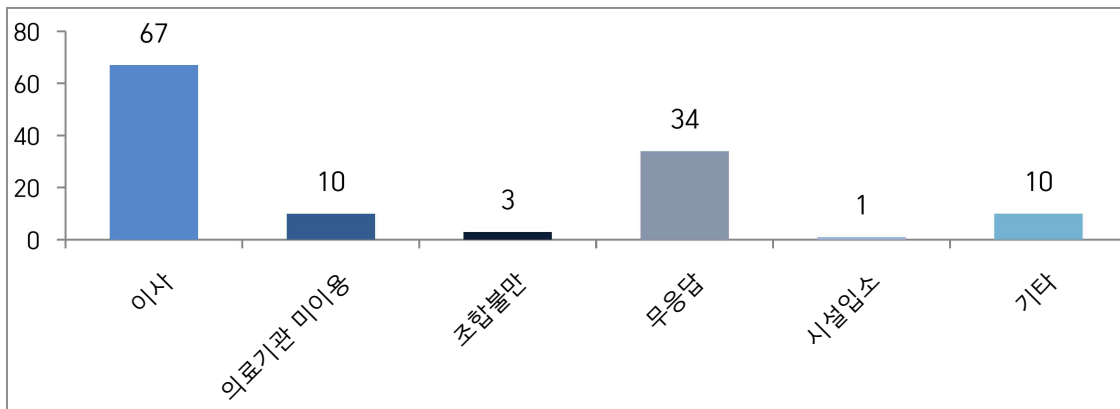
구분	계	이사회	의원	검진	한의원	법치	둔치	참선	경지실	재가의료팀	기타
신규 조합원 수 (명)	173	1	29	38	17	17	10	32	7	3	19
점유율 (%)	100	0.6	16.8	22	9.8	9.8	5.8	18.5	4	1.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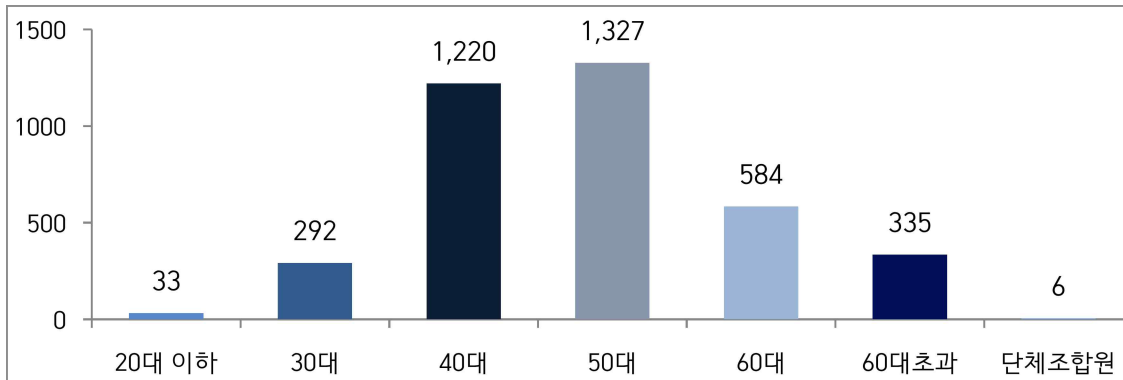
※ 기타 현황(19명) : 홈페이지-8명, 조합원 소개-5명, 외부단체-1명, 건강반-5명

③ 2019년 탈퇴조합원 탈퇴 현황: 가입기간, 탈퇴사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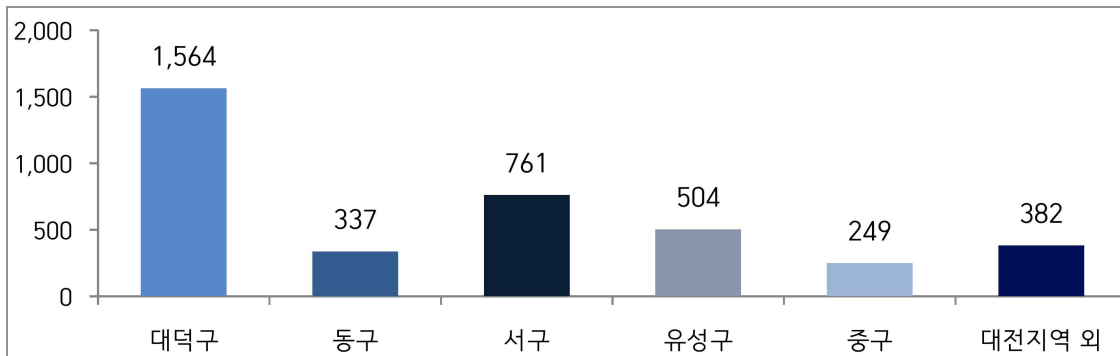
가입기간	총계	이사	의료기관 미이용	조합불만	무응답	시설입소	기타
총계	125	67	10	3	34	1	10
10년 이상	18	4	3		7	1	3
5년 이상 10년미만	53	31	2	2	16		2
2년 이상 5년 미만	41	24	4	1	9		3
2년 미만	13	8	1		2		2



④ 총 조합원 연령대 분포도 (2019년 말 기준)



⑤ 총 조합원 거주지별 분포도 (2019년 말 기준)



⑥ 민들레 조합원 자원조사

□ 목적

- 조합원의 직종 파악을 통한 전문분야에 대한 자원 DB구축

□ 개요

-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문자 링크)
- 기간 : 2019. 11. 19. ~ 26.
- 응답률 : 전체 조합원 3,811명 중 응답 인원 160명(4.1%)
- 설문 문답수 : 총 6문항
〔①기본정보 ②직업군 ③도움여부 ④자원내용 ⑤추천여부 ⑥하고싶은 말〕

□ 성과

- 조합원의 인적자원, 도움에 대한 DB구축
→ 160명 / 683건의 도움 제공 의사 발굴

II.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 조합원들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다른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관리된다.”

Ⅰ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현황

구분	참여대상	개최횟수	평균참석률
총회	조합원(대의원)	1회	51.92%
이사회	임원	12회 (정기 : 11, 임시 : 1)	61.53%
감사	상반기 각2회 실시 (사업, 회계)	4회	

1] 이사회 활동 실적

구분		실적 〈횟수 / 연인원〉	비고
5대 지표	조합원 가입 권유	1	
	스스로 조합비 회원 가입 권유	0	
이사회 개최	정기 이사회 개최 횟수	11	
	임시 이사회 개최 횟수	1	
	참석 이사 수	96 / 180	
안건 처리	총 처리 안건 수	49	
	가결 안건 수	48	
	부결 안건 수	1	
	만장일치 처리 안건 수	48	
	부분 동의 처리 안건 수	1	
위원회/협의회 활동참여	위원회 활동 참여	15 / 84	
	총회준비위원회	7 / 46	
	선거관리위원회	2 / 8	
	신사업추진단	3 / 16	
	인사위원회	2 / 9	
	임직원협의회	1 / 5	

2) 위원회 활동 실적

의사 결정기구	전체 구성원	회의 일자	사외 이사(명)	근로자 인사(명)	조합원 (명)	총 참여 인원(명)
총회준비 위원회	10 명	19/01/10	1	4	1	6
		19/01/17	2	5	1	8
		19/01/29		4	1	5
		19/01/31		4	1	5
		19/02/08	1	5	1	7
		19/02/14	1	6	1	8
		19/02/18	1	5	1	7
합계			6	33	7	46
참가비율(%)			57.5			

의사 결정기구	전체 구성원	회의 일자	근로자 인사(명)	조합원(명)	총 참여 인원(명)
선거관리 위원회	4명	19/02/01	1	3	4
		19/02/14	1	3	4
합계			2	6	8
참가비율(%)			100		

의사 결정기구	전체 구성원	회의 일자	사외 이사(명)	근로자 인사(명)	조합원 (명)	총 참여 인원(명)
신사업 추진단	7명	19/04/18	3	3	-	6
		19/05/16	2	3	-	5
		19/11/18	2	3	-	5
합계			7	9	-	16
참가비율(%)			78.5			

의사 결정기구	전체 구성원	회의 일자	사외 이사(명)	사내 이사(명)	근로자 인사(명)	총 참여 인원(명)
인사위원회	5명	19/02/19	2	2	1	5
	5명	19/07/11	1	2	1	4
합계			3	4	2	9
참가비율(%)			90			

의사 결정기구	전체 구성원	회의 일자	근로자위원 (명)	사용자위원 (명)	총 참여 인원(명)
임직원협의회	8명	19/12/27	3	2	5
합계			3	2	5
참가비율(%)			62.5		

② 제8기 대의원 선출

□ 목표

- 대의원 선출 : 110명
- 조합원들에게 대의원 선거 홍보 : 투표율 10% 이상

□ 개요

- 선거기간 : 2019. 12. 26. ~ 2020. 01. 16.
- 선거관리위원회
 - 구성 : 위원장 김창일, 간사 전홍주, 위원 백종범, 박영기
 - 회의 : 총 6회
- 투표 방법 : 협동조합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전자투표)
 - 전자투표 : 문자 링크 발송 (총 4일)
 - 현장방문 전자투표 : 민들레 검진센터 1층 입구 (총 4일)
- 총 유권자 수 : 3,822명

□ 결과

선거구	정수	입후보자 수	유권자수	투표자 수	투표율 (%)	비고
소비자조합원(건강반, 일반)	45명	45명	3,527명	201명	5.7	
직원조합원(직원)	20명	20명	42명	42명	100	
자원봉사자조합원(건강리더)	20명	20명	65명	50명	76.92	
후원자조합원(스스로조합비 가입자)	25명	25명	188명	105명	55.85	
총인원	110명	110명	3,822명	398명	1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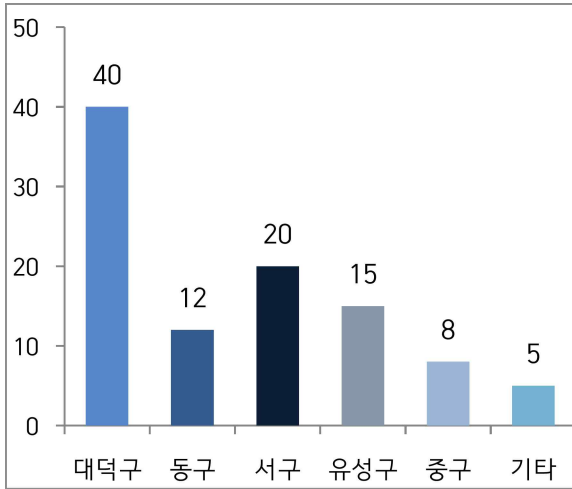
□ 성과

- 양적 성과 : 총 유권자 3,822명 중 총 투표자 398명 (10.41%)
- 질적 성과
 - 선거구 구성이 좋았음 : 활동 조합원(건강반, 건강리더)들이 조직이 되어 있어 투표 참여율이 높았음.
 - 독려 전화 효율성
 - 조합원들이 조합의 관심을 받는 것 같아 좋았다는 다수 의견
 - 문자 받고 잊었다가 전화 받고 선거에 다수 참여
 - 10%대의 높은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 형성
 - 조합원 정보 수정 효과가 있었음. (생년월일,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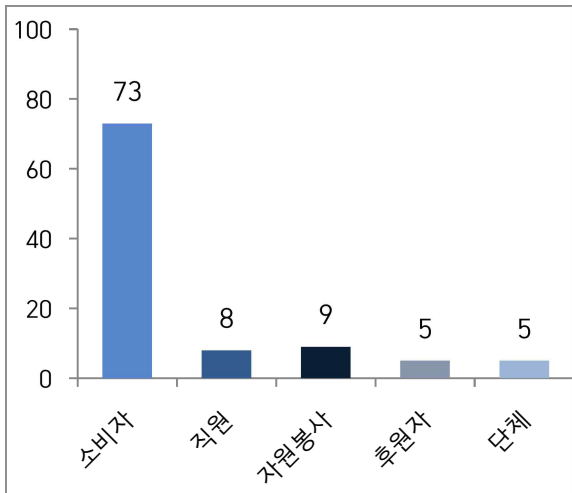
③ 제7기, 제8기 대의원 구성현황

〈제7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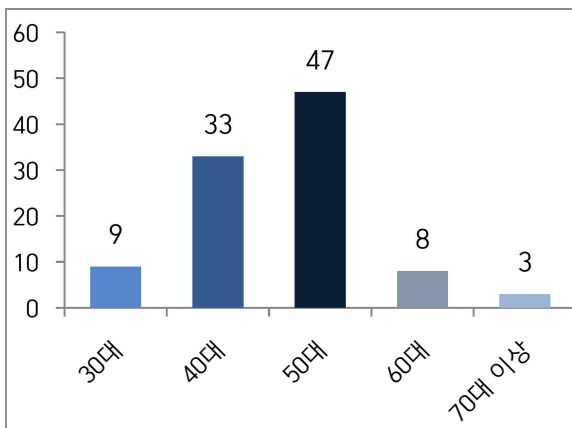
1] 지역별



2]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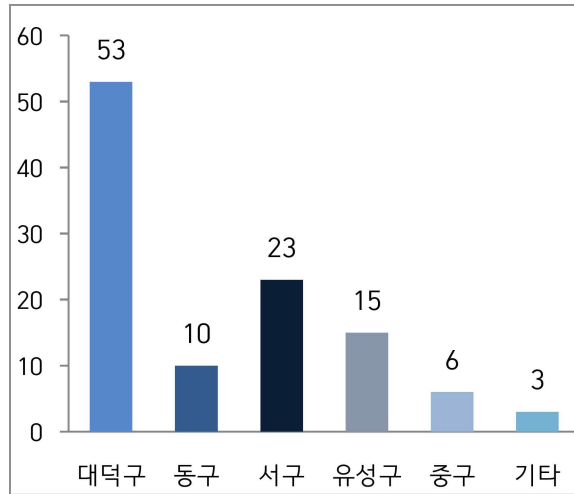


3]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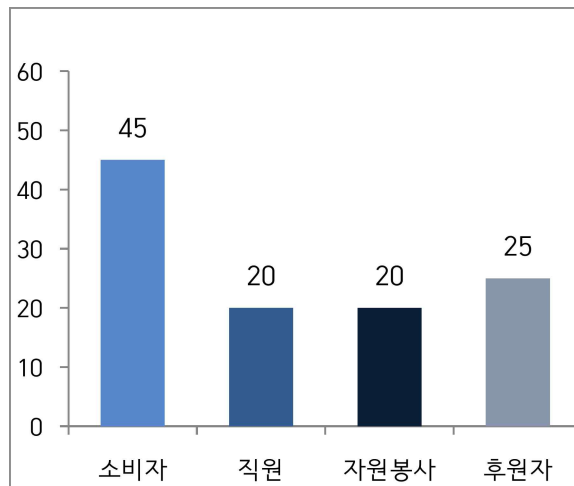


〈제8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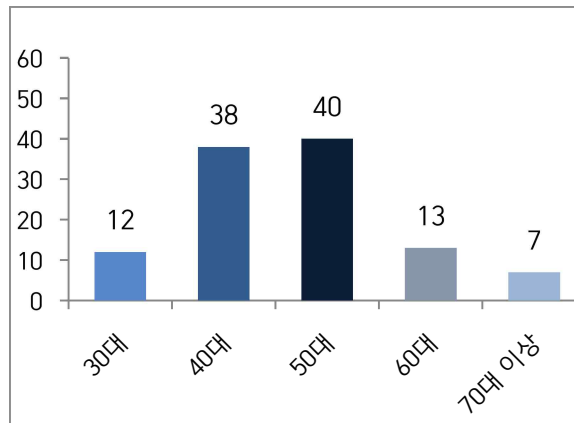
1] 지역별



2] 유형별



3] 연령별



③ 종합감사 피감 내역

1) 사업감사

- 일시 : 2020. 02. 10.(월) 10:00 ~ 12:00
- 장소 : 민들레 3층 회의실
- 감사 : 조세중 감사
- 피감자 : 한영수 사무처장, 전경화 사무팀장, 남은순 조직팀장

① 감사내역

1. 조합 활동사업 및 경영 감사
2. 설립이념 및 정관에 따른 사업 감사
3. 사업계획에 따른 감사
4. 단위 부서별 계획대비 실적 감사

② 감사평

1. 고액출자자의 출자금 반환으로 전년대비 출자금이 감소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로 대체되어서 안정적인 현금유동을 만들었고, 정기 소액출자 및 진료비 지원을 출자로 적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2019년의 경영성과는 직원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노고를 치하하고 성과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3. 의료기관 필수적인 일상적 관리를 위한 문서 기록 권고
 - 재고 및 유통기간 관리
 - 감염관리 매뉴얼
 - 폐기물 관리
4.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수탁 취지와 민들레 내·외부에서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과의 연관성을 조합원들에게 잘 알리고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기를 당부.

2) 회계감사

- 일 시 : 2020. 02. 13.(목) 16:00 ~ 18:00
- 장 소 : 민들레 3층 회의실
- 감 사 : 배남억 감사
- 피감자 : 한영수 사무처장, 전경화 사무팀장, 임영신 회계사원, 남은순 조직팀장

① 중점 감사내역

1.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
2. 부채 금액, 상환 일정 감사
3. 민들레 출자 단체 안정성 감사
4. 수입의 매출 확정일에 대한 감사

② 감사평

1. 매출관리
 - :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매출은 입금된 금액을 확인 후 매출을 확정하는 현행 제도를, 청구시점 기준으로 매출을 기록 및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매월 결산을 통한 정확한 매출 관리 권고
2. 부채현황 관리
 - : 부채 증가분에 대하여 만기도래 일정 관리와, 부채정보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공개를 권고
 - ➔ 결산 총평 제2호 수록
3. 출자단체의 안정성
 - : 단체출자 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출자한 단체의 재무상태를 파악, 총회에 공유를 권고
4. 기타
 - 2019년 예산대비 매출 100%의 성과가 있으며, 손익 또한 상승함.
 - 의원, 검진의 활약이 도드라졌던 한해였다.
 - 각 의료기관별 매출 상승과 검진 확장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 퇴직연금은 급여 개념으로 매월 불입이 필요하다.
 - ➔ 2020년부터 시행
 - 출자금 감좌액이 약 3억 가량으로 보아 출자금을 구간별로 관리 및 조합원에게 공유가 필요
 - ➔ 민들레 10원칙 중 3원칙 제2호 수록
 - 사회구조상 돌봄체계를 고민해야하는 시대에 민들레의 역할이 있다.

Ⅲ. 제3원칙 : 조합원에 의한 경제적 관리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기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한다.

① 출자금 현황 (2019.12.31.현재)

총액(원)	증가액(원)	감소액(원)	증감액(원)	1인당 출자액(원)
1,146,439,922	181,052,311	326,315,600	△145,263,289	301,933

② 출자금액 분포 현황(2019.12.31.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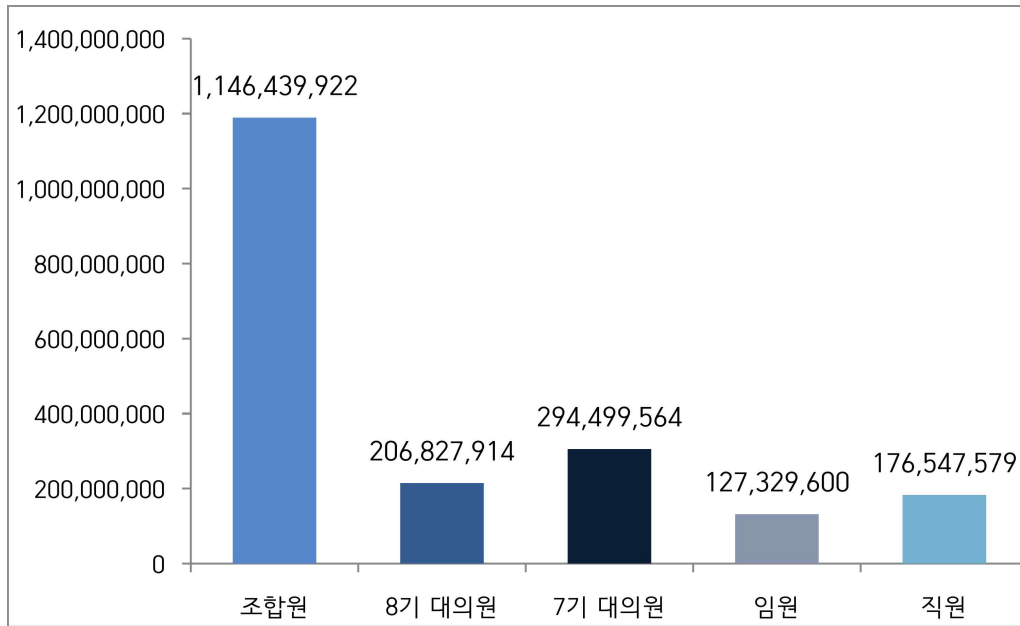
구분	1만원	5만원~ 10만원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만원~50 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총계
조합원 수(명)	2	2,476	1,045	111	130	33	3,797
금액(원)	20,000	131,776,616	148,528,314	76,802,905	247,937,349	541,374,738	1,146,439,922

③ 자산대비 출자금 유지 비율 (2019.12.31.현재)

구분	비율	산출근거	비고 (법정 의무비율)
자산대비 출자금 비율	52.38%	$\left(\frac{\text{출자금}}{\text{총자산}} \right) \times 100\% =$ $\left(\frac{1,146,439,922}{2,188,676,487} \right) \times 100$	5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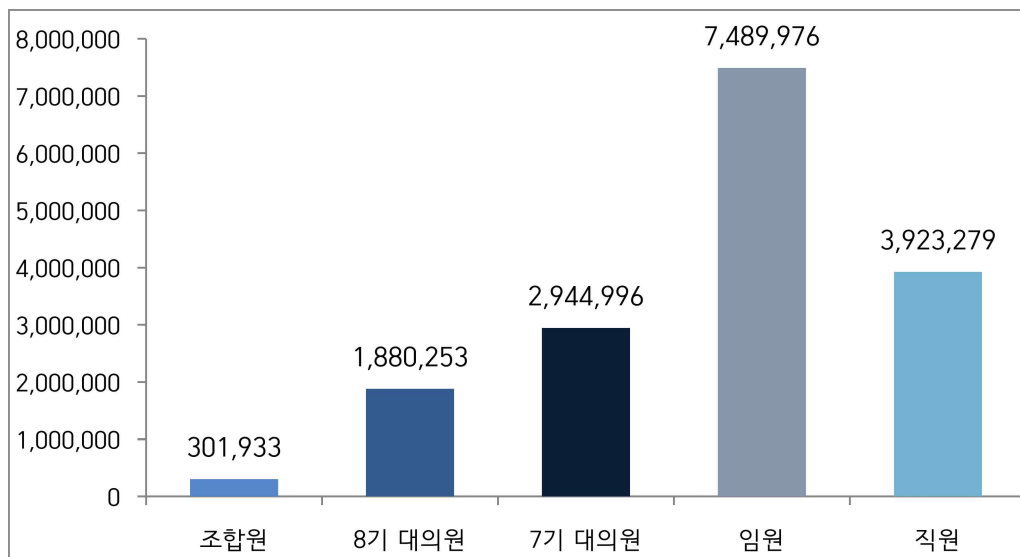
④ 2019년 출자금 현황: 구성원별 (중복포함)

구분	총 조합원	8기 대의원	7기 대의원	임원	직원
	3,797	110	100	17	45
총출자금	1,146,439,922	206,827,914	294,499,564	127,329,600	176,547,579
평균 출자금	301,933	1,880,253	2,944,996	7,489,976	3,923,279



※대의원, 임원, 직원 중복의 경우 모두 포함

⑤ 2019년 출자금 현황: 구성원별 평균



⑥ 기부금 현황 (2019.12.31.현재)

총액(원)	스스로조합비		일반 후원금		비고
	회원수	금액	후원건수	금액	
37,220,000	207	27,470,000	21	9,750,000	단체 포함

※ 2018년도 기부금을 적립하여 2019년도에 지출하였음(기부금사용규정에 따름)

〈스스로조합비 조합원〉

강수환 강중예 고경숙 고광현 고명순 고명호 고미경 고영철 구영희 국현정 권경미 권기철 권미양
 권의경 권지명 권지연 권지훈 김경희 김광희 김대희 김도화 김동석 김동수 김동중 김문경 김미선
 김미영 김민희 김병조 김성훈 김수경 김연주 김영선 김영순 김영준 김옥순 김윤기 김인화 김재용
 김종남 김지훈 김진호 김찬옥 김춘화 김춘화2 김태희 김현나 김현영 김현주 김현태 김형렬 김혜영
 김혜원 김희형 나성은 나준식 남은순 남해성 노미정 문희균 민혜란 박명구 박명화 박미양 박범진
 박병철 박봉희 박영민 박유경 박유미 박재연 박종래 박종례 박종희 박준규 박지숙 박지영 박진희
 박찬주 박태일 박현주 박호연 배남억 백경수 백수홍 백유선 백종범 봉미경 서정빈 신명섭 석필환
 선재규 성광진 손태희 송영숙 송지현 송직근 신경희 신소연 신옥영 신용희 신원식 신지혜 신태연
 신현정 신호섭 안영섭 양봉석 엄경애 엄기정 엄종원 오민우 오선희 오수민 우광제 원종승 유 미
 유미경 유병규 유수진 유승민 유승우 유영희 유인수 유진석 유하영 윤명숙 윤보국 윤창재 이경민
 이기병 이기순 이기엽 이덕희 이동철 이민영 이선아 이선영 이성현 이 송 이영은 이영희 이원표
 이은영 이은주 이자우 이정례 이종현 이주선 이지명 이진건 이진미 이충신 이해순 이형욱 이효진
 이해경 임병언 임서연 임영신 임인선 임종윤 임주성 임창국 임효진 장기홍 장병천 장윤희 전송희
 정나현 정연희 정영자 정운재 정종하 정현숙 조병민 조성주 조세종 조영국 조윤희 조정선 조희중
 주영배 주웅식 진옥화 차주연 채유희 천성아 최소영 최수이 최순례 최은남 최장희 최혜경 한영수
 허애령 허영란 홍미옥 홍완기 홍은영 홍중순 홍춘기 홍현채 황선희 황신애 황 용 황정인

〈기타 기부자〉

김상명 박명화 배남억 신명호 조세종 한국자산관리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V. 제4원칙 :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① 외부자금 총당 비율

구분	총액	외부자금 총당	비율	비고
운영비	3,282,589,973	703,249,204	21.4	프로젝트사업비, 정부지원금 등
차입금	1,578,909,099	1,463,909,099	92.7	조합원(9명) 차입 115,000,000

② 프로젝트 사업비

프로젝트명	사업비(원)	기관
주민참여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지원 ICT통합솔루션개발사업	249,900,000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주민참여 커뮤니티케어 기반 조성과 의료 건강 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290,467,000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 사회적경제연구원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디자인	15,400,000	전담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기관 : 주식회사 디맨드
계	555,767,000	

③ 외부 후원금

프로젝트명	사업비(원)	기관
1인1사 사회적경제 협약	5,000,000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2019년 한국형 방문진료모델 선도사업	4,000,000	주체: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후원:(자)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계	9,000,000	

④ 정부지원금 수급

단체명	사업비(원)	사용처
대전고용노동청	15,369,240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고용안정) - 2명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5,706,350	대전형일자리두드림사업 인건비지원 - 2명
청년재단	17,500,000	NPO연계형 청년일경험확동지원사업 - 2명
대덕구청	51,914,470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 - 4명
계	100,490,060	

V. 제5원칙 : 교육 ·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건강리더 양성과정

o 목적 : 주민의 건강증진 역량을 키워 지역사회와의 관계, 협동, 돌봄을 확산하는 건강리더를 양성

구분	일정	수료자	인원
10기	19.5/7-6/25 (8회) 매주화요일 10-12시	최■호 이■희 양■윤 이■희 정■진 이■복 강■희 배■숙 조■희 김■순 천■경 박■심 임■희	13
11기	19.5/9-7/4 (8회) 매주목요일 19-21시	김■형 김■나 이■원 임■경 이■성 윤■윤 신■순 전■옥 장■선 임■숙 김■현 김■경 박■호 석■옥 이■우	15
12기	19.10/23-12/11 (8회) 매주수요일 19-21시	서■모 김■일 이■소 구■일	4

② 케어매니저 기초교육과정

o 목적 : 주민의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건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케어매니저 양성

일정	수료자	인원
19.10/17-12/6 (8회)	최■나, 강■희, 백■현, 주■식, 곽■훈, 장■희, 이■희, 박■정, 장■호, 김■현, 송■근, 국■정, 박■숙, 이■우, 남■순, 임■희, 정■성, 이■연	18

③ 실습, 인턴 프로그램

o 목적 : 협동의료인 양성 및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가치 확산

소속	내용	인원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사회적경제 현장실습	1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사회 의학실습	5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실습	8

④ 대의원 씨앗모임

○ 목적 : 조합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합원과 대의원의 역할을 알아가는 모임

구분	일정	참여자	인원
1차	2019.11.11	신■영, 신■순, 박■자, 김■순, 홍■기, 주■식, 최■나, 정■주, 이■희, 전■숙, 전■옥, 김■미, 진■화, 나■식, 송■근, 한■수, 이■우, 국■경, 김■일, 남■순, 임■희, 정■성	22
2차	2019.12.02	신■영, 신■순, 최■나, 김■중, 전■숙, 윤■윤, 김■순, 권■미, 이■희, 전■옥, 송■근, 국■경, 김■일, 남■순, 임■희, 정■성, 이■민	17

⑤ 견학

○ 목적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의 가치 확산

소속	내용	인원
제주이여도자활센터	지역건강예방활동 및 케어매니저먼트소개	13
서울시 건강생태계조성지원단	대덕구 커뮤니티케어 조례와 시범사업 계획공유	10
사회적경제박람회 탐방	사회혁신한마당 견학	10
송실대학교 대학원	조합 및 주민참여건강증진사업 소개	14
원주의료사협	조합운영 및 보건예방활동 소개 통합돌봄사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현황	4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들레 및 의료사협 소개	28
정림복지관	조합 소개 및 사회복지사 직업 소개	10

⑥ 홍보채널

○ 목적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공유 및 정보제공

오프라인	소식지, 브로셔(사업홍보물), 사업결과보고서, 의료기관 모니터 등
온라인	홈페이지(공식), 페이스북페이지(주요공지), 밴드(커뮤니티: 조합원, 대의원, 직원, 소모임 등),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주치의, SNS소식지 등)

VI. 제6원칙 : 협동조합 간 협동

“협동조합은 지역 및 전국단위, 그리고 인접국간 및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한다.”

① 우리 조합의 외부 타 조합 출자

연번	단체명	출자액	비고
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592,000	
2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	35,000,000	
3	품앗이마을사회적협동조합	3,000,000	
4	대덕품앗이협동조합	3,000,000	
5	지역화폐협동조합	1,000,000	
6	사회혁신연구소협동조합	1,000,000	
7	마음의숲사회적협동조합	500,000	
8	마주봄협동조합	500,000	
9	한밭사회적협동조합	300,000	
10	한밭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50,000	
11	하니쿰	100,000	
12	으뜸새마을금고	50,620	
13	한빛신협	100,000	
14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100,000	
총 출자액		50,292,620	

② 우리 조합의 외부 타 단체 등 회비 납부

연번	단체명	금액	비고
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1,275,620	
2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1,200,000	
3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전지부	600,000	
4	한밭사회적협동조합	360,000	
5	한밭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120,000	
6	법1동마을공동체 꽃	68,750	
7	한밭레츠	1,350,000	
8	대덕구마을넷	50,000	
총 금액		15,024,370	

③ 우리조합 단체 조합원

연번	단체명	출자금	비고
1	사회적경제연구원	1,000,000	
2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3,000,000	
3	아이쿱대전	5,000,000	
4	품앗이생협	1,000,000	
5	한밭생협	10,000,000	
6	한살림대전	10,000,000	

④ 활동참여 - 직원조합원참여, 다중이해관계 구축

연번	단체명	활동영역	비고
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 (나준식)	
2	마음의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송직근)	
3	지역화폐협동조합	이사 (송직근)	
4	마주봄협동조합	이사 (송직근)	
5	대덕품앗이생활협동조합	이사 (전경화)	
6	공익활동가서로도움공제회	이사 (김혜원)	

⑤ 사업참여

구분	기관	내용
먹을거리	밥솥가락협동조합	직원 점심 케이터링
	열린부뚜막협동조합	CB활성화사업 참여, 멘토링
	한살림대전생협 식생활문화센터	CB활성화사업 참여, 식생활문화교육 등
심리, 정서	치유공간 마음의숲 사회적협동조합	심리상담, 직원교육, 프로그램:건강리더 양성과정
	희망찾기 협동조합	CB활성화사업 참여
	코칭배달부 심청이 협동조합	CB활성화사업 참여
의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의료제도, 정책개선 등 연대활동
교육	로컬푸드교육센터 품 협동조합	CB활성화사업 참여
	숲엔생태놀이 협동조합	CB활성화사업 참여
공연예술기획	작은극장 다함 협동조합	CB활성화사업 참여
여행	대전체험여행 협동조합	CB활성화사업 참여
출판홍보	모두의책 협동조합	CB활성화사업 참여
IT	위즈온협동조합	민들레 홈페이지 구축, 관리
연구	사회적경제실천연구소협동조합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모델 구축 컨설팅
생태계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연구원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협동조합연대	

Ⅶ. 제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① 지역사회 네트워크 직원 참여

- 나준식 : 대덕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위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 운영위원
- 송직근 :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한영수 : 한발레츠 운영위원
푸드플랜네트워크 감사
- 국현정 : 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덕구 법동청소년문화의집 지원협의회 위원,
대전위기청소년지원네트워크 위원, 초롱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 남은순 :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송촌동 주민자치회 건강복지분과 위원,
마루마을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
- 박현주 : 대덕구푸드플랜네트워크 준비위원

② 지역사회 건강 네트워크 구축

구분	내용	비고
인증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제2007-054호)
	아동, 여성 안전 협력병원	대전광역시
	여성친화기업	대전광역시
	가족친화기업	여성가족부(제2016-0130호) 연장
업무협약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업무협약	충대LINC+ 세상속의과학 협동조합 충대간호대학 사회적경제연구원 협동조합
	노인전문간호사 과정생 임상실습 협약	충남대대학원 간호대학
	디멘드 업무제휴 협약	건강리더와 funfuf 운동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약정	대덕구청, 인증2년차
	치유공간 마음의숲협동조합 업무제휴협약	
	대전형 일자리 두드림지원사업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한국자산관리공사
	간호학과 현장실습 협약서	상명대학교
	지역화폐 호혜거래 시스템 개발 협약	사회적경제연구원 협동조합
	청소년 안녕학교를 위한 업무협약	대전대덕구자원봉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협약	충남대 산학협력단
	현장실습 교육 협약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구분	내용	비고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위·수탁협약	대덕구청
	사회적협동조합도원참사랑나눔 업무협약	
	마주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충남대 산학협력단, 사회적경제연구원사회적협동조합, 마주봄협동조합
	상호교류 협력 협약	대덕구지역자활센터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대전광역새일센터
	대덕사랑교육문화복지재단 업무제휴 협약	
	1사1사회적경제기업 결연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령자 생활중심형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협약	봄소프트
	상호교류 협력 협약	대덕구지역자활센터
건강검진 협약	유성구청	
	대덕구청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장애인보호작업장 '느루'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청소년 일시보호센터	학교 밖 청소년 검진
	초, 중, 고교	학생검진

③ 지역화폐 거래 실적

○ 목 적 : 민들레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결제받고, 민들레 임직원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지역화폐 두루를 지급함으로써, 지역화폐 통용 활성화에 기여한다.

○ 화폐명 : 한발레츠 '두루'

○ 거래실적

- 수입

구분	건수	수입액(두루)	건수비율(%)	액수비율(%)
의 원	591	5,543,900	53.9	28.7
한의원	580	5,293,150	25.5	27.4
검진센터	92	1,776,860	8.4	9.2
법동치과	134	6,734,220	12.2	34.8
합 계	1097	19,348,130	100.0	100.0

- 지출

구분	건수	지출액(두루)	건수비율(%)	액수비율(%)
회원업소	9	450,000	1.8	2.2
조각환전 (두레약국)	25	73,800	5.0	0.4
후원/감사	12	2,400,000	2.4	11.8
직원 급여	290	14,800,000	58.0	72.5
직원교육, 행사 참여격려지급	60	620,000	12.0	3.0
이사회활동지급	104	2,080,000	20.8	10.2
합 계	500	20,423,800	100.0	100.0

④ 민들레 사회성과 관리팀 구성

- 2020년 전담부서(TFT) 운영 예정
- 사무처 : 사무팀, 조직팀 협력 구축
- 사회적 성과 지표 관리 및 보고
- 사회적 공헌 금전적 가치 환산

Ⅷ. 제8원칙 : 적정진료, 적정서비스의 원칙

“과잉진료를 경계하되 우리사회 현재수준의 진료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의료기관 적정운영 평가 결과

- 만성질환 적정성 평가 (고혈압, 당뇨, 천식)
 - 평가대상기간 : 2017년 7월 ~ 2018년 6월
 - 평가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평가결과 : 양호
 - 인센티브 : 현금수급 (고혈압 270만원, 당뇨병 120만원 - 2019년 4월 16일 입금)

② 다양한 의료 시범사업 참여

- 만성질환관리 교육사업 참여
 -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 건강 증진용 동영상 제작 및 교육
 - 만성질환관리 대상자 집단교육 실시 (월1회)
- 왕진 시범사업 참여
 - 의사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생활습관 및 환경을 파악하여 적절한 진료처방
- 장애인주치의 사업 참여
 - 의사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③ 건강화폐 발행

- 화폐명 : '조각'
- 목적 : 조합원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활동 장려함
- 방법 : 건강증진 활동에 따른 조각 지급
 - 건강리더 돌봄활동, 건강반 활동, 사례관리 참여시 1,000~2,000조각 지급
- 실적

총 지급건수	총 지급액	지급 인원수	지급 모임수 (건강반 등)	신규발행 통장수
1,141건	2,586,000조각	111명	10개	114개

④ 의료기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운영

- 성과, 혁신, 위험관리 3개 분야로 나눠 정기 관리예정
 - 세부자료 2019년 단위별 사업계획 참조
- 의료기관 운영 자율점검 제 시행
 - 연1회 보건소 보고
 - 자체 점검 주기 설전 운영 : 분기 1회

IX. 제9원칙 : 노동자 주권의 원칙

“노동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성장시키는 주요 요소이다. 협동조합은 노동자에게 주권을 부여하며, 주체적으로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직원 조합원 조합 출자 참여

- 직원 조합원 : 48명 중 45명, 93.7%
- 직원 출자금 총액
 - 총 출자금 1,146,439,922원 중 176,547,579원
 - 점유율 : 약 15%
- 직원 1인당 평균 출자금 : 3,923,280원
 - 조합원 평균 출자액 : 301,933원

② 노사협의회(임직원협의회) 운영

- 근로자대표위원 및 근로자위원 : 4명
- 임원 : 이사장 포함 이사 4명
- 협의회 개최 : 총 2회 개최
- 주요 이행 실적 : 임금 협상, 격려금 지급 협의, 퇴직금 적립, 중식개선 등

③ 직원 상조회 운영

- 회의 개최 : 매월 1회
- 상조회 경조비 및 대출금 지급
- 직원상조회 회칙 제정 : 2017년 7월 1일
- 직원상조회 회칙 개정
 - 총 3회 개정 운영
 - 개정일 : 2019년 2월 12일, 7월 2일, 11월 5일

④ 직원대표 경영진 참여

- 직원 이사 : 나준식, 송직근, 민혜란
- 매월 정기 이사회 등 경영활동 참여

⑤ 각 단위 부서별 자주관리를 위한 회의 개최

- 회의 주기 : 매주 화요일 13:00
- 참석 대상 : 경영지원실장 및 각 부서 팀장
- 회의 안건 : 각종 현안 공유 및 경영 성과 토의 등
- 주요 이행 실적
 - 경영성과 및 계획 보고, 의견 수렴
 - 예산에 따른 회계 사무 처리 및 각 단위 기관별 회의 개최
 - 단위 부서별 자체 사업 평가 및 사업 계획 수립 등

⑥ 지역 공익활동가 서로도움공제

- 목적 : 지역 공익활동 단체와 연대
- 방법 : 급여차감 후 단체 송금 적립
- 조합대표 임원참여
- 공제회원 : 14명

⑦ 대덕유니온 활동 참여

- 목적 :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 직원 참여자 : 7명
- 주요 활동
 - 전직원 '감정노동자를 위한 영화치유프로그램' 2회 운영
 - 운영위원회 3회 참석
 - 참여 근로자 소모임 구성, 활동비 수급

⑧ 직원 업무기술서 결과 분석

□ 목적

- 직원 인사시스템 구축 및 각 부서별 업무 파악
- 결과 분석을 통한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한 기틀 마련
- 조사를 통해 직원의 고충 및 제안 사항을 경영에 활용
- 직원 개개인의 의견을 취합, 분석하여 전체 직원의 의견을 모음

□ 조사 기간

- 2020. 1. 31(금) ~ 2. 8(토)

□ 조사 대상

- 직원 총 34명

□ 조사 방법

- 설문형식으로 자기 평가를 통한 업무 만족도 기술(10점 만점 기준)
- 별첨 : 자기업무기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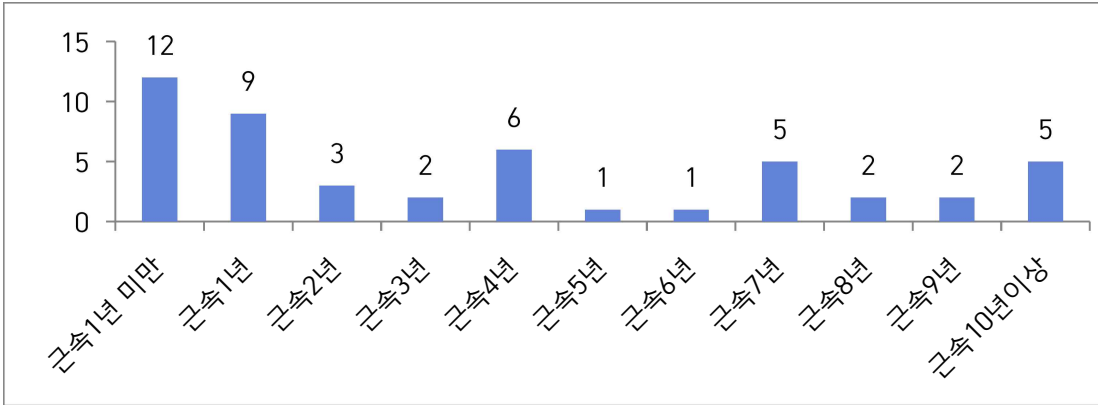
□ 결과 분석

① 근속연수 (단위:년)

- 직원 평균 근속연수 : 4.02
- 10년 이상 : 5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1년이상 5년미만 : 20
- 1년 미만 : 12

○ 근속연수별 직원 분포

(단위:명)



② 자기업무 평가

○ 주업무 평가(34명 응답, 평균 : 8.2점)

만족 점수	총 인원	10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5년 미만
10	6	1	2	3
9	11	1	2	8
8	10	1	2	7
7	3		1	2
6	2			2
5	2			2

○ 보조/부가업무 평가(34명 응답, 평균 : 7.7점)

만족 점수	총 인원	10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5년 미만
10	2	1		1
9	9		2	7
8	14	2	4	8
7	2			2
6	3			3
5	4		1	3

③ 현재 자기업무 만족도

○ 주업무 만족도(32명 응답, 평균 : 8.4점)

만족 점수	총 인원	10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5년 미만
10	7	1	1	5
9	13	1	3	9
8	4	1	1	2
7	5		1	4
6	1			1
5	2			2

○ 보조/부가업무 만족도(명 응답, 평균 : 8.2점)

만족 점수	총 인원	10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5년 미만
10	5	1	1	3
9	13		2	11
8	7	2	3	2
7	1			1
6	4			4
5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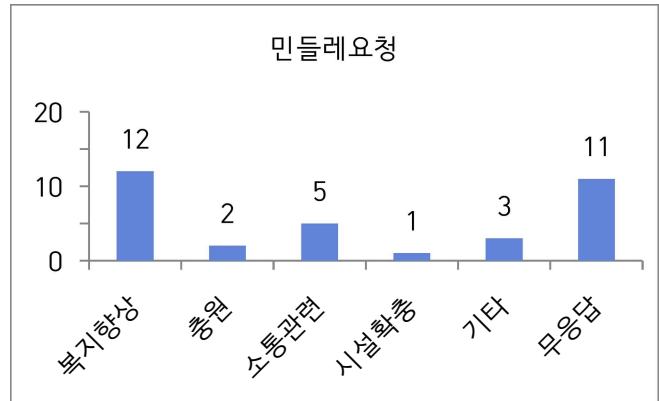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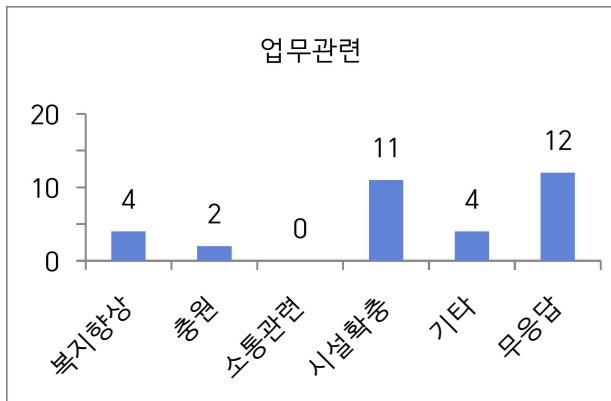
④ 희망/건의 사항

○ 분류별 응답 현황

(단위:명)

구분	사항	총계	복지향상	총원	소통관련	시설확충	기타	무응답
응답 수	업무관련	34	4	2		11	4	13
	민들레요청	34	12	2	5	1	3	11

○ 응답 분류별 점유율(%)



X. 제10원칙 : 약자우선

“약자와 소수라는 이유로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 재원 : 조합자체부담금 > 기부금(스스로조합비) > 외부지원금 순으로 충당
- 조합 이용 취약계층의 의료비(비보험 적용 진료비) 지원

② 약자와 소수의 권리 보호

- 재가의료팀 운영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의사(내과, 한의사), 가정전문간호사, 방문간호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 목적 :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개선
 - 2019년도 실적 : 장애인주치의 등록이 40명에서 80명으로 증가, 연서비스 대상인원 498명(월평균 40.8명, 상반기평균 31.3명, 하반기평균 50.2명)도 160% 증가
- 만성질환관리사업 전개
 - 만성질환관리 양호기관(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지정
 - 고혈압, 당뇨병 관리 시범사업
 - 교육용 자체 홍보영상물 제작
 - 월1회 정기 교육
- 왕진사업 참여
 - 2019년 12월 시행
 - 2020년 본격 운영 예정
- 김천 도로공사 방문 :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 무료진료
 - 2019. 12. 29(일)
 - 나준식, 허애령, 박지영, 이경민, 윤미경, 한영수, 오민우



- 성소수자 진료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참여기관
- 어린이국가예방접종사업 지정의료기관

제5호 의안 2019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19년 당기 순이익 64,278,68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의 손실금 915,674,131원에 보전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25조, 제33조 제5호

※정관 제25조(법정적립금)

-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결손금 처리 계산서

만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과 목	제17(당기)		제16(전기)	
	금 액		금 액	
I. 미 처 리 결 손 금		854,720,574		915,674,131
1. 전기이월 미처리결손금	915,674,131		917,610,474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0		0	
3. 전기오류수정이익	0		0	
4. 전기오류수정손실	2,325,129		22,847,640	
5. 중 간 배 당 금	0		0	
6. 당 기 순 이 익	64,278,686		24,783,983	
II. 결 손 금 처 리 액		0		0
1. 임의적립금 이입액	0		0	
2. 기타법정적립금 이입액	0		0	
3. 이익준비금 이입액	0		0	
4. 재평가적립금 이입액	0		0	
5. 자본준비금 이입액	0		0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853,720,574		915,674,131

제6호 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정관 개정(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1호, 제35조 제1호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정관 개정사유

- 보건복지부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감사에 따른 주무부서의 권고 사항
- 상위법(협동조합기본법) 위배에 따른 개정
-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개정 및 규약의 개정
- 조합의 미시행 사업에 대한 조항 삭제

참고

	정 관	규 약	규 정
의 결	총회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총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사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내 용	목적, 명칭, 조직, 운영, 사업, 조합원 등 14개 필수사항	정관 이외의 조직, 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 규약 이외의 경미한 사항
예 시	표준정관(예시)	총회운영, 출자금감소, 배당, 현물출자 등	이사회 운영, 감사, 직원보수, 선거관리 등

정관개정(안)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법동)에 둔다.</p> <p>② 지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탄방동)에 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③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2, 2층(법동) 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8, 2층(법동) 4.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 2층(탄방동) 	<p>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법동)에 둔다.</p> <p>② <삭제, 2020. 05. 09></p> <p>③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 2층(법동) <개정, 2020. 05. 09>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2, 2층(법동) 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8, 2층(법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둔산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조항 삭제 • 민들레의원 소재지의 층수 추가
<p>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p> <p>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비자조합원 :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p>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p> <p>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비자조합원 : <u>조합이 제공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자</u> <개정, 2020. 05.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변경 <p>(보건복지부 권고 사항)</p>
<p>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p> <p>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p>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p> <p>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 2020. 05. 09> 4.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20. 05. 09>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항 삭제 • 용어 변경 <p>(보건복지부 권고 사항)</p>
<p>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청구권)</p> <p>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p>	<p>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청구권)</p> <p>④ 제1항에 따른 환급은 탈퇴하거나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승인 단서 조항 삭제, 협동조합기본법 위배.

<p>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u>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 먼저 지급한 후 총회에서 승인한다.</u></p>	<p><u>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총회 승인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0. 05. 09></u></p>	<p>(보건복지부 권고 사항)</p>
<p>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u>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u></p>	<p>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최저출자좌수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05. 09>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u>⑤ <삭제, 2020. 05. 09></u></p>	<p>• 단서 조항 자구 수정.</p>
<p>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5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p>	<p>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u>1명 혹은 2명 이상의</u>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5. 09></p>	<p>• 감사 정수 수정.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p>
<p>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일은 총회에서 차기 임원 선출시 까지로 한다. <개정, 2020. 05. 09></p>	<p>• 임원 임기의 명확화</p>
<p>제58조(운영의 공개)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보고서(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p>	<p>제58조(운영의 공개)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보고서(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 5. <삭제, 2020. 05. 09></p>	<p>• 6항 5호 삭제. 사업미실시에 대한 조항 삭제.</p>
<p>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p>	<p>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p>	<p>• 사업의 종류에 자원봉사활동 사업 조항 추가.</p>

<p>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p> <p>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p> <p>가. 의료시설, 요양시설, 보육시설, 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시설</p> <p>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p> <p>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p> <p>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p> <p>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 사업</p> <p>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p> <p>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p>	<p>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p> <p>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p> <p>가. 의료시설, 요양시설, 보육시설, 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시설</p> <p>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p> <p>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p> <p>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p> <p>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 사업</p> <p>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p> <p>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p> <p>아. 기타 자원봉사활동 사업 <신설, 2020. 05. 09></p>	<p>(보건복지부 권고 사항)</p>
<p>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p> <p>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p> <p>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p> <p>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p> <p>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p> <p>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p> <p>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p> <p>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p>	<p>제62조(사업의 이용) ①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p> <p>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p> <p>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p> <p>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p> <p>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p> <p>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p> <p>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p> <p>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p> <p>②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으로 한다. <신설, 2020. 05. 09></p>	<p>• 사업의 총공급고 산정 기준 조항 추가.</p> <p>(보건복지부 권고 사항)</p>

제7호 의안 **임원(이사, 감사)선출의 건**

- 의결주문: 임원(이사, 감사)을 선출해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3호, 제45조, 제46조, 선거관리규정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되 선출하여야할 임원의 정수는 임원선출선거공고 3일 전까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회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회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회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창일
선거관리위원	백종범
선거관리위원	박영기
선거관리위원(간사)	전홍주

2. 경과

2019.11.28.(목)	2020년 임원 및 제8기대의원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승인- 이사회
2020.01.28.(화)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안)확정, 후보자 등록일정 확정, 선거 공보일 확정, 선거일 확정
2020.01.31.(금)	임원(이사) 선거 공고 (공고기간 7일)
2020.02.06.(목)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 후보자 등록 관련 서류 점검.
2020.02.07.(금)	임원(이사) 선거 입후보자 등록 (등록기간 7일)
2020.02.14.(금)	후보자자격심사 및 확정 (기간 4일)
2020.02.17.(월)	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 - 후보자 등록서류 검토, 후보자 확정, 공보 및 선거방법 검토
2020.02.18.(화)	선거 공보 (공보기간 4일)
2020.02.21.(금)	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 - 선거방법 및 진행 점검
2020.02.21.(토)	정기총회 연기 통지(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정책에 따름)
2020.04.24.(금)	총회일정 확정 통지
2020.04.28.(화)	선거 공고(선거 공보 개시)
2020.05.09.(토)	선거일. 통합21차 정기총회

3. 입후보 현황

구분	임원정수	등록	비고
이사	13명	13명	
감사	2명	2명	
계	15명	15명	

4. 임원 선출 선거 입후보자 소개

□ 이사후보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발행함</p> <p>2020. 02. 18.</p> <p>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의하여 임원(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1번</p> <p>◆ 성명 : 국현정 (당 41세)</p> <p>◆ 직업 : 사회복지사</p>		
<p><주요 경력></p>		
<p>○ 조합가입일 : 2018년 04월 26일</p> <p>○ 전)대전복지재단 전문인력</p> <p>○ 전)대전해바라기센터 상담원</p> <p>○ 전)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년사업단팀장</p> <p>○ 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센터장</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발행함</p> <p>2020. 02. 18.</p> <p>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의하여 임원(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2번</p> <p>◆ 성명 : 김성훈 (당 48세)</p> <p>◆ 직업 : 사회운동가</p>		
<p><주요 경력></p>		
<p>○ 조합가입일 : 2001년 10월 25일</p> <p>○ 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p> <p>○ 현)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발행함</p> <p>2020. 02. 18.</p> <p>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의하여 임원(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3번</p> <p>◆ 성명 : 김종철 (당 66세)</p> <p>◆ 직업 : 회사원</p>		
<p><주요 경력></p>		
<p>○ 조합가입일 : 2020년 02월 09일</p> <p>○ 전)㈜오성아이엔씨 대전A/S센터장</p> <p>○ 전)㈜오성아이엔씨 콩고, 태권지사 지사장</p> <p>○ 전)오성테크설립 운영</p> <p>○ 전)㈜오성트라피즈 겸바브웨 지사장</p> <p>○ 전)금강일보사 총무국장</p> <p>○ 현)사회적협동조합 도원참사랑 경영이사</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발행함</p> <p>2020. 02. 18.</p> <p>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의하여 임원(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4번</p> <p>◆ 성명 : 김찬욱 (당 48세)</p> <p>◆ 직업 : 지역품앗이 한발레즈 두루저기</p>		
<p><주요 경력></p>		
<p>○ 조합가입일 : 2012년 06월 27일</p> <p>○ 현)지역품앗이 한발레즈 두루저기</p> <p>○ 현)마을기업 좋은이웃 이사</p> <p>○ 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발행함</p> <p>2020. 02. 18.</p> <p>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의하여 임원(이사) 임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5번</p> <p>◆ 성명 : 나준식 (당 53세)</p> <p>◆ 직업 : 의사</p>		
<p><주요 경력></p>		
<p>○ 조합가입일 : 2001년 10월 15일</p> <p>○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창립</p> <p>○ 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발행함</p> <p>2020. 02. 18.</p> <p>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의하여 임원(이사) 임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6번</p> <p>◆ 성명 : 남은순 (당 41세)</p> <p>◆ 직업 : 조직활동가</p>		
<p><주요 경력></p>		
<p>○ 조합가입일 : 2016년 10월 18일</p> <p>○ 현)송촌동 주민자치회 건강복지분과 위원</p> <p>○ 현)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p> <p>○ 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직팀장</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발행함</p> <p>2020. 02. 18.</p> <p>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의하여 임원(이사) 임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7번</p> <p>◆ 성명 : 박명화 (당 49세)</p> <p>◆ 직업 : 교수</p>		
<p><주요 경력></p>		
<p>○ 조합가입일 : 2019년 12월 31일</p> <p>○ 미국 아이오와대학 박사</p> <p>○ 현)충남대학교 교수</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발행함</p> <p>2020. 02. 18.</p> <p>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의하여 임원(이사) 임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8번</p> <p>◆ 성명 : 박봉희 (당 60세)</p> <p>◆ 직업 : 사회복지사</p>		
<p><주요 경력></p>		
<p>○ 조합가입일 : 2015년 09월 04일</p> <p>○ 진)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부설>교육연구센터 소장</p> <p>○ 현)치유공간마음의숲 사회적협동조합 센터장</p> <p>○ 현)건강+ 협동연구소 협동조합 이사</p> <p>○ 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발행함</p> <p>2020. 02. 18.</p> <p>선거관리위원장</p>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의하여 임원(이사) 임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 : 9번 ◆ 성명 : 붕미경 (당 55세) ◆ 직업 : 영어강사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가입일 : 2011년 12월 09일 ○ 전)대전대 인문영재교육원 영어 강의 ○ 현)대전시 서구 문화원 영어 강의 ○ 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발행함</p> <p>2020. 02. 18.</p> <p>선거관리위원장</p>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의하여 임원(이사) 임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 : 10번 ◆ 성명 : 서원모 (당 61세) ◆ 직업 : 사회복지 활동가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가입일 : 2016년 06월 16일 ○ 현)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대전·세종지부 지부장 ○ 현)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부회장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발행함</p> <p>2020. 02. 18.</p> <p>선거관리위원장</p>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의하여 임원(이사) 임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 : 11번 ◆ 성명 : 이원호 (당 53세) ◆ 직업 : 품앗이생활협동조합 품앗이마을 대표이사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가입일 : 2012년 06월 20일 ○ 전)삼보식품 창업 ○ 전)보리식품영농조합법인 설립 ○ 전)주식회사 푸드코아 설립 ○ 전)주식회사 헤피브릿지 설립 ○ 전)품앗이생활협동조합 창립 ○ 현)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대표이사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발행함</p> <p>2020. 02. 18.</p> <p>선거관리위원장</p>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의하여 임원(이사) 임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 : 12번 ◆ 성명 : 정운제 (당 62세) ◆ 직업 : ㈜그림프리스 대표이사, 변리사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가입일 : 2015년 08월 03일 ○ 전)동립축산식품부 근무 ○ 전)특허청 근무 ○ 전)주식회사 이엔티 부사장 ○ 현)그림프리스 대표이사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선거공보


	<p style="text-align: center;">임원선거공보</p> <p style="text-align: center;">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발행함</p> <p>2020. 02. 18.</p> <p>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의하여 임원(이사) 임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13번</p> <p>◆ 성명 : 최미나 (당 42세)</p> <p>◆ 직업 : 꽃향기공방대표</p>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 경력></p> <p>○ 조합가입일 : 2019년 05월 09일</p> <p>○ 현)중리동주민자치회 위원</p> <p>○ 현)꽃향기공방 대표</p> <p>○ 현)한지, 토탈 강사</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 감사후보

임 원 선 거 공 보

	임원선거공보	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발행함 2020. 02. 18.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2조에 의하여 임원(감사) 임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		
◆ 기호 : 1번 ◆ 성명 : 배남억 (당 49세) ◆ 직업 : 공인회계사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 경력></p> ○ 조합가입일 : 2008년 03월 14일 ○ 현)대전고등검찰청 시민위원회 위원 ○ 현)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현)사단법인 공감만세인터네셔널 이사 ○ 현)공주의료원 사외이사 ※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임 원 선 거 공 보

	임원선거공보	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발행함 2020. 02. 18.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2조에 의하여 임원(감사) 임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		
◆ 기호 : 2번 ◆ 성명 : 조세중 (당 55세) ◆ 직업 : 사회적경제연구원 부설 소셜경영연구소 소장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 경력></p> ○ 조합가입일 : 2014년 01월 27일 ○ 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전)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 현)대전중정커뮤니티케어 협의회 공동대표 ○ 현)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사업감사 ○ 현)사회적경제연구원 부설 소셜경영연구소 소장 ○ 현)한남대학교 교양교육대학,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8호 의안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4호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i. 2020년 사업계획

1. 2020 사업기조
2. 5대 핵심지표 달성목표
3. 사업기조에 따른 사업계획
4. 일반 사업계획

ii. 2020년 단위부서별 사업계획

1. 센터별 조직 현황
2. 단위 부서별 사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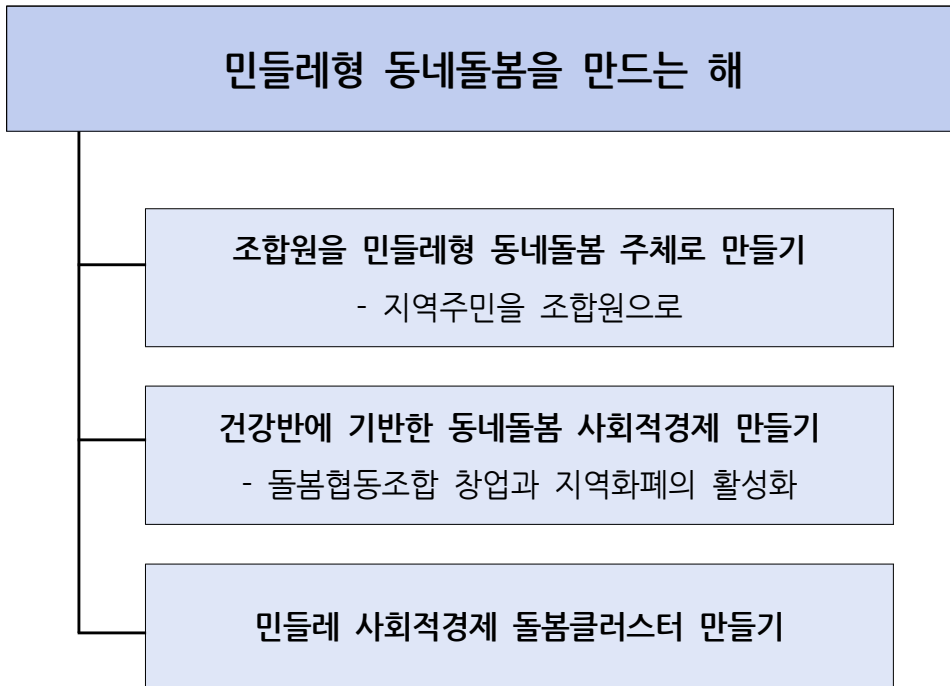
iii. 2020년도 예산

1. 2020 예산수립 기조
2. 예산 총칙
3. 총예산 흐름도
4. 자본예산
5. 단위 부서별 결산대비 예산

i 2020년 사업계획

1. 2020 사업기조
2. 5대 핵심지표 달성 목표
3. 사업기조에 따른 사업계획
4. 일반 사업계획

1. 2020 사업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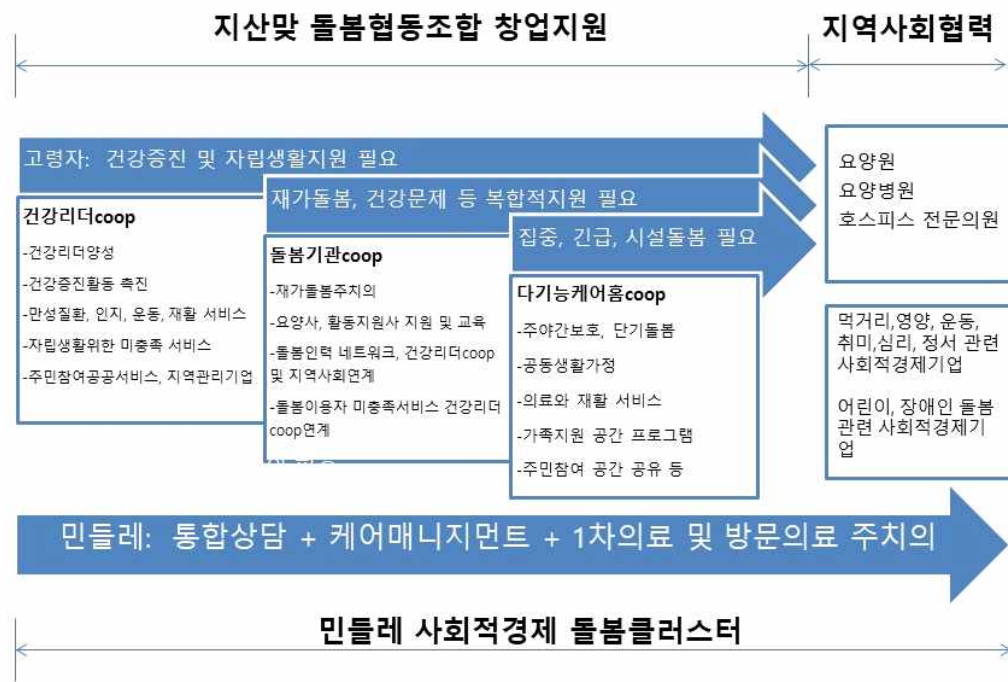
2019년도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주도 통합돌봄 모델을 만드는 해’의 사업 기조를 이어 2020년은 이를 확장하여 ‘민들레형 통합돌봄을 만드는 해’로 정하여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민들레형 통합돌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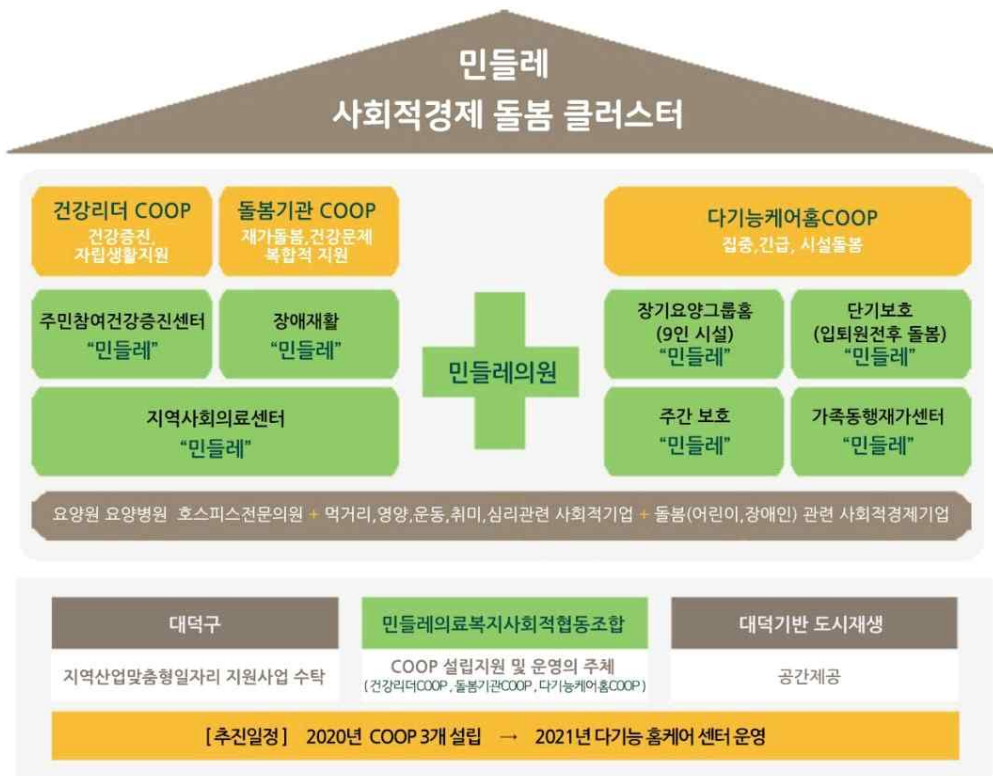
- 당사자, 지역주민의 욕구를 중심으로
- 당사자, 지역주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 주민의 건강자치력 향상과 지역사회 민관 자원의 발굴, 개발, 통합, 연계를 통해
- 돌봄이 개인의 자립과 존엄한 삶 뿐만 아니라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첫째, 지역주민을 민들레 조합원으로 확장시켜 나와 이웃을 위한 동네 돌봄의 주체로서 성장시키고 육성하는 건강반, 조합원, 주민 스스로 건강자치력을 향상시키고 돌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을 발굴 육성하고,

둘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건강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동네 돌봄의 상호 연계를 위한 지역화폐가 통용 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체(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배양시켜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와 민들레형 동네 돌봄을 확장하고,



셋째, 민들레와 지역사회가 바라온 민들레형 노인돌봄시설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공유하는 소규모 다기능 케어홈 협동조합 형태로, 민간주체화, 주민참여공공서비스, 사회적경제 중심으로 역량, 자원준비를 민간전략 중심으로 시범사업 등 구체적 사업과정에서 민관협력을 실현한다.



■ 민들레 사회적경제 돌봄클러스터 만들기를 위한 구체화할 전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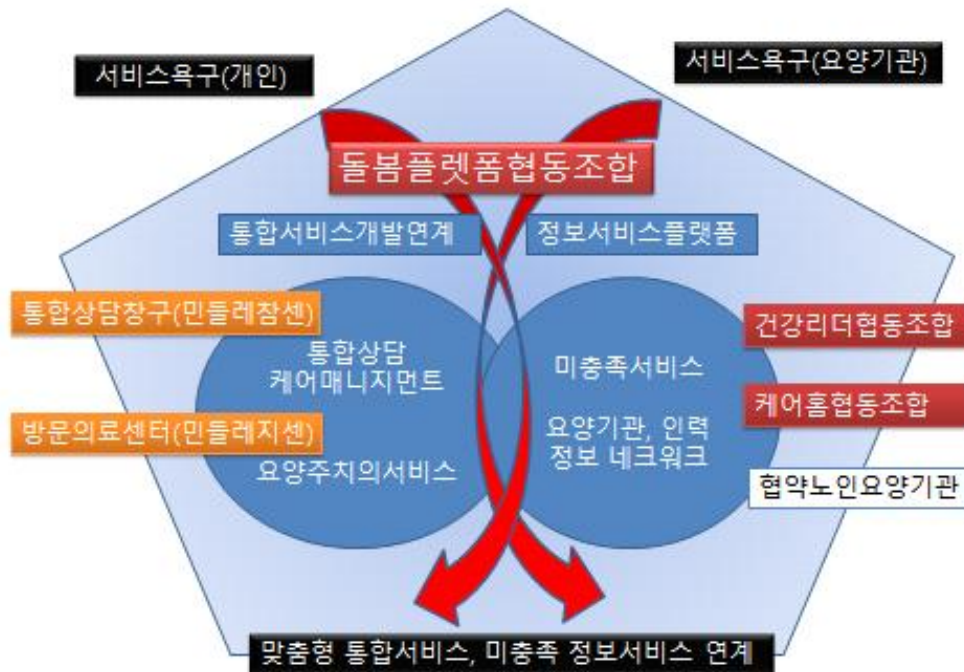
① 돌봄플랫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 민들레의 통합상담, 케어매니지먼트, 방문주치의 의료를 핵심 솔루션으로
- 건강리더협동조합, 다기능케어협동조합을 포함한 민간요양자원 통합 및 연계하여
- 취약계층을 넘어 보편적 돌봄 욕구와 미충족서비스 영역의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감.
(대덕구)

② 주민자치, 공동체와 연결하기 위해 동네돌봄통합공간사업(도시재생연계, 혹은 주민공유 공간조성관리)과 공동체기획사업, 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향후 주민자치회 분과, 의제화 과정에 결합 (법동, 도시재생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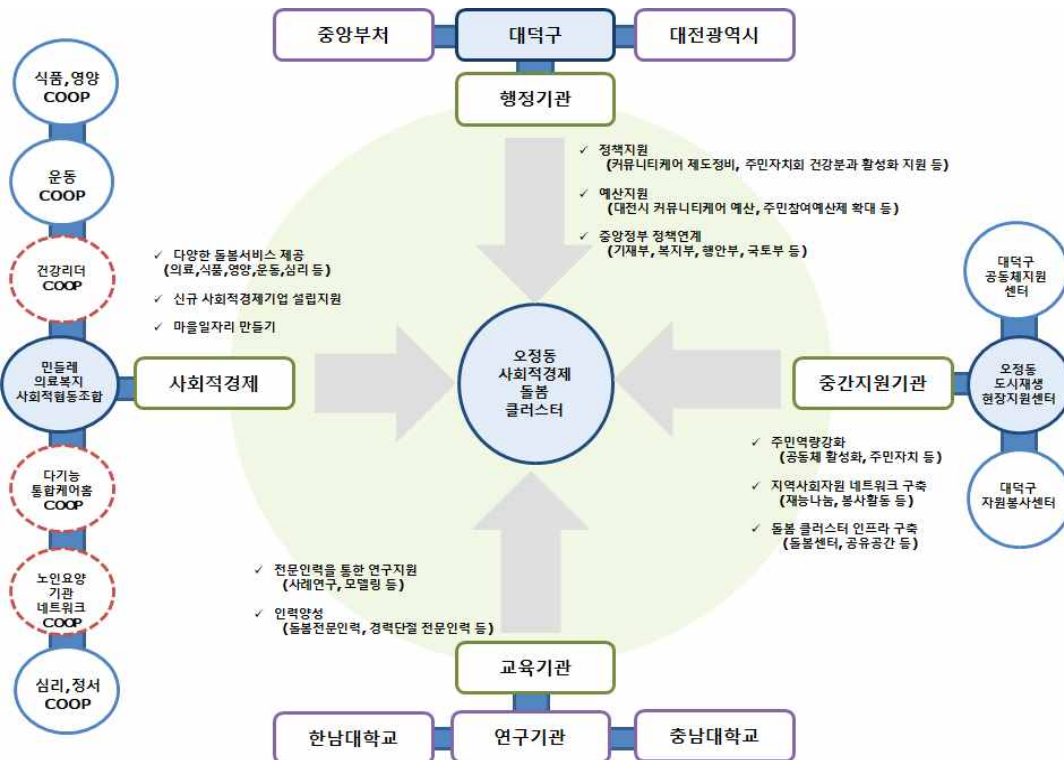
③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결합하여, 민관의 상호 성장 및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협치수준과 협치체계를 현실화, 고도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포지셔닝 포함)

④ 동단위 구단위의 커뮤니티케어 민관협치체계 (예) 사회적경제돌봄클러스터 +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연구용역 통해 제안



※ 참조 : 민들레의 민관협력, 시범사업 현황

1. 사회적경제서비스육성사업(경증치매돌봄) 추진과정에서 건강리더협동조합 서비스 일자리화
2. 대덕구 건강리더양성 및 핫라인사업을 건강리더협동조합이 수행하면서 소규모돌봄단위 (주민-건강리더-건강반(활동)-케어매니저(주치의)) 조직화 및 확장 (대전시 지원사업 연계)
3. 건강생활지원센터 계약의사(주4시간 근무) 지역케어회의 운영과 통합상담창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제안 :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케어회의 민관상설소통구조를 세우고, 민간상담창구네트워킹, 의료, 건강, 주민참여 등 민간자원의 참여와 연계의 폭을 넓혀나가는 방향 (주민센터통합상담창구의 행정중심, 취약계층중심, 맞춤형복지중심 한계극복)
4. 법동주공아파트 상가공간의 민관협력 동네돌봄공유공간 조성, 관리운영 사업 기획
5. 컴케어팀과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원개발, 조정, 정책지원 등 추동
6. 연구용역 준비 및 결합으로 정책, 예산반영 준비



7. 도시재생지역 협력과 연계는 도시재생 준비와 행정의 의지 확인 필요.

2. 5대 핵심지표 달성 목표

2-1 5대 핵심지표 달성 기조

민들레 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조합원 성장을 목표로, 참선에서 분리된 조합원 조직관리 주체로서 조직팀의 역할과 온라인 활동강화 및 관리체계확립 등으로 조합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는 해이다.

2-2 5대 핵심지표

1) 조합원

2019년 말 기준	목표	비고
3,797세대 신규: 173세대 탈퇴요청: 125세대	총 조합원 4,000세대 증감계 : 203명	

2) 출자금

2019년 말 기준	목표	비고
총액: 1,146,439,922원 증감: -145,263,289원	증감계 1억원	

3) 건강리더

2019년 말 기준	목표	비고
총 214명 조합원 : 127명	250명 신규 : 36명	대의원으로 양성할 수 있는 성장 유도

4) 건강반

2019년 말 기준	목표	비고
총 48개 반원 : 438명	30개 (300명 반원)	조합원 비율 50%

5) 스스로 조합비

2019년 말 기준	목표	비고
207세대 27,470,000원	400세대 35,000,000원	조합원 10%

3. 사업기조에 따른 사업계획

3-1 총괄 현황

사업 기조	세부 사업계획
<p>1. 조합원을 만들레형 동네 돌봄 주체로 만들기</p>	<p>o 5대 핵심지표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 4,000 세대 - 출자금 : 증감계 1억 원 - 건강리더 : 신규 36명 - 건강반 : 2020 활동/신규 건강반 30개 반원 300명, 조합원비율 50%이상 - 스스로조합비 : 400세대, 3,500만 원
<p>2. 건강반에 기반한 동네 돌봄 사회적경제 만들기</p>	<p>o 협동조합 설립지원 : 3개 ➡ '자산맛' 사업 연계</p> <p>① 건강리더 협동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리더-동행센터 운영 - 건강리더 교육, 양성 - 주민 자조모임, 건강반 활동 조직, 촉진 - 주민관계망 속에서 돌봄사각지대 발굴, 연계 - 서비스수요자 조합원을 위한 정책 - 만들레상담센터, 케어매니저와 연계된 활동 - 비즈니스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충족 돌봄서비스, 취약/비취약 계층의 다양한 돌봄서비스 욕구 대응 • 조합원, 주민, 행정, 복지기관, 요양기관 등으로부터 요청되는 다양한 수요 • 공적재원 사업 수탁 • 돌봄서비스 개발참여, 운영 (낙상예방 편편사업, IT원예치료 등 • 돌봄관련 주민참여 리빙랩사업 등 <p>② 노인요양기관네트워크 협동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요양, 주간보호, 공동생활가정의 방문의료서비스 등 연계 욕구 - 지역사회 요양의 서비스질 개선 - 가족상담케어 및 케어매니지먼트 - 요양사의 보수교육 -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연계 체계 - 지역주민에 기관 선택의 정보제공 - 비즈니스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가입기관의 회비 • 요양사 보수교육 사업 • 가족케어, 케어매니지먼트 • 공적재원 사업수탁

	<p>③ 다기능통합케어홈 협동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중간시설, 방문의료, - 케어매니저가 재가요양, 주간보호, 장단기보호 등을 케어플래닝 - 조합원, 가족, 자원활동, 요양사, 케어매니저 참여구조 - 지역사회 미충족 사각지대 돌봄 - 지역주민 공유공간, 공유식당 등 - 대전지역 사회적협동조합, 생협조합원 초기 참여구조 - 비즈니스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수가중심 혹은 조합원 자부담중심 모델 • 지역사회 중간시설 제공 • 공적재원 연계 (공유공간, 공유식당 등)
<p>3. 민들레 사회적경제 돌봄클러스터 만들기</p>	<p>○ 대덕구 기반 돌봄클러스터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상담센터 - 방문의료센터 - 건강리더협동조합-동행센터 - 노인요양네트워크 협동조합 - 다기능통합케어홈 협동조합 - 지역의 장애인, 노인이용 주민공유공간, 시설 - 카페, 커뮤니티키친 등 <p>○ 민들레 돌봄상담센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어매니지먼트를 기반으로 케어클러스터의 사업과 조직을 연계하는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및 주민상담창구 : 상담관리모델링사업 : 자원조사DB구축 : 건강리더육성사업(낙상예방, 치매예방) : ‘조각은행’ 확대 운영 - 대덕구동네돌봄 구축에 필요한 지역돌봄네트워크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암동(보니파시오요양병원) ‘케어카페’와 ‘건강반’운영 : 사례건강반(만성질환자 및 건강취약계층) : 케어매니저 양성(충남대학교 링크+사업단) : 돌봄서비스 확충(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건강리더)

4. 일반 사업계획

4-1 민들레 기초조직 강화 사업

① 조합원 및 대의원 중점 사업

□ **목적:** 민들레의료사협 대의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합원과 소통·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지역사회 연대와 사업 확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자치력을 향상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동네돌봄의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 **목표:** ○ 대의원 자치운영체계 구성 및 활동 기반 구축
 ○ 지역사회 주민조직 및 단체와 연대 활동(지역 행사, 주민자치회 등)

대상	추진내용						
조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조합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 						
대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원 성장 단계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10px 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100px;">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2px;">준비</div> <div style="padding: 2px;">씨앗</div> <div style="padding: 2px;">대의원</div> </div> →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100px;">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2px;">1년차</div> <div style="padding: 2px;">새싹</div> <div style="padding: 2px;">민들레의 이해</div>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100px;">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2px;">2년차</div> <div style="padding: 2px;">출기</div> <div style="padding: 2px;">주민조직의 이론과 실제</div>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100px;">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2px;">3년차</div> <div style="padding: 2px;">열매</div> <div style="padding: 2px;">조합원 및 지역조직 주민자치 활동</div> </div> </div> ○ 대의원 자치운영체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원 자치회 구성과 운영 - 건강반 운영 및 대의원 활동 자치계획 수립, 예산 집행 ○ 대의원 새싹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상반기 내 - 주제: 민들레의료사협의 이해 						
건강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반 조직·운영 : [건강반 세부운영(안)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30개, 건강반원 300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조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조합원, 대의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 참여 - 기존/신규: 기존 건강반 유지와 신규 - 반원의 조합원 비율 증대: 50%이상 </td> </tr> <tr> <td>운영</td> <td>건강반원, 조합원 수, 활동 횟수, 보고서 제출 등 세부 규칙을 대의원 자치회에서 결정</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조합원, 대의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 참여 - 기존/신규: 기존 건강반 유지와 신규 - 반원의 조합원 비율 증대: 50%이상 	운영	건강반원, 조합원 수, 활동 횟수, 보고서 제출 등 세부 규칙을 대의원 자치회에서 결정
구분	내용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조합원, 대의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 참여 - 기존/신규: 기존 건강반 유지와 신규 - 반원의 조합원 비율 증대: 50%이상 						
운영	건강반원, 조합원 수, 활동 횟수, 보고서 제출 등 세부 규칙을 대의원 자치회에서 결정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31 235 472 353"> <p>촉진</p> </td> <td data-bbox="472 235 1355 3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육구 찾기와 목표 세우는 초기 상담 진행 -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자원연계 - 활동 촉진 및 모니터링 </td> </tr> </table>	<p>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육구 찾기와 목표 세우는 초기 상담 진행 -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자원연계 - 활동 촉진 및 모니터링 							
<p>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육구 찾기와 목표 세우는 초기 상담 진행 -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자원연계 - 활동 촉진 및 모니터링 									
<p>건강리더</p>	<p>○ 건강리더 양성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30명 양성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36 517 459 580">구 분</th> <th data-bbox="459 517 764 580">대 상</th> <th data-bbox="764 517 1342 580">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6 580 459 712">기 초</td> <td data-bbox="459 580 764 712"> 조합원 및 지역주민, 건강반장 및 건강반원 등 30명 양성 </td> <td data-bbox="764 580 1342 712"> 자기건강관리, 케어매니지먼트 협업역량, 건강반 운영 등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2기수 설계·진행 </td> </tr> <tr> <td data-bbox="336 712 459 804">심 화</td> <td data-bbox="459 712 764 804"> 기초과정 참여 및 수료자 </td> <td data-bbox="764 712 1342 804"> 건강의제 발굴, 주민자치회 건강복지분과, 주민돌봄 등 역할에 따른 보수 교육 진행 </td> </tr> </tbody> </table> <p>○ 건강리더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주민돌봄, 주민자치회, 건강반 활동 등 <p>○ 건강리더 결속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모임 진행, 봉사 및 일상적인 역할 제안 	구 분	대 상	내 용	기 초	조합원 및 지역주민, 건강반장 및 건강반원 등 30명 양성	자기건강관리, 케어매니지먼트 협업역량, 건강반 운영 등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2기수 설계·진행	심 화	기초과정 참여 및 수료자	건강의제 발굴, 주민자치회 건강복지분과, 주민돌봄 등 역할에 따른 보수 교육 진행
구 분	대 상	내 용								
기 초	조합원 및 지역주민, 건강반장 및 건강반원 등 30명 양성	자기건강관리, 케어매니지먼트 협업역량, 건강반 운영 등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2기수 설계·진행								
심 화	기초과정 참여 및 수료자	건강의제 발굴, 주민자치회 건강복지분과, 주민돌봄 등 역할에 따른 보수 교육 진행								
<p>마을 공동체</p>	<p>○ 법동마을축제, 대덕구마을넷 등 마을공동체 연대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축제 공동주관으로 건강자치 활동 - 공동체 연대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p>주민자치</p>	<p>○ 주민자치회 건강복지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및 대의원, 건강리더 및 건강반 구성원이 다양한 활동으로 적극 참여 조직 - 마을 건강의제 발굴 활동 									

② 2020년 건강반 세부 운영 계획

목적	수행 부서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이념과 가치를 확장하여 조합원과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소생활권 건강생활 공동체를 이룸</p>	조직국
사 업 개 요	
<p>○ 건강반 운영 개요</p> <p>-활동기간: 2020.05.01.~ 2020.12.31.</p> <p>-참여대상: 민들레의료사협 조합원,지역주민</p> <p>-필수조건: 기본 구성 5인이상(조합원참여비율 50%이상) / 기본 구성 5인 건강반 중복 참여 불가</p> <p>-모집규모: 건강반 30개(300명)</p> <p>-지원내용: 조합원 3인 참여 건강반: 40만원 조합원 4인 참여 건강반: 45만원 조합원 5인이상 참여 건강반: 50만원</p> <p>-사업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공고 및 접수</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심 사 및 최종선정</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교육 (건강리더 양성과정)</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활동 시작</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모니터링</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평가</div> </div> <p>-내용:월 2회 이상 목표에 알맞은 활동 계획 수립 실천 , 활동보고서 제출</p>	
기대효과	<p>-조합 활동에 조합원이 중심에 서고 관심과 참여 도출</p> <p>-건강자치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통 문제 해결</p> <p>-향후 조합 활동가 배출</p>
총사업비	-건강반 활동비 지원 1,500만원

③ 동네돌봄의 구체화를 위한 건강리더 활동 지원사업

목 적		수행 부서
돌봄이 필요한 조합원 및 지역주민을 건강리더가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활동과 맞춤형 건강증진활동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보다 건강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사 업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2020년 5월~12월 ▪ 대 상: 돌봄이 필요한 조합원 및 지역주민 ▪ 돌봄인력: 건강리더 6명 ▪ 활동내용: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방문하여 안부, 말벗, 외출 및 병원동행 등의 일상생활지원 활동과 IT를 활용하여 낙상과 치매를 예방하는 건강증진활동 ▪ 이용절차: ① 돌봄이 필요한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소개 ② 케어매니저가 사례회의를 통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관리 참여자의 집을 건강리더가 방문하여 주1회~2회(회/1시간) 활동 		
기대효과	지속적인 건강리더 돌봄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들레 동네돌봄의 구체화 실현	
총사업비	4,400,000원(민들레기부금)	

④ 민들레 돌봄상담창구 운영

목 적		수행 부서
조합원 및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과 보건의료, 영양, 주거 등의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하고 케어매니지먼트를 지원하여 민들레형 동네돌봄을 실현하고자 함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사 업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2020년 1월~12월 ▪ 대 상: 조합원 및 지역주민 ▪ 내 용: 복합적인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어려운 분에게 케어매니저가 상담을 통해 주요 욕구와 어려움을 파악하여 케어플랜을 수립,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용방법: ① 건강문제 및 돌봄문제로 어려움 갖고 있는 조합원 및 지역주민 소개 ② 케어매니저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 후, 케어플랜 수립, 서비스 연결 		
기대효과	이웃 및 가족에 돌봄과 건강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면 누구나 민들레 돌봄상담창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자원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민들레형 동네돌봄을 실현	
총사업비	3,000,000원(산자부 지원사업비)	

5 민들레 “조각” 운영

목 적		수행 부서
건강화폐 ‘조각’을 활용하여 건강자치력 향상 및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돌봄, 건강리더 활동 참여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처 조직국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지역사회의료센터
사 업 개 요		
<p>○ 건강화폐 ‘조각’ 운영 개요</p> <p>-지급 기간 : 2020.01.01. ~ 12.31.</p> <p>-참여 대상 : 민들레의료사협의 다양한 활동 참여자</p> <p>-지급 방법 : 활동 당 ‘조각’을 통장 수기 방식으로 기록</p> <p>-사 용 처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업소 이용, 두레약국, 좋은이웃, 대덕품앗이협동조합</p> <p>-지급기준 : 건강증진활동, 질병예방활동, 돌봄활동, 교육활동시</p> <p>-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2년간</p>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자치력 증진 -지역 돌봄 활동 확대 -치료 중심 건강 관리가 아닌 예방 활동 중심의 활동 전개 -지역사회 건강 증진 기여 	
총사업비	5,000,000원(기부금 활용)	

⑥ 민들레 대의원 자치회 구성

목 적	수행 부서
대의원으로서 조합 사업 참여와 조합 발전을 도모하는 자치기구의 틀을 확립함.	· 사무처 조직국
사 업 개 요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8기 대의원 110명 ○ 담당부서 : 사무처 조직국 ○ 대의원 자치모임 인적 구성 : 총 7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 2인 / 총무 : 1인 / 모임장 : 각 1인 총 4인 / 지원 : 조직국 - 정기 모임 : 월 1회 월례회 <p>□ 사업 내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조사 : 대의원 자치 활동을 위한 욕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20. 01. 29. ~ 30. (2일간) - 참여자 : 대의원 55명 ○ 대의원 욕구별 모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리'민' : 조합원 증가, 증좌, 스스로조합원 증가, 홍보 등 사업 참여 - 모이'민' : 건강반 참여 및 조직, 건강리더 활성화, 조합행사 참여 - 펼치'민' : 기획사업, 지역사회활동 참여 - 배우'민' : 교육, 조합 자원활용 사업 참여 ○ 대의원자치모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2020. 5월 중 - 대상 : 8기 대의원 - 시간 : 오전, 저녁 2개 과정 운영 - 내용 : 의료사협 역사 / 민들레 업무와 살림 / 대의원 역할과 활동 / 건강반, 건강리더 안내 수료 및 단합회 ○ 대의원 단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2020년 6월 - 내용 : 학습 수료식 이후 진행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원 역할 확대 : 총회성원, 건강반 참여, 건강리더 활동, 운영 참여, 의료기관 이용 등 ○ 대의원 성장 : 교육을 통한 조합의 역사, 현황, 비전 공유로 대의원 성장 촉진 ○ 지역사회 활동 확장 : 대의원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로 지역사회로의 민들레 확장

4-2 대외 위탁사업 수행을 통한 민들레 가치 실현 사업

① SW서비스개발사업 ICT실증사업 <확정>

수행 부서	위탁기관	수행 일정	사 업 명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	대전정보문화 산업진흥원	19. 12. ~ 20. 10. (11개월)	생활중심형 고령자 커뮤니티케어 통합 운영 솔루션 개발
사 업 개 요			
<p>○ 사업목표 전문가를 활용한 '건강요구진단 프로세스 도출 및 수립 과정' 평가 검증 수행</p> <p>○ 사업내용 (주)봄소프트- 고령자 건강요구진단시스템 개발 실증연구 -고령자 건강요구진단 간단테스트 알고리즘 분석 요약 보고 -고령자 건강요구진단 시스템 메뉴구조도 및 건강백과(가칭) 카테고리 분류 및 내용 작성</p>			

②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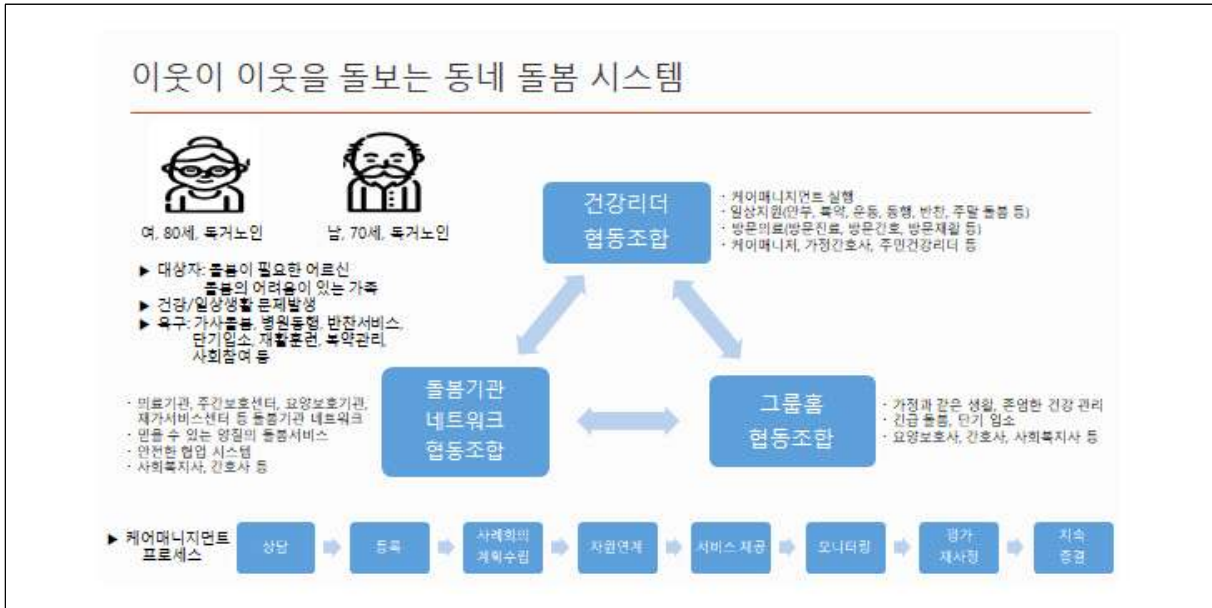
수행 부서	위탁기관	수행 일정	사 업 명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	보건복지부 (대덕구청)	사업선정일 ~ 20. 12	대덕구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돌봄서비스
사 업 개 요			
<p>○ 사업목적 대덕구형 동네돌봄 시범사업지역인 법1,2동을 중심으로, 돌봄사각지대 경증치매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돌봄서비스 제공</p> <p>○ 사업내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건강리더 파견 방문건강관리(인지기능강화, 낙상예방, 복약지도, 정서적교감)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대덕돌봄협동조합 : 영양보호사 파견 일상생활지원(병원이동, 외출동행, 청소, 집안정리 등) -건강먹거리지원서비스 / (유)행복한밥상 : 대상자별 건강상태에 맞춘 영양식 밑반찬 배달</p>			

③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확정>

수행 부서	위탁기관	수행 일정	사 업 명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	산업통상 자원부	20. 4. ~ 21. 12. (21개월)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공동 R&D(제목미정) -기업맞춤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비R&D(제목미정)
사 업 개 요			
<p>○ 사업목적</p> <p>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p> <p>○ 사업내용</p> <p>- (R&D) 커뮤니티케어 시스템과 주민공동체를 연계하는 시스템 개발 : 18~19년도 플랫폼 개발에서 주민참여기반 건강증진 커뮤니티 운영시스템 개발 :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탈시설화를 촉진·지원하는 시스템 개발</p> <p>- (비R&D) 커뮤니티케어와 지역화폐 플랫폼 간 연계 : 호혜소비 촉진과 관계시장 구축 : 의제별 혁신 네트워크 형성으로 융복합 솔루션 설계</p>			

④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확정>

수행 부서	위탁기관	수행 일정	사 업 명
사무처 조직팀	고용노동부	2020. 3. ~ 12.	주민이 주도하는 동네돌봄 협동조합 만들기
사 업 개 요			
<p>○ 사업목적</p> <p>마을주도 통합돌봄에 필요한 신규 및 틈새서비스 발굴을 통해 돌봄 사회적경제사업체 창업으로 마을일자리 창출과 민들레형 동네 돌봄 실현</p> <p>○ 사업목표</p> <p>돌봄서비스 사회적경제사업체 3개소 창업</p> <p>○ 사업내용</p> <p>커뮤니티케어 전문교육, 사회적경제사업체 설립 지원, 안정화 및 지역 정착 지원</p> <p>○ 창업 지원</p> <p>건강리더협동조합, 노인요양기관네트워크협동조합, 다기능통합케어협동조합</p>			



4-3 검진센터 확장 운영

① 검진센터 현황

- 현황
 - 우리 건물 2층에서 운영 중
 - 공간 면적 : 약 83㎡(약 25평)
 - 대장암 검진 및 채용검진, 운전면허 갱신 검진 등 다양한 건강검진 실시
- 현재의 어려움
 - 검진 수요 증가 대비 매출 확장의 한계점 도달
 - 대기 공간 미비로 이용객 만족도 저하
 - 기확보된 검진 협력 기관, 단체 등 소속직원 일시검진(5명 초과) 어려움

② 검진센터 확장의 필요성

- 검진 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
 - 검진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전개 중
 - 국가암검진사업 검진율 50%에 미달(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인근지역 상권 변동 예정(2020년 하반기)
 - 재건축 아파트, 경찰서, 국세청 등 반경 500m 내 위치
 - 대전형 경전철(트램) 트램 경유지
- 민들레건강검진 연도별 매출 실적

구분	2018	2017	2016	2015	2014
매출액 (단위:백만원)	450	399	361	304	224
전년 대비 증가율(%)	13	11	19	36	-

- 내과에 위치한 영유아검진실을 검진센터로 통합 운영하여 다소 비좁은 내과의원 활용 공간 확보
 - 만성질환자 관리업무 수행 공간 확보

③ 추진 계획

- 예상 소요 비용
 - 인테리어 : 약 1억원
 - 의료장비 추가 구입 : 약 5천만원
- 예상 공사기간
 - 2층(현 검진센터) 부분 공사 : 1주 소요

- 3층(현 회의실) : 4주 소요

○ 추진 일정

- 2020. 3. 26(목) 정기 이사회 승인
- 세부 일정

4월	○ 기획회의단 구성 ○ 공간 구성 기획회의 운영	
5월	○ 시공사 선정 ○ 기획회의 요구안 협의 ○ 설계 및 시공비 확정	
6월	○ 착공	
7월	○ 완공 ○ 시범 운영	
8월	○ 24일, 확장 개소식(창립기념일)	○ 개소식 방안 수립

○ 시공사 선정

- 2개업체 견적을 기초로
- 이사회에서 확정 예정

○ 공사 착안사항

- ① 계단 환경 개선
- ② 화장실 환경 개선(3개소)
- ③ 환자 대기실 및 탈의실 확보
- ④ 문진표 작성 공간 확보
- ⑤ 2층, 3층 진료실 설치
- ⑥ 3층 내부 화장실 설치
- ⑦ 내시경실 확장(위, 대장 구분)
- ⑧ 내시경실 케스터 장차 베드를 이용 회복실 이송 동선 확보
- ⑨ 의원 확장을 위한 영유아검진실 이전
- ⑩ 기타 : 방음, 냉난방 등

④ 기대 효과

- 건강검진을 통한 조합의 가치 추구인 예방 보건 활동을 적극적 확대
- 수입과 연계된 조합의 고유사업 실행으로 재정 안정성 기여
- 외부 단체와 검진 협약으로 지역사회 연대 강화 및 지역사회 건강 기여
- 이용 만족도 증가에 따른 조합의 신뢰감 확대

4-4 조합 조직운영 사업

① 재정 건전성 확보

- 안정적인 자금운용
 - 부채상환 :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부채상환
- 수립 예산에 따른 집행
- 매출 증대 방안
- 비용절감 방안 구축

② 효율적 공간 활용

- 한의원 건물 3층 임대 종료에 따른 사무공간 통합
-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
- 둔산지점 완전 철수
- 검진센터 확장

③ 정부 지원금 수급

- 인건비 지원사업 : 일자리창출, 두드림, 청년일자리체험 등
- 고용안정 지원금 등

④ 직원 역량강화

- 서비스제공 질 개선
- 전직원 워크샵(1박2일)
- 직원 교육
 - 소양교육 및
 - 정서 함양 위탁 교육
 - ① 부서별 MBTI 상담
 - ② 직원 AVP 교육
- 전직원 법정교육 이수

⑤ 조합 운영의 체계화

- 제규정 정비(제정, 개정, 폐지 등)
- 직원과 경영진의 의사소통 체계화
 - 전체직원 회의구조 계승 발전
 - 팀장단 회의
- 법제도 준수
 - 의료기관 자율점검 매 분기 시행(연 4회)

ii 2020년 단위 부서별 사업계획

1. 센터별 조직 현황

2. 단위 부서별 사업계획

1. 센터별 조직 현황

1-1 일차의료센터

□ 센터장 : 허애령 원장

○ 간호부장 : 이지명

□ 구성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검진센터

구분		현원	비고
센터장		1명	
간호부장		1명	검진센터 팀장 겸직
의원	원장	3명	센터장 겸직
	팀장(간호조무사)	1명	
	가정전문간호사	-	
	임상병리사	1명	
	간호조무사	4명	
검진센터	팀장	-	간호부장 겸직
	간호사	1명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간호조무사	3명	
한의원	팀장(간호조무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치과의원	팀장(치과위생사)	1명	
	치과위생사	2명	
계		23명	

□ 분담 업무

- 의료기관별 진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별 정부 시범사업 수행
- 구매 및 일반 사무 행정
- 조합원·출자금 관련
- 조합 활동 참여

1-2 지역사회의료센터

□ 센터장 : 박지영 원장

- 재가의료팀장 : 이경민

□ 구성

구분	현원	비고
센터장	1명	원장 겸직
의사	3명 - - 1명	원장 겸직
가정전문간호사		육아휴직 중
간호사		치과의원 겸직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계	5명	

□ 분담 업무

-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방문 재활 등 지역사회 대상자 재활치료 및 자원 연계
- 만성질환 관리, 장애인주치의 사업 및 기타 사업 수행
- 이와 관련한 교육서비스 제공
- 조합 활동 참여

1-3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센터장 : 국현정

□ 구성

구분	현원	비고
센터장	1명	
케어매니저	4명	
계	5명	

□ 분담 업무

- 조합원, 주민 <돌봄상담창구> 운영
- 건강증진활동 지역확대(덕암동) 및 사례건강반 운영
- 대덕구 동네돌봄(지역돌봄네트워크 구성, 돌봄서비스 확충)
- 케어매니지먼트 운영(자원조사DB구축, 건강리더육성사업, '조각은행'운영)
- 서비스품질관리(만족도조사)
- 외부재원 사업 수탁 운영

1-4 사무처

□ 처장 : 한영수

○ 사무팀장 : 전경화 / 조직국장 : 이자우, 조직팀장 : 남은순 / 홍보협력팀장 : 박현주

□ 구성

구분	현원	비고
사무처장	1명	
사무팀장 총무회계 등 팀원	1명 3명	
조직국장 조직팀장 팀원	1명 1명 2명	팀원 1명은 일자리 지원 사업 인력임
홍보협력팀장 팀원	1명 1명	팀원 1명은 일자리 지원 사업 인력임
일반기능	1명	
계	12명	

□ 분담 업무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들레 가치 추구를 위한 활동 · 대외 정책사업 연계 및 연대 활동 · 조합 운영 유지 및 활동 지원 · 조합원 및 출자금 관리 · 조합 활동 참여
사 무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노무 · 회계, 경리 · 직원 행사 및 교육 · 계약·구매·시설 유지 관리 · 의료기관 행정지원 · 사회성과 지표 관리 및 경영공시 · 기부금 운영 · 대내·외 감사 대응 · 개인정보 보호
조 직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통계, 활동, 교육, 행사의 기획 및 지원 · 조합원 대상 건강반, 건강리더 양성 및 육성
홍보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들레 홍보 활동 · 대외협력 및 협약

2. 단위 부서별 사업계획

2-1 의원

□ 미션 및 비전

미션 :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아플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민들레)

비전 : 지역의료센터를 활성화해서(장애인주치의사업,만성질환관리사업,왕진사업) 지역주민에게 한걸음더 다가가기

□ 2020년도 세부 사업 계획

	중분류	소분류	달성목표	내용 및 방법	변화or위험요소
의 료 활 동	비용감소	1회용품 줄이기. 재고관리	매출대비 재고율 저감	조금씩 구매	재고부족으로 인한 진료로딩
	의료기기관리	산소포화도, 자동혈압기	응급환자 빠른 대처	응급환자 대처능력 기르기	
	의료서비스질 개선	대기실 모니터 설치 만성질환자관리 공기청정기 설치	만족한 진료	대기시간에 만성질환관리교 육영상 방영하기. 공기청정기 구입하기	대기시간을 줄인다. 쾌적한 환경
	자주 진료받는 환자(조합원) 관리	조합원들과 교류 조합원관리(가족관계도 가능하면 비트에 기록)	특이사항 원장님께 메시 지함으로 전송.	친밀한 교류와 친절로 조합원 가족에 대해서도 신 경을 쓴다.	조합원 사생활 정보에 대 한 노출 우려
	예방진료관리	만성질환대상자 확대	만성질환예방관리	미등록 환자 권유	식생활개선 정보도움

	지역사회연대	장주사, 왕진환자 발굴	예방관리	등록하지않은 환자 권유	소외계층관심 증대
	기타(법률적,의료행위등)	대리처방	환자의 내원	가족관계증명서등 서류구비 후 대리처방	본인내원 유도하여 지속적 진료관리
	매출목표	작년대비 10%증가	만성질환,장주사,왕진	발굴로 사업확대	지역사회 연대 확대
가 치 활 동	조합원조직	조합가입	30건	홍보영상에 조합가입 홍보영상 넣기	안내책자 홍보
		스스로조합원	5건	스마트주치의 안내	조직팀과 연계관리
	조합활동참여	조합관련행사 참여	90%	사전 공지하여 조율	근로시간 직원참여 어려움
	환자권리장전 준수	환자의결정권 사생활보호	환자 결정권을 높인다	충분히 설명 후 환자본인이 선택하게 함.	대기시간 길어지는 문제
	학습과 성장	건강리더.건강반교육	교육 이수	적극적 참여 유도	업무 로딩

2-2 검진센터

□ 미션 및 비전

미션 : 건강을 건강할 때 지켜주는 파수꾼!!!

비전 :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하고자 할 때, 민들레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기.

□ 2020년도 세부 사업 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내용 및 방법	변화or위험요소	달성목표
의료활동	비용감소	-일회용/전기료용줄이기, -원격판독으로 판독료감소 -영상의비전속영상의 수수료절감	-개인컵사용과 수건사용 -업무이외시간 전기끄기 -허원장님 수수료증취득	소독과 위생에대한 민원발생 -수수료 지출절감	사업소지출비용감소
	의료기기관리	-원심분리기 -내시경 세척기 -산소포화도 구입	철저한 가격비교후 구입	비용 발생	한달에 검진자를 30명이상 확보하기
	의료서비스 질 개선	-직원 칭찬 스티커 만들기 -검진이용후 소곤소곤 개선함	-검진하신분들이 개선사항, 칭찬스티커 부착하기	과도한 개선요구로 직원 사기저하	전직원 칭찬받기 0%의 개선사항 만들기
	자주진료 받는 환자(조합원)관리	검진단골 조합원확보	암검진 3회(6년연속)이상 검진받으러 오시는분 들에게 한방소화제 증정하기	선택적인 증정에 대한 불만,이의제기	한의원 홍보 및 검진재방문을 증가
	예방진료관리	대장내시경/초음파검사 홍보	검진예약 및 문의시 대장내시경,초음파의 필요성을 인시시키기	검사권유 부담감 느낄수 있음	대장내시경 연 450건
	지역사회연대	지역사회의료센터,주민참여건강	지역사회의료센터,주민참여	장애인 검진시 1:1케어	건강반/장애인 검진

		증진센터 연계	건강증진센터 연계하여 검진자 확보하기	인력부족	확보
	기타(법률적, 의료행위 등)	개인정보 관리철저 원칙준수	검진결과, 채용, CD 등 개인정보누출 방지위해 관리대장비치, 서명받기	번거로움으로 환자 및 대리인(보호자) 컴플레인 발생	개인정보 철저하게 관리
	매출목표	-작년대비 월3%상승 -1단계에 홍보 스티커부착	대장내시경 건수늘리기 평일대장 3건, 토요일 1건 1단지 각동 거울에 만들레 홍보스티커 부착	의료진의 과로로 피로도 상승 비용발생	작년대비 년30%상승 조합지원
가 치 활 동	조합원조직	조합원 가입	검진 만족도 높은 환자들에게 권유	조합에 관한 설명하기 안내자료확보	월2명, 년30명
		스스로 조합비가입	기존 조합원중 스조 미가입자에게 권유		월1명, 년15명
	조합 활동 참여	조합행사참여	미리공지, 사전조율하기	근무시간외 직원참여 어려움	100%참여
	환자권리장전 준수	환자의 결정할 권리	검진시 추가검사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기	대기시간이 길어짐	환자만족도 증가로 검진인원 상승
	학습과 성장	-건강리더, 건강반 -질환, 검사관련 교육기회	-건강리더 이수하지 못한 직원 참여하기 -분기별 자체교육이나 필요시 원장님 지원	-업무로딩 -휴식시간활용으로피로도 상승	-모든 직원 건강리더 이수하기 -관련질환에 대한 이해도 상승

2-3 한의원

□ 미션 및 비전

미션 : 정성을 다하는 민들레한의원
 비전 : 수작업으로 장인정신을 담아 비보험 상품제작, 내원하신 환자 만족도 상승

□ 2020년도 세부 사업 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달성목표	내용 및 방법	변화or위험요소
의료 활동	비용감소	에너지 절약	전기세 절감하기	실내온도 상승하면 온풍기 끄기	공기질 청정하게 유지
	의료기기관리	수치료기,오디오기기	수치료기 수온관리	수치료기 모터,오디오기 교체	자금 마련
	의료서비스질 개선	밝은 이미지 만들기	밝은 표정, 목소리로 인사하기	밝은 목소리로 웃으며 대화	분위기가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짐
	자주 진료받는 환자(조합원) 관리	‘약환 해피콜’ 침환이신 분은 이전 치료에 대한 반응 묻기	해피콜 명단 작성하여 관리함. 자주 오시는 분과 친분 유도, 이전 치료에 대한 반응 확인	한약복용 후 일주일 지나 전화로 반응여부나 불편사항 여쭙보고 기록하기. 이전 환부기록보고 어떠신지 여쭙보기.	한약 복용시 불편사항 들을 수 있고 환자분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음
	예방진료관리	만성질환관리	당뇨,고혈압,중풍 등 고위험군 환자관리	환자상담을 통한 침치료 및 탕약처방	탕약부작용 발생우려
	지역사회연대	방문진료 참여	방문진료 프로그램수행	침치료, 약물치료	밀착 관리 어려움

	기타 (법률적,의료행위등)	폐기물 관리	위생적인 폐기물 관리	폐기물 시기에 맞춰 배출 배출장소 위생관리	폐기물 위험요소 제거
	매출목표	월2500만원 매출	연3억원 매출	비보험의 홍보와 안내로 매출 증대	경기침체에 따른 비급여수 요의 감소
가 치 활 동	조합원 조직	조합원 가입	월2명, 연24명 신규가입	비보험 출시 가입유도	현장할인이 아닌것에 대한 가입률 저조
		스스로조합비조합원 가입	연 10명	조합가입하신 분들께 권유	설명들을 시간이 없다고 하심
	조합활동참여	조합관련 행사 참여	100%조합활동 참여	미리 공유해서 일정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근로시간 외의 활동참여 어려움
	환자권리장전 준수	알권리 준수	환자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함	데스크접수, 수납, 침구실물리 치료, 진료시 충분한 설명필 요	의사소통, 전달 오류발생
	학습과 성장	건강리더, 건강반 교육	전직원 참여	교육 공고시 적극 참여	이미 수료한 직원이 많음

2-4 치과의원

□ 미션 및 비전

미션 : 초심을 지키자! 과잉진료보다는 적정진료를 함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진료를 하자!

비전 : 합법적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적정진료를 통하여 환자로 하여금 내 치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심 치과로의 이미지 각인

□ 2020년도 세부 사업 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달성목표	내용 및 방법	변화or위험요소
의료환만	비용감소	재고자산 관리	매출대비 재고율 감소	유통기간관리 조금씩 구입	재고부족으로 진료로딩
	의료기기관리	구강카메라, 컴퓨터교체	예산편성	예산책정	자금마련
	의료서비스질 개선	밝은 이미지 만들기	인사 잘하기	눈을 보고 웃으며 대화한다.	눈을 보고 공감하기
	자주 진료받는 환자(조합원) 관리	리콜 검색	리콜 검색	예약문자나 리콜 문자전송	형평성 문제
	예방진료관리	스켈링, 정기검진	월 스켈링 100건 이상	진료시 스켈링 여부 묻기	진료권유 부담 느낄 수 있음
	지역사회연대	협약진료,단체 연계	협약단체 2곳 신규	학교검진, 협약단체진료	매출 증진 기존환자 대기시간 증가
	기타 (법률적,의료행위등)	의료폐기물관리 불법의료행위시술 안하기	체크리스트 만들기	의료폐기물관련법 살펴보기 의료행위기준안 확인하기	적용할 것을 함께 추려보 고 전직원이 숙지한다

	매출목표	월 4000만 원	연 4억8천만 원	재방문환자를 늘린다 정기검진을 홍보한다	서비스질을 개선한다
가 치 활 동	조합원조직	조합원가입	월2명 연24명	진료시 만족하는 분들에게 조합가입을 권한다	조합원 가입 권유 멘트를 준비한다
		스스로조합비 조합원 가입	월1명 연12명	조합가입시 호의적인 분들에 게 권해본다	스스로조합비 가입권유 위한 멘트 준비
	조합활동참여	조합관련 행사 참여	100% 참석	미리공지하고 사전조율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시간 외 직원참여 어려움
	환자권리장전 준수	환자의 알권리 (충분한 설명)	진료시 충분한 설명	진료실에서 진료끝난후 궁금 한 게 없는지 물어본다	대기시간 길어짐
	학습과 성장	건강리더,건강반교육	전직원 참여	교육공고시 적극참여	업무로딩

2-5 지역사회의료센터

□ 미션 및 비전

미션 :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건강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신뢰받는 방문기반 의료시스템 만들기

비전 :

- 1) 우리나라에서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의료 체계와 사례를 만든다.
- 2) 서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팀워크 만들고,
- 3) 지역사회의 건강자원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하며,
- 4) 올해 활동을 책, 논문 등 기록물로 남긴다.

□ 2020년도 세부 사업 계획 (지역사회의료센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달성목표	내용 및 방법	변화 or 위험요소
보건의료 서비스	예방진료 관리	장애인 주치의 사업 정기 진료 활성화	방문 대상자들에 정기적으로 방문 및 진료, 문자연락	대상자별로 분류하여, 내원하기 어려운 분들은 1년에 2회 방문진료, 정기적인 방문간호나 방문작업치료를 통해 건강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상황파악하고 대처한다	고령자, 거동 불편 환자는 스스로 약물관리에 어려움 예상.
		약물 관리 및 약물 줄이기	약물오남용 및 부작용줄이기	노인, 장애인에게 약물오남용 문제가 많음 - 약물을 제대로 복용할 수 있도록 정리, 필요시 약물 상자 제공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방문의료서비스 연관사업 (왕진, 가정간호, 장애인건강주치의, 방문재활 등)	여러 보건의료전문가가 협력하여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좋은 사례를 책이나 논문으로 발표한다.	왕진, 가정간호,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방문의료 모델 탐색 및 적용하면서 사례회의를 기록한다. 향후, 책으로 발간하거나 투고한다.	업무 로딩 증가

의료서비스질 향상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 (고혈압, 당뇨)	월1회 집단교육 통해 꾸준히 정보를 전달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키움 (1년 10회 3~12월)	월1회 집단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수가청구방법을 모색한다.	집단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 노력이 필요함 소규모 교육은 의사 또는 간호사만 가능하므로 제약있음.
		월2회 이상 온라인 연락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동기부여한다.	월2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및 수가 청구	수가청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고민이 필요함
	민들레만의 방문의료 특화사업1	연1회 대상자의 재활 및 구강건강 욕구를 파악한다.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와 협업하여, 대상자 목록에 체크한다.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함. 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진료를 빼고 나오기 힘들 수 있음.
		수시로 복지 욕구파악해서 관련 서비스와 연계한다.	건강과 관련된 여러 요구를 파악해서 필요시 지역사회 연계한다.	작업치료사가 사회복지사 자격도 같이 가지고 있으므로 연계할 수 있으나, 참센과의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음
	민들레만의 방문의료 특화사업2. "예쁜 발 프로젝트"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스스로 발관리를 하기 힘든 경우 발건강을 확인하고 관리함. 연관리 인원 20명 목표	방문의료시 발건강상태 점검 당뇨,무좀,내성발톱 등 해당 질환 관리 발톱 손질, 청결, 보습 대상자 발사진 촬영(날짜/이름) 관리 프로토콜 작성	당뇨발 관리 중 손상 가능
	고객관리	친근하고 신뢰할 만한 이미지 만들기	월 1회 대상자 상황점검(전화, 방문) 방문 전, 서비스제공 후 관리 전화 철저	대상자의 거절, 과도한 시간 소요로 업무부담이 증가할수 있음.
자주 진료받는 환자 (조합원) 관리	장애인 주치의 사업 대상자 중 조합원 명단 작성	장애인 주치의 사업 대상자 중 조합원 명단 작성	조합원들에게 지역사회의료센터 홍보 조합원 지역사회의료센터 대상자에게 생일 문자를 챙겨준다. -생일 전 방문 시 축하 노래 불러드리기	비조합원과의 형평성 문제 경제적 문제로 조합가입 힘든 경우

	비용감소	의료소모품 절약	매출 대비 비용 감소	물품구입은 의원 등 의료기관과 함께 구입해서 비용을 절약하고, 구입한 소모품은 아껴쓴다.	
		교통비 절감	매출 대비 비용 감소	근거리는 가능하면 도보이동, 장거리의 경우 이동동선을 잘 설계하도록 한다.	현재 개인차량을 이용한 방문차량으로 이용하고 있고, 유류비만 지원되고 있음.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미흡.
		통신비 절감	매출 대비 비용 감소	방문시 개인휴대폰으로 전화, 문자 등을 보내고 있음	개인정보유출, 개인비용부담 우려
	기타 (법률적, 의료 행위 등)	방문진료시 자부담 처리 문제	방문진료시 발생하는 환자 자부담금 납부 방법 모색	카드결제기 구매하여 현장결제, 또는 방문진료 전 미리 수납 등	카드 결제기 오작동
		보호자 대리처방 혹은 수액처방시 발생 가능한 문제	보호자 대리처방 혹은 수액 처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	대리처방의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챙길 것, 수액처치시 간호사가 꼭 관찰하도록 함.	환자 혹은 보호자의 컴플레인 -왜 안되냐 등
	매출목표	월1천만 원	연1억2천만 원	방문 진료 활성화를 통해 매출 달성 - 의사 방문 활성화 및 대상자 늘리기	의사의 진료시간 비우기에 따른 진료공백, 업무로딩 발생 방문 간호 증가에 따른 간호사 업무 증가
건강증진 및 보건예방 활동	보건예방 활동(의료서비스 보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고혈압, 당뇨)	월1회 집단 교육을 통해 꾸준히 정보를 전달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키운다	월1회 집단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수가 청구	집단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 노력이 필요함 간호사나 의사만 수가청구 가능하므로 전담직원 필요 수가청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고민 필요함
			월2회 이상 온라인 연락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동기부여를 한다.	월2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기 및 수가 청구	
	보건예방 활동	건강검진	해당년도 대상자의 검진률을 높인다	대상자 중 검진대상자에게 검진안내를 한다(장애인 대상자 목록 작성). 민들레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환자는 장애인검진친화기관으로 연계한다.	민들레 2층으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안내한다.

		예방접종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자들에게 독감 등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안내한다. 내원 어려운 환자는 방문하여 접종한다.	질병의 중증화를 예방하는 장 점 있으나, 비용부담, 면역력이 약한 환자는 주의 필요
		<금연>	흡연자들의 금연률을 높인다(예, 흡연량과 빈도)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만성 질환등록 대상자, 조합원, 장애인건강주치의들에게 월 2회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의원의 금연등록을 통해서 금연 약물 처방을 받도록 권유한다. 보건소의 금연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금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한다.	보건소와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절주, 금주>	음주자들이 건강한 술문화, 통제력을 갖을 수 있도록 한다.	대덕구중독통합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정보제공,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절주,금주 관련 건강반을 조직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속적인 지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쉽게 만들에 내기가 어려우므로, 당장의 변화보다는 지속성에 의의를 두고 접근한다.
		<생활체육>	장애인들이 교류하면서 즐겁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하여 주1회 민들레장애인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시립장애인체육재활원을 활용하여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 장애인들이 1년 3회 장애인체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공간 확보 및 장애인 참여 촉진을 위한 담당자 업무부담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참여기회를 만듦으로써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민들레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치매예방 및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어르신, 장애인들의 치매예방 및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한다.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만성질환교육에 치매에 대한 이해와 예방 교육을 제공한다.	공간 확보 및 담당자 업무부담.
		<행복상담소 참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체크 및 상담을 통해서, 민들레 의료사협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킨다.	법1동, 중리동주민센터, 중리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연 8회의 신체건강 상담 및 사례 회의를 진행한다.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있지만, 지역사회에 보건예방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
가치활동	조합원조직	조합원 가입	월 2명, 연 24명	방문 진료 대상자 및 장애인 주치의 대상자에게 조합가입을 권한다.	조합원가입위한 멘트를 준비해 본다

		스스로조합비 조합원가입	월 1명, 연 12명	조합가입시 호의적인 분들에게 권해본다.	스스로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파악하고 홍보
조합활동참여		조합관련 행사 참여	100% 참석	미리 공지하고 사전조율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외 활동으로 업무로딩 증가
		지역사회의료센터의 사업에 대해 홍보	필요시 조합원들 대상으로 교육 사업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 및 지역사회의 료센터가 왜 필요한지 홍보	교육 준비에 시간과 노력이 들 어감
환자권리장전 준수		환자의 알권리(충분한설명)	환자 및 가족들의 권익옹호	해당제도나 서비스에 대해 담당자가 숙지하고 알기 쉽게 설명, 동의를 구한다.	
학습과 성장		건강리더,건강반교육	전직원 참여	교육공지 시 적극참여	업무로딩 증가
		장애인 건강, 방문진료에 대해 공부	월1회 집중사례관리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키운다	월 1회 집중사례관리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키운다	담당 의사나 간호사 부재시 방문 수가 책정이 불가능함
		선진지 견학	방문의료 모델 선진지 방문	외부 지원사업 등에 응모해서 일본이나 이탈리아 영국 등 방문진료의 선진지들 자료 공부 및 방문 가능성 타진한다	노재팬운동여파. 자부담이나 조합지원금이 필요할 수 있음.
지역사회 및 관련단체와의 연대		보건소 재활협의체	보건소 재활협의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에 연 2회 이상 참여)	장애인대상 지역사회 연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보건소 재활협의체가 세워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민원 넣기	보건소 담당자의 소극적 태도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 발굴 및 건강을 위한 협약맺고 연계한다	지역사회연계기관 파악	참선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연계 가능한 기관들을 리스트업해 나갈것 - 특히 공공기관뿐 아니라 의료기관들도 파악할것	사립 기관들의 경우 이해 관계 문제 발생 가능-특히 병의원 의사와 접촉시 오해 여지있음
			연 8회 이상 지역 건강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민들레의 료사협의 건강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예, 행복상담소).	행복상담소 등 협력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검진, 만성질환관리, 장애인건강주치의 왕진 등의 서비스를 소개한다. 외부에서 의뢰가 오면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한다.	당장 수가와 연관된 활동을 할 수 없지만, 민들레 고유의 가치를 알리고, 사례 중심의 협력을 해나갈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기관을 2곳 이상 방문하여 장애인주치의 등록을 하도록 한다.	활동지원서비스 기관의 파악하고, 방문하여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를 설명한다. 등록 후 건강관리를 해드린다.	소외된 소규모시설의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혹시 다른 의원을 이용하고 있을 시에는 환자를 뺏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
		장애인입소 시설(그룹홈)을 2곳 이상 방문하여 장애인주치의등록을 하도록 한다.	대덕구 내의 소규모 장애인 입소시설 및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모여 사는 그룹홈 발굴을 통해 대상자 확보도 하고 건강 그룹으로 만든다,	상 동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들과 상호이해 및 협력의 계기를 만든다.	단체카톡방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한다. 연합해서 총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좋은 인력네트워크를 갖는 장점이 있으나, 연대회의 분담금과 매월 1회 야간 회의 참석 부담.
	사회적의료기관 연대회의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갖는 기관들과의 정보교류	단톡방에서의 정보교류, 총회 등에 참석	체제 및 제도, 선진 의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실시간 카톡정보는 담당자의 주의력에 영향을 준다.

2-6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미션 및 비전

미션 : 사람중심, 주민의 참여로 완성하는 동네돌봄

비전 : 주민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동네돌봄체계 구축 및 비즈니스모델 마련

□ 2020년도 세부 사업 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달성목표	내용 및 방법	변화or위험요소
건강증진활동	지역확대	덕암동 건강반조직 및 운영	건강반 2개이상	건강생활지원센터, 덕암동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조직 및 운영	법1,2동에서 지역기반이 확대됨에 따른 출장, 근로시간확대
		동네돌봄 공간활용 (보니파시오 요양병원)	케어카페 시범운영	대덕구 커뮤니티케어팀, 건강생활지원센터, 덕암동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돌봄상담과 사랑방 모임으로 운영	케어카페 운영비용 및 담당자 선정
	사례건강반운영	만성질환,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반 운영	3개이상운영	기존 운영하고 있는 건강취약건강반을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반장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역량강화필요
대덕구 동네돌봄	지역돌봄네트워크	지역사례회의 및 간담회 참석	10회이상	법1,2동 사례회의 참석 및 유관기관 사례회의, 간담회참석	사례관리 case 증가에 따른 업무로딩
		지역케어회의참석	5회이상	대덕구 동네돌봄 자원 및 시스템마련을 위한 회의참석	참선의 주도적 역할기대
	돌봄서비스확충	돌봄사각지대 지원서비스 확충	자원발굴 및 개발	돌봄사각지대 대상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 제안 및 운영	업무증가에 따른 업무로딩
케어매니저먼트 운영	상담관리모델링사업	조합원 및 주민상담창구	20개이상	돌봄, 건강관련 문제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정확한 정보제공 필요
		사례관리	35개이상	집중/정기사례로 사회환경평가를 통한 돌봄케어플랜수립, 지원계획마련	케어매니저 역량강화필요
		케어매니저 역량강화교육참여	5회이상	사례관리, 자원활용방법, 장애 및 질환 이해교육 참석	업무로딩

		서비스품질관리	만족도조사 25사례이상	사례관리 종결 후 만족도조사를 통한 서비스품질관리 대안마련	만족도조사 방법 및 설문 에 대한 참여자 피로감
	자원 조사 DB 구축	제도, 정책, 서비스자원 리스 트 업	영역별 주기적업데이트	돌봄, 건강문제와 관련된 자원조사 DB구축	영역별 자원조사 및 정리
	건강리더육성 사업	'편편사업'확대 운영	참여자 20명이상 지원	건강리더가 방문하여 기존 낙상예방에 서 치매인지 강화훈련으로 확대하여 서비스 제공	건강리더 역량강화 및 필요에 대한 인식공유
	'조각'확대운 영	'조각'발행 및 사용관리	주기적업데이트	기존 '조각'발행 관리에서 사용내용 관리	'조각'발행 및 사용근거마련 및 재정비
		'조각'사용처 확대 (참여자들의 '호혜')	돌봄서비스 시범운영	조각사용처 확대 및 참여자들끼리 서 로 돌보는 '호혜'확대	돌봄활동 내용 기준마련
가치 활동	조합원조직	조합원가입	25명이상	지역주민에게 민들레활동을 소개하면 서 가입권유	조합원 가입에 대한 권유로 부담을 갖거나 오해가 있을 수 있음.
		스스로조합비가입	10명이상	민들레활동과 가치에 대한 소개 후 가 입권유	스스로조합 가입에 대한 권유 로 부담을 갖거나 오해가 있 을 수 있음.
	조합활동참여	조합관련 행사 참여	80%이상 참석	조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최대한 일정 조율하여 참석	업무로딩
	학습과 성장	건강리더양성교육참여	신규직원 참석	조합에 대한 이해를 위한 건강리더교 육참석	업무로딩
	조합원관리	사업참여조합원관리	사업참여 조합원여부리스 트 정리	참선 사업참여시 기본정보파악시 조합 원 여부 파악	조합원 가입에 대한 권유로 부담을 갖거나 오해가 있을 수 있음.
	상담창구운영	조합원돌봄상담창구운영	조합원,대의원 돌봄상담	대의원에게 전담케어매니저를 매칭하 여 돌봄문제 상담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대상에 대한 상담 및 자원조사 필요
신규 사업	(산업통상자 원부)20년 사 회적경제혁신 성장사업	R&D, 비R&D 과제	선정과제 성과목표	(R&D) 주민참여 건강증진커뮤니티앱 개발 (비R&D) 만성질환 건강반 관리	프로젝트사업 성과 중심 업무 진행
	(대전정보문 화 산업 진흥 원)생활중심 형 고령자커 뮤니티케어 통합솔루션 개발	R&D 과제	선정과제 성과목표	(주)봄소프트-고령자 건강요구진단시스템 개발 실증 연구	프로젝트사업 성과 중심 업무 진행

2-7 사무처 사무팀

□ 미션 및 비전

<p>미션 :</p> <p>1)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올바른 경영판단을 지원한다</p> <p>2)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민들레의 비전을 연결한다.</p> <p>비전 :</p> <p>1) 업무시스템을 보완,점검한다 - 포스 업무매뉴얼 제작 / 예산관리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한다 - 부서별예산대대비 결과공유</p> <p>2) 비전을 나누는 장을 마련한다 - 전직원 워크숍 1박2일 / 판단 없이 듣고 동료들을 존중한다</p>

□ 2020년도 세부 사업 계획

대분류	중분류	달성목표	내용 및 방법	변화or위험요소
총무	시설관리	빠른해결로 불편함 최소화 안전한 민들레 만들기	- 전기,배관등 시설유지보수 - 인터넷,전산 유지보수 - PC 프린트 등 비품관리 - 소방안전관리 점검	- 장비의 노후화
	경영공시	정확한 데이터 공시	- 정확한 정보 신고 - 기한내 작성 및 신고	
	행정지원	안정적인 운영	- 의료기관 변동사항 적기 신고 - 의무가입보험 명단작성 및 관리 - 포스 문제점 해결 및 업데이트 - 우편물 관리 및 메일백업 - 의료기기관리대장 작성	- 팀장회의 시 의견취합 - 상시 문제점 피드백받기
인사 노무	입퇴사·근태관리	누락없이 체계적 관리	- 근로계약서 구비 - 연차(개인별내역관리,사용독려)	- 근로상황부 부서별 -> 개인별관리로 변경

	퇴직연금	퇴직연금 월별 불입	- 퇴직연금 매월 적립	- 퇴직금 불입으로 인한 현금유동의 어려움
	교육·워크샵	- 내부결속력 강화 및 확산 - 전원 수료 및 참석	- 보수교육 명단작성 및 관리 - 법정 의무교육 진행 - 연 1회 전직원 워크숍 - 직원 역량강화 교육 - 팀별 결속력 강화 시간	- 법정 의무교육 전직원 수료 - 1박2일 전직원 워크숍 참석을 위해 직원 의견반영 및 미리 공지 - 팀별 교육진행 - 반복된 교육
	노사협의회	근로만족도 확보 및 경영 안정성 도모	연4회 회의 진행	
	인건비지원금	조합 운영비 재원 확보	-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 일자리창출지원금 - 두드림지원금	- 기한내 신청서 제출 - 새로운 지원사업 발굴 (내일채움공제등)
회계	수입	매월 정확한 매출집계	- 수입결의서 작성(POS연동) - 미수금 월별 관리 및 회계반영 - 차입관리 및 상환스케줄 관리	- 수입결의서 틀 마련 및 의료기관 교육 - POS 미수금 관리 업데이트 - 차입상환표 관리
	지출	예산 내 지출집행	- 예산대비 지출 관리 - 현금지출관리대장 - 재고조사의 정확도	- 월별 예산대비 결산 작성 - 예산대비 결산 각 팀 분기별 공유 - 재고조사실사 부서별 연2회 이상

2-7 사무처 조직국

□ 미션 및 비전

미션 :

민들레의료사협 대의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합원과 소통·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지역사회 연대와 사업 확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자치력을 향상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동네돌봄의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비전 :

- 1) 대의원 자치운영체계 구성 및 활동 기반 구축
- 2) 동네돌봄 사회적경제조직 3개소 이상 설립(그룹홈, 건강리더, 돌봄기관네트워크 협동조합)
- 3) 지역사회 주민조직 및 단체와 연대 활동(지역 행사, 주민자치회 등)

□ 2020년도 세부 사업 계획

대분류	중분류	달성목표	내용 및 방법	변화or위험요소
조합원	신입조합원	신입조합원 교육	- 반기별 1회 총2회 - 민들레의료사협에 대한 이해 - 사업소 라운딩 - 홍보 안내	
	대의원	대의원 활동·성장	- 대의원 새싹교육 상반기 1회 - 자치회 구성 - 활동 계획, 예산 수립, 집행	- 실질적인 참여와 역할 가능성
	건강반	30개, 300명 조직·운영	- 대의원, 조합원 중심의 건강반 - 건강욕구·목표수립 초기상담 진행 - 건강증진 활동 자원 연계 - 활동 촉진 및 모니터링	- 조합원 참여율 기준에 따른 초기조직 어려움 - 다양한 건강자원 필요
	건강리더	30명 양성	- 양성과정 2기수 설계·진행 - 건강반, 주민자치회, 돌봄활동 독려 - 정기모임	- 동네돌봄 기획사업 과정과 중복 가능성

주민조직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연대 활동	- 법동마을축제, 공동체네트워크 활동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활동	- 조합원 및 대의원, 건강반원의 주민자치회 활동 참여 조직 - 마을건강의제 발굴 활동	- 대덕구 및 타구의 주민자치회 정보 파악 -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충분한 홍보와 안내
기획사업	동네돌봄	민들레형 동네돌봄 거점 확대	- 동네돌봄 협동조합 3개소 이상 창업 인큐베이팅 - 대덕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	- 핵심 주민주체 육성 - 비즈니스모델 발굴 - 사업운영의 지속가능성

□ 기대효과

- 대의원 운영위원회 기틀 마련을 통한 조합원 참여·활동 역량 강화
- 건강리더, 건강반 조직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자치력 향상
- 동네돌봄 사회적경제조직 형성을 통한 주민참여 서비스와 마을일자리 마련
-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마을건강의제 발굴·실현
- 조합원 증가, 조합비 증좌, 스스로조합비 상승

2-8 사무처 홍보협력팀

□ 미션 및 비전

미션 :

- 1) 민들레 홍보매체를 관리, 개발하여 조합 활동을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린다.
- 2) 대외협력 창구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조합의 연대·협력의 가치를 실현한다.
- 3) 조합활동과 건강활동에 대하여 지역화폐 두루와 민들레화폐 조각을 지급,관리하여 건강공동체 활동을 독려한다.

비전 :

- 1) 온-오프라인 정기간행물을 안정적으로 격월 발행하고, sns노출과 언론보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 2)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건강과 의료복지 니즈를 각 부서로 연결해주고, 대학·기업·시민사회 등과 상호 교류한다.
- 3) 임,직원의 활동에 두루를 꾸준히 지급하고, 건강활동에 대한 조각지급을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 2020년도 세부 사업 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달성목표	내용 및 방법	변화or위험요소	변화촉진방법 or 위험대비방법
홍보 활동	정기간행물	종이소식지	년6회 정기 발행	-격월 홀수달 발행 -16면 4도 500부 인쇄 -현 지면구성 유지	-조합원수 대비 적은 인쇄부수 -소규모우편발송 -조합행사,소개시 활용	-실구독자 조사 (어르신조합원 배려) -모바일소식지로 소규모 발 행부수 보완.
		모바일소식지	년8회 발행, 구독자수 증대	-년8회 발행 -스토리센드 서비스 활용	-구독자수 100% 확대 (260명->500명)	-신규조합원 필수가입, 지 역사회 홍보하여 구독자수 확대함.
	온라인 매체	홈페이지	전체 리뉴얼	-현 홈페이지 전체개편 -새 디자인, 모바일연동형으로 제작.	-새로운 디자인 -조합원관리 편리성 확보 -모바일접근성, 공지기능강화	-홈피 리뉴얼팀 구성

	카톡채널	스마트주치의채널::스스로조합원가입자수 50%확대	-월1회 스마트주치의 건강상식 발행. -신규후원자 필수 가입요청	조합원카톡 전용 스마트폰 구입방안	-조직팀과 연계하여 조합원 관리용으로 스마트폰 활용
		모바일소식지채널: 조합원 가입자수 100%확대	-년8회 모바일소식지 발송 -기타 조합 알림사항 발송		
	SNS	밴드,페북 관리	-조합원밴드1개, 직원밴드1개관리 -의료생협 페북에 의료사협페이지 생성하여 활용중.	-조합원 밴드 가입의 한계(밴드 활용 정체됨) -페북 페이지의 한계(전달률 떨어짐)	-현상유지할것인가 고민
조합, 의료기관 홍보물	브로셔, 웹자보 등	-민들레통합소개브로셔 1종 리뉴얼 -상시 조합홍보물 제작	-작년 제작한 민들레통합소개브로셔 소진에 따른 추가제작 -행사 등 수시발생하는 공지에 대한 웹자보 발행 -부서별 필요 인쇄물 제작	-변경사항 반영하여 제작 -조합원 및 주민교육, 건강반모임, 외부견학시 활용.	
	영상물 제작	-조합활동 영상물 제작 -의료기관용 영상물 제작	-활동홍보용 영상물 -기록용 영상물 -의료기관 대기실용 영상물 -만성질환관리교육용 영상	-유튜브 활용방안 모색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콘텐츠 개발 토대 마련	-참선, 조직팀 연계
	문자 알림	-필요시 조합원에 공지 문자 발송	-조합원 공지사항 발송 -카톡채널 유입을 위한 발송	조직팀과 협력하여 조합원 연락처 변경정보 업데이트	
언론홍보	보도자료 발행	-월1회 보도자료 발행	-상시 소식담은 보도자료	-기자,언론사 연락처 업데이트	
	취재협력	-언론 대응 청구역할	-민들레 성격에 맞는 교양프로그램 섭외, 방송용 콘텐츠 개발		

대외 협력 활동	지역사회 연대	사회적경제 영역 협력	연대사업 진행	-대덕푸드플랜네트워크 활동		
		기업 및 대학, 공공기관 협 력	대외협력, 업무협약			
	현안 협력대응	시민사회연대	주요현안 발생시 공 동 대응	-핵안전 사안 연대활동 -기타 현안 대응 및 연대		
지역 화폐 관리	한밭레츠 두루	이사, 조합원	이사회 참석시 지급 조합원소모임 지급	-이사회 참석 이사 2만두루지급 -조합원소모임활동시 2만두루 지급		
		민들레 직원	-월급여 지급 -회의, 사참여 독려 지급	-전직원 월급여 3만두루 지급 -회의, 행사참여시 5천두루 지급 -의료기관 점심시간지킴이 5천두루 지급		
	민들레 화폐 조각	조합원, 주민 건강활동 격 려	-건강반, 건강리더 활동에 대하여 500 만 조각 지급목표	-건강반 300만 조각 -건강리더 100만 조각 -사례관리 100만 조각	-민들레 건강박스 개발 -품앗이 먹거리 연계 패키지 개 발	-조직팀 및 참선 어매니저 활동과 연계

iii 2020년 사업 예산

1. 2020 예산수립 기초
2. 예산 총칙
3. 총예산 흐름도
4. 자본예산
5. 단위부서별 2019년도 결산대비 예산

1. 2020년도 예산 수립 기초

최근 3년간 연속적인 흑자경영을 토대로, 2020년도는 코로나-19사태에 따라 매출을 2019년도 대비(둔산 치과 매출액 미반영분) 약 7% 상향 편성하였고, 지속적인 흑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용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초래되는 매출 감소폭과 비용 증가에 따른 예측과 검진센터 확장에 따른 공사기간 중의 영업손실 또한 예측하기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예측이 반영된 수립 예산이 어느 정도 적중되는지가 2020년도 및 4년 연속 흑자의 갈림길이라고 판단된다.

2020년 자본예산은 신입조합원 202세대 가입 목표에 따른 출자금과 조합원 증좌운동을 통해 1억원 조성과 둔산지점 임차보증금 반환금 1억원으로 검진센터 확장, 집기 비품교체, 의료장비 구입 등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자산 운영을 하고자 한다.

수지예산 사업수입은 2,677,400,000원으로 전년 2019년도 매출액 2,643,770,424원과 비슷한 편성으로 보여지나, 2019년도 둔산치과 6개월 매출액을 제외한 현재의 의료기관 2019년도 매출액 2,495,711,884원 대비 약7%(약 1억 8천만원) 상향 수립하였다. 그 근거는 건보수가 인상분 및 지역 사회의료팀과 의원의 협업으로 왕진사업, 장애인주치의, 가정간호 사업의 확대에 의한 매출 신장이 기대되는 바이다. 또한 안정적인 치과 운영으로 전년 대비 약 2,000만원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며, 한의원의 경우 사회적인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2019년 실적보다 약 1,000만원 적은 예산을 편성하였다. 사업외 수익으로는 2020년도 흑자 유지에 절대적인 항목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고용안정장려금(모성보호), 대전형일자리드림사업 등 정부 지원금 1억2천만원 가량 반영하였고, 직원 및 조합원의 목적 기부금(2020년도 운영비 기부) 약 1,000만원을 반영 수립하였다.

수지예산 지출부는 총 2,817,763,759원으로 편성하여 2019년 총 지출액 2,739,131,419원 보다 약 7,863만원 가량인 2.8% 증가된 예산을 수립하였다. 주요 사항으로 검진센터 확장 및 시설과 의료기기 구입이 있으며, 직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조합원 및 대의원 활동 강화가 있다.

세부적으로,

첫 번째, 건강검진센터 확장에 따라 시설마련 및 의료기기 구입으로 감가상각이 29,258,526원이 증가되었으며, 한의원건물 3층과 둔산민들레 철거 비용 21,000,000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두 번째, 프로젝트 사업비에 의존한 단기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인건비가 상승되었으나,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19년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한 마을주도 통합돌봄 모델을 2020년에도 '19년도의 사업기조를 이어받아 민들레형 동네돌봄을 만들기 위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 편성이었다.

마지막으로, '20년도에는 기초조직을 강화하여 조합원 및 대의원 활동, 건강반 건강리더를 확산시키는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민들레의 사업 활동을 잘 표현 할 수 있도록 홍보 사업비도 증액 편성하였다.

수입부와 지출부의 편성 예산 결과 2020년도 당기 손익을 9,866,241원의 흑자 편성하였고, 예산에 맞는 사업집행 및 철저한 지출관리로 다시 한 번 흑자를 꿈꿔본다.

2. 예산 총칙

<제1조> 본 예산의 회계연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2020 회계연도 예산 총 규모는 다음과 같다.

관	항	목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수입	사업수익	대덕민들레	의원,검진	1,433,427,279	1,798,897,494	1,812,000,000
			한의원	295,262,957	258,089,405	248,000,000
			치과	423,640,450	415,899,532	432,000,000
		둔산민들레	치과	379,768,577	148,058,540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5,063,970	15,880,000	27,000,000
		지역사회의료센터			150,000,000	
		사무처(경영지원실)	6,054,547	6,945,453	8,400,000	
	사업외수익	이자수익	1,456,957	1,668,593	1,330,000	
		정부지원 및 보조금	80,885,740	140,378,396	123,9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699,000		
		후원금(씨앗기금)	3,110,000	4,000,000	25,000,000	
		잡이익	5,366,729	12,893,692		
	수입합계			2,644,037,206	2,803,410,105	2,827,630,000
지출	사업비	교육,회의,연대,조직,홍보,보건예방	125,286,296	98,314,098	78,079,100	
	관리비	매출원가	282,082,686	314,189,222	279,000,000	
		인건비(급여,퇴직연금,인적용역비)	1,546,962,368	1,645,513,309	1,732,403,985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171,872,993	174,796,141	148,876,568	
		기금사업비	14,341,177			
		기타 판관비	421,385,895	448,827,643	531,404,107	
	기타	영업외 비용(이자비용 등)	57,321,808	57,491,006	48,000,000	
지출합계			2,619,253,223	2,739,131,419	2,817,763,759	
수지합계(수입합계-지출합계)			24,783,983	64,278,686	9,866,241	

〈제3조〉 수입 및 지출명세는 다음의 제5호 단위부서별 2020년도 결산대비 예산 수지예산(안)과 같다.

〈제4조〉 예산의 집행은 당해년도 예산(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의 항간이용과 예비비의 사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예산의 목간이용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사업량의 증가·세율변경·급격한 물가변동·특별사업의 실시·조직체계 및 기구의 변경·기타 대내외 지원금 등으로 인한 예산은 이사회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활동계획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집행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총예산 흐름도

자본조성

출자금	100,000,000
기 조성금	1,393,215,107
합 계	1,493,215,107



자본운용

의 료 기 기	55,500,000
비품 및 시설장치	118,000,000
소프트웨어	7,000,000
차입금 상환	115,128,791
운용 예비비	1,197,586,316
합 계	1,493,215,107

수 입

사 업 수 입	2,677,400,000
사업외 수입	150,230,000
합 계	2,827,630,000



지 출

사 업 비	78,079,100
매출 원가	279,000,000
관 리 비	2,412,684,659
사업외 비용	48,000,000
당기순이익	9,866,241
합 계	2,827,630,000

4. 자본예산

1) 자본조성계획

분 류	항 목	예산금액(원)
출자금	신입조합원 (202세대)	10,100,000
	조합원증자운동	89,900,000
	출자금 소계	100,000,000
기 조성 미사용 자본금 (전년도에서 이월)		1,393,215,107
합 계		1,493,215,107

2) 운용계획

구 분	기관	품 명	예산금액(원)
의료기기	검진	내시경 장비	50,000,000
		원심분리기	2,000,000
	치과	구강카메라	2,000,000
	의원	자동혈압계	1,500,000
	의료기기 소계		55,500,000
시설장치	검진	공간 확장 리모델링	100,000,000
	치과	간판교체	4,000,000
	사무처	지하 리모델링	3,000,000
	한의원	간판교체	2,000,000
	시설장치 소계		109,000,000
비품	사무처	사무용 책걸상	6,000,000
	의원	에어컨 교체	3,000,000
	비품 소계		9,000,000
소프트웨어	사무처	홈페이지 개발(업)	5,000,000
		POS 개발 및 유지비용	2,000,000
	소프트웨어 소계		7,000,000
차입금 상환	금융권 및 조합원 차입금 일부 상환		115,128,791
사업준비금	운용예비비		1,197,586,316
합 계			1,493,215,107

5. 단위부서별 2019년도 결산대비 예산

계정 과목	민들레 통합		의료사업소			
	2019년통합결산 (둔산치과, 산자부제외)	통합예산	의원·검진 결산	의원·검진 예산	한의원 결산	한의원 예산
I . 매 출 액	2,495,711,884	2,677,400,000	1,798,897,494	1,812,000,000	258,089,405	248,000,000
II . 매 출 원 가	289,708,947	279,000,000	165,925,012	170,000,000	40,681,925	38,000,000
III . 매 출 총 이 익	2,206,002,937	2,398,400,000	1,632,972,482	1,642,000,000	217,407,480	210,000,000
IV . 판매비와관리비	2,183,310,797	2,490,763,759	1,145,116,438	1,125,416,879	238,008,072	225,702,427
임 직 원 급 여	1,382,011,463	1,606,91,200	750,390,420	730,523,020	159,504,263	146,771,560
퇴 직 급 여	106,421,351	120,892,785	59,411,230	51,655,252	11,836,770	10,732,815
복 리 후 생 비	102,225,983	128,400,000	51,821,672	51,600,000	12,597,663	12,600,000
여 비 교 통 비	5,366,302	5,400,000	1,946,512		7,400	
통 신 비	9,896,329	7,100,000	3,590,812	2,700,000	1,498,703	500,000
수 도 광 열 비	3,199,372	3,980,000	2,167,670	2,200,000		
전 력 비	19,730,711	20,550,000	8,356,681	9,000,000	3,967,350	4,300,000
세 금 과 공 과 금	43,334,109	55,750,000	20,812,499	21,000,000	5,642,900	5,300,000
감 가 상 각 비	81,270,801	92,666,568	54,656,984	69,083,007	2,183,499	1,281,052
지 급 임 차 료	81,846,000	56,210,000			20,196,000	25,366,000
수 선 비	3,297,700	1,600,000	959,900	200,000	105,600	200,000
보 험 료	26,267,135	28,450,000	13,166,985	11,000,000	3,036,680	3,200,000
교 육 훈 련 비	9,111,734	12,923,000	2,451,000	1,794,000	287,592	195,000
도 서 인 쇄 비	1,196,350	1,221,000	55,000	55,000	216,000	216,000
회 의 비	9,358,030	11,980,000	1,597,000	1,800,000	457,290	480,000
소 모 품 비	19,748,349	21,800,000	7,434,199	8,500,000	1,707,210	1,500,000
지 급 수 수 료	165,933,749	166,310,000	127,057,445	132,590,000	5,938,382	4,500,000
건 물 관 리 비	3,595,352	25,900,000				1,200,000
협 회 비	2,030,000	4,480,000			575,000	660,000
무형고정자산상각	7,120,034	3,763,107	1,590,334	216,600		

계정 과목	민들레 통합		의료사업소			
	2019년통합결산 (둔산치과, 산자부제외)	통합예산	의원·검진 결산	의원·검진 예산	한의원 결산	한의원 예산
연 대 활 동 비	18,182,176	16,256,100	444,100			
조 직 활 동 비	959,510	11,800,000				
기 금 사 업 비		-				
홍 보 활 동 비	6,009,302	15,120,000	12,000	500,000		
인 적 용 역 비	26,502,420	4,600,000	4,400,000		1,238,120	
보 건 예 방 사 업 비	48,688,895	10,000,000	32,793,995		7,011,650	
조 합원건강지원비		45,700,000		31,000,000		6,700,000
기 부 금 사 업 비	35,625,400	33,220,000				
기부금사업비지원금	-35,617,760	-33,220,000				
예 비 비		11,000,000				
V . 영 업 이 익	22,692,140	-92,363,759	487,856,044	516,583,121	-20,600,592	-15,702,427
VI . 영 업 외 수 익	118,936,494	150,230,000	4,012,647	14,410,000	102,504	10,000
이 자 수 익	1,664,593	1,330,000	12,631	10,000	7,789	10,000
정 부 지 원 및 보 조 금	100,490,060	123,900,000		14,400,000		
후 원 금	4,000,000	25,000,000	4,000,000			
잡 이 익	12,781,841		16		94,715	
VII . 영 업 외 비 용	56,624,742	48,000,000	2,112,695	3,000,000	300	
이 자 비 용	56,497,946	48,000,000	2,112,086	3,000,000		
잡 손 실	126,796	-	609		300	
VIII .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85,003,892	9,866,241	489,755,996	527,993,121	-20,498,388	-15,692,427
IX . 법 인 세						
손 익	85,003,892	9,866,241	489,755,996	527,993,121	-20,498,388	-15,692,427

계정 과목	사무처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지역사회의료센터(신설)
	경영지원실 결산	사무처 예산 (사무팀,조직팀,홍보협력팀)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결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예산	
I . 매 출 액	6,945,453	8,400,000	15,880,000	27,000,000	150,000,000
II . 매 출 원 가					1,000,000
III . 매 출 총 이 익	6,945,453	8,400,000	15,880,000	27,000,000	149,000,000
IV . 판매비와관리비	338,035,545	556,293,014	117,218,679	51,517,336	181,552,333
임 직 원 급 여	137,172,530	294,094,360	77,190,310	33,108,310	144,920,000
퇴 직 급 여	11,320,310	26,091,197	4,909,611	2,759,026	11,768,333
복 리 후 생 비	16,574,091	25,400,000	4,962,706	9,100,000	11,600,000
여 비 교 통 비	3,068,590	2,500,000	343,800	500,000	2,400,000
통 신 비	4,035,096	3,000,000	221,263	300,000	
수 도 광 열 비	904,797	1,600,000	93,774	150,000	
전 력 비	3,830,745	3,200,000	374,405	600,000	
세 금 과 공 과 금	7,240,970	14,600,000	2,712,870	1,500,000	6,000,000
감 가 상 각 비	23,098,514	20,066,024			
지 급 임 차 료	48,450,000	17,644,000			
수 선 비	2,008,100	1,000,000	11,000		
보 험 료	3,389,378	5,800,000	1,354,530	700,000	2,250,000
교 육 훈 련 비	5,806,346	10,000,000	30,000	0	294,000
도 서 인 쇄 비	476,100	500,000	200,000	200,000	
회 의 비	6,291,080	8,000,000	708,200	600,000	500,000
소 모 품 비	8,447,150	5,000,000	1,208,800	300,000	500,000
지 급 수 수 료	21,898,698	20,000,000	1,602,340	700,000	1,320,000
건 물 관 리 비	2,934,792	23,200,000			
협 회 비	1,410,000	3,820,000			
무 형 고 정 자 산 상 각	5,406,500	3,501,334			
연 대 활 동 비	16,649,726	15,256,100	1,088,350	1,000,000	
조 직 활 동 비	465,410	11,800,000	494,100		

계정 과목	사무처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지역사회의료센터(신설)
	경영지원실 결산	사무처 예산 (사무팀,조직팀,홍보협력팀)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결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예산	
기 금 사 업 비					
홍 보 활 동 비	5,997,302	14,620,000			
인 적 용 역 비	3,611,480	4,600,000	17,252,820		
보 건 예 방 사 업 비		10,000,000			
조 합 원 건 강 지 원 비					
기 부 금 사 업 비	33,165,600	23,220,000	2,459,800	10,000,000	
기부금사업비지원금	-35,617,760	-23,220,000		-10,000,000	
예 비 비		11,000,000			
V . 영 업 이 익	-331,090,092	-547,893,014	-101,338,679	-24,517,336	-32,552,333
VI. 영 업 외 수 익	66,543,002	135,800,000	37,830,427		
이 자 수 익	1,630,294	1,300,000	3,349		
정부지원 및 보조금	52,329,480	109,500,000	37,827,050		
후 원 금		25,000,000			
잡 이 익	12,583,228		28		
VII. 영 업 외 비 용	54,489,747	45,000,000			
이 자 비 용	54,385,860	45,000,000			
잡 손 실	103,887				
VIII. 법인세차감전 이익	-319,036,837	-457,093,014	-63,508,252	-24,517,336	-32,552,333
IX . 법 인 세					
손 익	-319,036,837	-477,493,014	-63,508,252	-24,517,336	-32,552,333

제9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0년 회계연도 차입금 최고 한도는 현재의 차입금 1,578,909,099원을 포함하여 총 합계액 기준 20억원 이내로 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10호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2019년말 기준 차입금 내역 및 상환 계획

(2019. 12. 31 기준)

구분	차입액(원)	최초 대출일	대출기한	차입이율	상환계획	
조합원 차입금	115,000,000	13년 4월 부터~	1년 단위 (상환 연장)	4%		
금융권 차입	신한은행	335,205,323	2019.11.27	2020.11.27. (연장가능)	3.8%	운영비통장 (-대출)
	신한은행	178,500,000	2019.11.27	2020.11.25. (연장가능)	3%	월150만원
	유동화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00,000,000	2018.04.26.	2023.04.26. (연장가능)	2.488%	월250만원
	한빛신협	422,720,000	2019.01.11	2029.01.11	2.65%	월248만원
	(재)밴드	137,350,152	2019.11.06	2023.01.31	3.035%	월360만원
	신나는 조합	90,133,624	2019.07.23	2023.07.23	3%	월200만원
총계	1,578,909,099	-	-	-	운영비통장 제외 월 약 1,200만원	

기타 의안 기타의안 승인의 건

부 록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규약

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개정(안)
4.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규약개정(안)

인가 사항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713(2019.4.22.)

정 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전 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제 9 조)
제 2 장	조	합	원 (제 10 조 ~ 제 17 조)
제 3 장	출	자	(제 18 조 ~ 제 26 조)
제 4 장	총 회 와	이 사 회	(제 27 조 ~ 제 44 조)
제 5 장	임	원	(제 45 조 ~ 제 60 조)
제 6 장	사	업	(제 61 조 ~ 제 63 조)
제 7 장	회	계	(제 64 조 ~ 제 68 조)
제 8 장	합 병·분 할	및 해 산	(제 69 조 ~ 제 72 조)
부 칙			

전 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나눔과 협동의 경계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운동 단체 <지역품앗이 한밭레츠>와 참다운 의료생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이후 친구랑공동육아어린이집, 한밭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민들레의료생활협으로 창립하였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민들레의료생활의 전통을 이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셋째,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넷째,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위 네 가지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주권의 원칙을 따르며 세계의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루어갈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법동)에 둔다.

② 지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탄방동)에 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 2층(법동)
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
4.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 2층(탄방동)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원으로 한다.

제6조(광고방법) ①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5. 단체조합원: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단체출자를 한 법인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 먼저 지급한 후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⑥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익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익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익을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료

2. 조합가입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 의의)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5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써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보고서(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59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고문) ① 총회의 결의로 학식과 경륜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조합의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추대당시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④ 고문의 활동에 대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대로 여비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가. 의료시설, 요양시설, 보육시설, 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시설
 - 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 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
 - 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
 - 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
 - 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 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3.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5. 임대사업
-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 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 제64조(회계연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가 필요할 때 설치한다.

- 제66조(기부금)** ① 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 ② 기부금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 ③ 조합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 ④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 제67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8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 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70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3년 2월 23일 일부개정

제3조(2차 개정) 2013년 7월 11일 일부개정

제4조(3차 개정) 2014년 2월 22일 일부개정(2014.4.21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5조(4차 개정) 2015년 2월 28일 일부개정(2015.4.9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6조(5차 개정) 2017년 4월 4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57조(사업의 종류) 일부개정

제7조(6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8조(출자), 제25조(대의원총회), 제29조(정기총회), 제42조(이사회 의사), 제44조(임원의 정수),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65조(운영의 공개), 제57조(사업의 종류), 제58조(소액대출: 삭제), 제59조(상호부조: 삭제), 제60조(사업의 이용),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 일부개정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규약

- 총회운영 규약
- 출자좌수 감소 규약
-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 과태금에 관한 규약

총회운영규약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 중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공고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전무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총회에서 선출한 2명의 서기가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

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1조(목적)**,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제7조(의결사항),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제15조(의사록) 일부개정

출자좌수 감소 규약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1조제5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년도 말 30일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년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년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 통지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 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 출자금 감소 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출자좌수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기본좌수 이하일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 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1조(목적) 일부개정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제정 2013.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해 현물 평가시에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0조제2항의5, 제18조제6항 조합원인 법인의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의 정의] 단체출자의 단체라 함은 정관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법인으로 국내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출자방법] 단체가 출자할 경우 출자 100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출자에 따른 권한] 단체가 출자할 경우 단체는 조합의 사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 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이용] 출자단체 구성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에 있어 조합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단체출자에 대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2조(단체의 정의) 일부개정

과태금에 관한 규약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4조제3항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경비 또는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일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기 못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에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1조(목적) 일부개정

정관 개정(안)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개정(안)

전 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제 9 조)
제 2 장	조 합 원	(제 10 조 ~ 제 17 조)
제 3 장	출 자	(제 18 조 ~ 제 26 조)
제 4 장	총 회 와 이 사 회	(제 27 조 ~ 제 44 조)
제 5 장	임 원	(제 45 조 ~ 제 60 조)
제 6 장	사 업	(제 61 조 ~ 제 63 조)
제 7 장	회 계	(제 64 조 ~ 제 68 조)
제 8 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 69 조 ~ 제 72 조)
부 칙		

전 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나눔과 협동의 경계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운동 단체 <지역품앗이 한밭레츠>와 참다운 의료생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이후 친구랑공동육아어린이집, 한밭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민들레의료생활협으로 창립하였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민들레의료생활협의 전통을 이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셋째,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넷째,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위 네 가지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주권의 원칙을 따르며 세계의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루어갈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법동)에 둔다.

② <삭제, 2020. 5. 09.>

③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 2층, 3층 (법동) <개정, 2020. 5. 09.>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 2층(법동)

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

4. <삭제, 2020. 5. 09.>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원으로 한다.

제6조(광고방법) ①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 조합이 제공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자 <개정, 2020. 5. 09.>

2.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5. 단체조합원: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단체출자를 한 법인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 2020. 5. 09.>
 4.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20. 5. 09.>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환급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총회 승인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0. 5. 09.>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최저출자 수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 5. 09.>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⑤ <삭제, 2020. 5. 09.>
- ⑥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익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익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익을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료

2. 조합가입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 의의)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혹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09.>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일은 총회에서 차기 임원 선출시 까지로 한다.
<개정, 2020. 5. 09.>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과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장이 사교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에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에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 제56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에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보고서(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
5. <삭제, 2020. 5. 09.>

제59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고문) ① 총회의 결의로 학식과 경륜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고문은 조합의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 ③ 고문의 임기는 추대당시 이사의 임기와 같다.
- ④ 고문의 활동에 대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대로 여비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가. 의료시설, 요양시설, 보육시설, 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시설
 - 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 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
 - 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
 - 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
 - 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 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
 - 아. 기타 자원봉사활동 사업 <신설, 2020. 5. 09.>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3.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5. 임대사업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제62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 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②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으로 한다. <신설, 2020. 5. 09.>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가 필요할 때 설치한다.

제66조(기부금) ① 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금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③ 조합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④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제67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0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3년 2월 23일 일부개정

제3조(2차 개정) 2013년 7월 11일 일부개정

제4조(3차 개정) 2014년 2월 22일 일부개정(2014.4.21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5조(4차 개정) 2015년 2월 28일 일부개정(2015.4.9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6조(5차 개정) 2017년 4월 4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57조(사업의 종류) 일부개정

제7조(6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8조(출자), 제25조(대의원총회), 제29조(정기총회), 제42조(이사회 의사), 제44조(임원의 정수),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65조(운영의 공개), 제57조(사업의 종류), 제58조(소액대출: 삭제), 제59조(상호부조: 삭제), 제60조(사업의 이용),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 일부개정 (2019.4.22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8조(7차 개정) 2020년 5월 9일 일부개정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규약

- 총회운영 규약
- 출자좌수 감소 규약
-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 과태금에 관한 규약

총회운영규약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 중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공고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전무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총회에서 선출한 2명의 서기가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

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1조(목적),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제7조(의결사항),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제15조(의사록) 일부개정

출자좌수 감소 규약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1조제5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년도 말 30일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년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년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 통지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 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 출자금 감소 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출자좌수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기본좌수 이하일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1조(목적) 일부개정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제정 2013.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해 현물 평가시에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0조제2항의5, 제18조제6항 조합원인 법인의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의 정의] 단체출자의 단체라 함은 정관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법인으로 국내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출자방법] 단체가 출자할 경우 출자 100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출자에 따른 권한] 단체가 출자할 경우 단체는 조합의 사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 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이용] 출자단체 구성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에 있어 조합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단체출자에 대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2조(단체의 정의) 일부개정

과태금에 관한 규약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4조제3항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경비 또는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일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기 못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1조(목적) 일부개정



민들레 Mindlle

 Mindlle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법동)

의 원 042)638-9012

한의원 042)638-9013

치과의원 042)638-2275

건강검진센터 042)716-5002

지역사회의료센터 042)716-7011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042)638-9043

사 무 처 042)638-9053

대표번호 042) 638-9042 / fax 042) 638-9055
